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18. 4

국세청

머 리 말

해마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금계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사항 및 소득종류별 신고서 작성방법과 작성사례를 자세하게 수록한「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사례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각종 해석사례, 기타 신고시 참고할 내용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신고상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형환

국세청
WWW.nts.go.kr

차 례

제1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제1장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13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 17
제3장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20

제2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 59
1. 장부의 비치 · 기장 (법 제160조) ····· 59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영 제208조 ⑤) ····· 59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 §70④, 영 §131의2) ····· 60
제2장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 63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법 §70④, 영 §143) ····· 63
2.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법 §70④, 영 §143) ····· 71

제3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 · 납부 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77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 77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78
3.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80
4. 소득세의 납세지 ····· 80
5. 종합소득세의 신고 · 납부 ····· 82
6. 가산세 ····· 90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 99
1. 납세의무자 ····· 99
2. 비과세 ····· 99
3. 과세표준과 세율 ····· 101
4. 납세지 ····· 101
5. 신고와 납부 · 환급 ····· 101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102
1. 납세의무자 ····· 102
2. 납세지 ····· 102
3. 과세표준과 세율 ····· 102
4. 가산세 ····· 103
5.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 · 납부방법 ····· 105

제4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 109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 109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 110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 112
1. 기본사항 기재요령:1호-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 113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 115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 115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117
1. 이자소득명세서 ····· 117
2. 배당소득명세서 ····· 118
3. 사업소득명세서 ····· 122
4.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 165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 180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180
2. 이월결손금명세서 ····· 183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 188
1. 각 항목 기재요령 ····· 189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 191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200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 206
제6장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 207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 207
2. 준비금명세서 ····· 223

제5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227
1. 소득세 전자신고 개요 ····· 227
2. PC 전자신고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 228
제2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 230
1. 전자신고 가능서류 ····· 230
2.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 231
제3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 232
1.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 232
2.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 232

제4장 ARS 신고방식 ····· 238
제5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 241
1.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241
제6장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 242
1. 오류검증 추가 사례 ····· 242
2. 세무대리인 기타 당부사항 ····· 243
제7장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 244
1. 회원가입 ····· 244
2. 공인인증서 ····· 250
3. 프로그램 설치 ····· 252
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 255
5. 부서사용자 ····· 256

제6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267
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267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67
3. 성실신고확인자 ····· 267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267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 267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267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268
제2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70
제3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 271
제4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 275

제7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8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300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313
- 약국사업자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329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343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356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368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383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396
- 학원강사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402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414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12.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424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436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부 록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451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15종) / 452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기준 / 453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양식 / 457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 487

1.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488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510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 527

1. 현행 과세기준 / 528

2. 예상 질문 및 답변 / 529

4.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535

5. 공제 ·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545

국세청
WWW.NTS.GO.KR

제 1 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제1장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13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 17

제3장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2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17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 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2017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직전연도**(2016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욕탕업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장부신고자		추계신고자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확인대상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실내건축공사업, 결혼상담업, 맞선주선업, 의류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촬영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2016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위 표 참고)

* 다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다음 ①의 금액과 ②×3.2배(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반면,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위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록하면 혜택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장부를 기록할 경우 혜택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적자가 난 경우 이를 인정받고, 향후 10년간 세금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록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적자가 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201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기장의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적용

※ 외부조정대상자

업 종 별	외부조정대상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6월 30일 다만,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의 금액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2018. 7. 31.까지(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2018. 8. 31.)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30일 이후에 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계좌(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환급시기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다만, 공휴일・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각 시·군·구에서 8월 21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 납세자의 신고안내문을 전산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유형별로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 등이 수록된 맞춤형 개별 신고안내문을 홈택스 My NTS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 신고안내문에는 개인 과세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2장 신고 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소득세법 관련

〈금융소득 분야〉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2017.4.1 이후 가입분부터)
(일시납 보험: 1인당 총보험료 2억원이하 → 1억원이하, 월 적립식 보험: (한도) 없음 →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이자.배당소득 조세회피방지

〈사업소득 분야〉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2018.12.31.까지)

○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6~38%)→(6~40%)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와 공동명의의 사업용 계좌 개설 가능)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손금한도액 월할계산 규정보완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한도액 월할계산 규정보완

〈근로·연금·퇴직소득 분야〉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 발명진흥법상 연 3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

○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명당 30만원 → 첫째 30만원, 둘째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를 조정 (공제한도 400만원 → 공제한도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율 20%)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한도: 학생 1인당 연30만원)

○ 국가보훈처로부터의 차입금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가산세: 2% → 1%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1% → 0.5%

○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가산세 1% → 0.5%

○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0.5%→ 0.3%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미전송 가산세: 0.3%→ 1%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지연전송: 0.1% → 0.5%

○ 전자계산서 일정규모 이상 개인 미전송 가산세 : 0.3%

○ 전자계산서 일정규모 이상 개인 지연전송 가산세: 0.1%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 중복 신청시 기부장려금 우선적용으로 규정 명확화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2016.12.31. → 2017.12.31)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제외)

○ 고용 · 투자 · 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 추가(요건을 갖춘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10% 상향 조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수준별 공제부금 공제한도 차등화 (공제한도 300만원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500만원,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납입원금 누계액의 2% → 삭 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소득확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의 월세계약을 공제대상에 포함, 대상 주택에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추가)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 적용 (세액공제 한도 MIN(고배당기업 배당소득금액 X 5%, 2천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2019.12.31.까지)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조정(공제한도 300만원 → 급여수준별 차등적용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 적용기한 2016.12.31. → 2018.12.31.)

○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제3장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제40호 서식(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등

▸ 복식부기 신고자 (자기조정, 외부조정), 조정계산서

- 제40호 서식(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 간편장부 신고자

- 제40호 서식(1),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

▸ 기준경비율 신고자

- 제40호 서식(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

▸ 단순경비율 신고자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복수사업자는 제40호 서식(1)
- 단일사업소득자는 제40호 서식(4)

▸ 비사업자 (근로자, 금융소득자, 기타소득자)

- 제40호 서식(1)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100,101,102)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성실신고지원메뉴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화면중앙에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화면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제40호]
2.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소득세법 제40호(4)]
3. 성실신고확인서 [ect_기타서식 제00호]
4.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제82호]
5.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제82호 부표]
6. 소득·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소득세법 제37호]
7.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소득세법 제20호(5)]
8. 영수증수취명세서 [소득세법 제40호(5)]
9.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 제45호]
10.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 제41호]
11.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국세징수법 제9호]
12. 지방소득세 납부서 [소득세법 제42호]
13.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소득세법 제97호]
1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소득세법 제96호]
15. 손실거래명세서 [소득세법 제95호]
16.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소득세법 제94호]
17.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소득세법 제93호]
18.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소득세법 제85호]
19. 기부금영수증 [소득세법 제45호의2]
20. 교육비납입증명서 [소득세법 제44호]
21. 대주주신고서 [소득세법 제84호(3)]

제출대상서류

22.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제56호]
23. 접대비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제55호]
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소득세법 제44호(4)]
25.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소득세법 제44호(3)]
26.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학교 외 구입분) [소득세법 제44호(2)]
27.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제43호]
28. 의료비부담명세서 [소득세법 제43호(2)]
29.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제40호(9)]
30.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제40호(8)]
31. 연금납입확인서 [소득세법 제38호의2]
32.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제40호(7)]
33. 표준재무상태표 [소득세법 제40호(6)]
34.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제38호]
35.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세법 제37호(2)]
36.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 [소득세법 제33호(4)]
37.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제29호(15)]
38.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제29호(14)]
39.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소득세법 제29호(13)]
40.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외 [소득세법 제24호]
41.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외 [소득세법 제23호]
4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제21호]
43.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제29호(2)]
4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소득세법 제26호(2)]
45.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제25호]
46.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외 [소득세법 제11호]
47.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법 제19호]

제출대상서류

48.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5)]
49. 자동차학원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제19호(4)]
5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제16호]
5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서 [소득세법 제21호의2]
5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소득세법 제16호(2)]
53.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소득세법 제24호의3]
54.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소득세법 제7호(2)]
5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소득세법 제6호(2)]
56. 비과세사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37호의 3]
57. 의료비인출신청서 [소득세법 제3호(4)]
58.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102②제14호]
59.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102②제12호]
60.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102②제13호]
6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소득세법 제63호]
62.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102②제19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8. 3. 21.> [시행일:2019. 1. 1.] 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부분

(33쪽 중 제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⑯대리구분은 1-4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❿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❿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⓬ 세액감면명세서, ⓭ 세액공제명세서, ⓮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⓯ 가산세명세서와 ⓰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⓴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　　]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접 수 자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 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접수일(인)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3쪽 중 제2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4], [12], [11], [20], [31], [32], [40]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1]기장 [2]조정 [3]신고 [4]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⑲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⑳ 소득공제란: 제15쪽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세율란·㉓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⓴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㉔ 세액감면란·㉕ 세액공제란: 제19쪽⓬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⓭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㉗·㊺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㉗ 가산세는 제21쪽⓯ 가산세명세서의 ⑰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㉘·㊻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㉘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㊻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2. ㉚·㊽ 기납부세액란: 제21쪽⓰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㉖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㉙ 합계 금액에서 ㉚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
14. ㉜·㉝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㉜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㉝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㉞ 분납할세액란: ㉛ 납부할 총세액에서 ㉜㉝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지방소득세란: ㊶ 과세표준란에는 ㉑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㊷ 세율란·㊸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㊹ 세액감면 및 ㊺ 세액공제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㊼ 가산세액란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및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㊽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㊿ 기납부세액은 ㉚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제21쪽⓰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농어촌특별세란: ㊶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⑱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㊼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㊹+㊺-㊻)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17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2017년 지방소득세 세율	2017년 지방소득세 누진공제액	귀속년도 /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액	2018년 지방소득세 세율	2018년 지방소득세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율 32 추계－단순율	40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	50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⑬ 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 대리구분	1 기장 2 조정 3 신고 4 성실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⑲					
소득공제		⑳					
과세표준(⑲－⑳)		㉑		㊶		㊶	
세율		㉒		㊷		㊷	
산출세액		㉓		㊸		㊸	
세액감면		㉔		㊹			
세액공제		㉕		㊺			
결정세액(㉓－㉔－㉕)		㉖		㊻		㊹	
가산세		㉗		㊼		㊺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계(㉖+㉗+㉘)		㉙		㊾		㊼	
기납부세액		㉚		㊿		㊽	
납부(환급)할 총세액(㉙－㉚)		㉛		(51)		㊾	
납부특례세액	차감	㉜				㊿	
	가산	㉝					
분납할 세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52)		(5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⑥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27 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5백만원(Gross-Up 대상), 기타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각각 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각각 5백만원(고배당기업)과 5백만원(기타 배당소득)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가산율)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210㎜×297㎜(백상지 80g/㎡)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 31 · 32 · 40 · 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2.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3.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⑥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⑦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⑧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⑨ 총수입금액란 및 ⑪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⑰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8. ⑩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⑮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⑨ 총수입금액에서 ⑪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소득금액란: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㉑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과세기간개시일란 · ⑬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1. ⑭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⑮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⑯ ~ ⑲)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및 ⑲ 소득금액은 ⑧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⑳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5. ㉑ 상호(성명)란 · ㉒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6. ㉓ 소득세란 · ㉔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기장의무						
⑦ 신고유형코드						
⑧ 주업종코드						
⑨ 총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⑪ 소득금액(⑨-⑩)						
⑫ 과세기간개시일						
⑬ 과세기간종료일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㉑ 상호(성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 소득세	㉔ 농어촌특별세

210㎜×297㎜(백상지 80g/㎡)

❽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 · 국내영업소 ·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 ·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 ·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 · 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33쪽 중 제11쪽)

❽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③ 상 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 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210㎜×297㎜(백상지 80g/㎡)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❿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 '40', '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297㎜(백상지 80g/㎡)

⓫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⑦)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⑨~⑩)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⑨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⑩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⑪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⑭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⑰ ~ ㉑)는 관련 제목(조문)을 ⑰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⑲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⑳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⑱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⓫-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인		연금보험료공제		⑨ 국민연금	
		② 배우자				⑩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양가족(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 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⑤ 장애인(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⑥ 부녀자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⑦ 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297㎜(백상지 80g/㎡)

⓫-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⓫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500만원(연 1,8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300만원,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300만원(총급여1.2억 초과자는 2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17쪽)

⓫-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①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③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④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⑥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⑧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①~⑦)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297㎜(백상지 80g/㎡)

■

(33쪽 중 제18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및 ⑬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4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4 배당세액공제의 ㊽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녀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2)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15만원), 2명 초과(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3)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
 라.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 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⑥대상금액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5%, 세액공제액 2천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6.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7.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⑭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 세액공제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6세이하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210㎜×297㎜(백상지 80g/㎡)

⓯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1만분의 3을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⑪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 · 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 ·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 ·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⑤ 증빙불비가산세 ·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 · 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㉑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 ·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㉔ 사업소득란: 제9쪽❼ 사업소득명세서 ㉓란의 합계액과 ㉔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㉕ 근로소득란: 제11쪽❽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 연금소득란 · ⑩ 기타소득란: 제11쪽❽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계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㉖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22쪽)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 '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㉕·㉞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㉙·㊳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⑯·㉖·㉟ 소득공제란: 제15쪽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⑳·㉔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㉜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㉒·㉝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4 배당세액공제: ㊵란은 ⑬와 (㉛-㉚)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3쪽 중 제23쪽)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⑬ 배당가산액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⑯ 소득공제	
⑰ 과세표준(⑮-⑯)	
⑱ 기본세율	
⑲ 산출세액	
⑳ [⑪× (14/100,9/100)]	
㉑ 비교산출세액계(⑲+⑳)	
㉒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㉓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⑩-(①+③)]	
㉔ [㉓× (14/100,9/100)]	
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㉖ 소득공제	
㉗ 과세표준(㉕-㉖)	
㉘ 기본세율	
㉙ 산출세액	
㉚ 비교산출세액 계(㉒+㉔+㉙)	
㉛ 종합소득산출세액(㉑와 ㉚ 중 큰 금액)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㉜ [(②+⑦)× (14/100)]	
㉝ [③× (25/100)]	
㉞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㉟ 소득공제	
㊱ 과세표준(㉞-㉟)	
㊲ 기본세율	
㊳ 산출세액	
㊴ 종합소득산출세액(㉜+㉝+㊳)	

4 배당세액공제

㊵ [⑬와 (㉛-㉚)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 · 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㉒란부터 ㊲란까지 및 ⑩란부터 ㉑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 · ⑧ 업종코드 · 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㉒~㉕)과 임차료(㉖~㉙)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㉓·㉗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㉔·㉘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㉕·㉙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㉛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㉝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 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 · 사업장별)"상의 ㉞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⑱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⑲ 금액란: 1에서 ⑱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⑳ 비교소득금액란: ⑲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대상자: 2.6)"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㉑ 소득금액란: ⑰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⑳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25쪽)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득구분코드			( )	( )	계( )
② 일련번호					
③ 사업장소재지					
④ 과세기간					. . .부터 . . .까지
⑤ 상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업태 / 종목			/	/	/
⑧ 업종코드					
⑨ 총수입금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㉞)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주요경비 ⑬ 계(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⑮ 금액(⑨×⑭)			
		⑯ 필요경비 계(⑬+⑮)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⑲ 금액[⑨×(1-⑱)]			
	⑳ 비교소득금액(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㉑ 소득금액(⑰ 또는 ⑳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 · 사업장별)

구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㉓	㉔	㉕
임차료	㉖	㉗	㉘	㉙
인건비	㉚	㉛	㉜	㉝
계(㉞=⑪)	㉞	㉟	㊱	㊲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 · 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33쪽 중 제27쪽)

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40%세율 적용자산	⑧ 45%세율 적용자산	⑨ 50%세율 적용자산	⑩ 60%세율 적용자산	⑪ 70%세율 (미등기자산)
㉮ 총수입금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210㎜×297㎜(백상지 80g/㎡)

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❻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㉛·㊹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㉟·㊴·㊾·㊹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⑯·㉜·㊻ 소득공제란: 제15쪽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 소득공제합계에서 ㉓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⑳·㉚·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㊷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㉘·㊸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4 배당세액공제: ㊽란은 ⑬와 [(㊶-(㊱와 ㊵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㉒·㊶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⓳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㉖·㊺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⓳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3쪽 중 제29쪽)

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 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⑬ 배 당 가 산 액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⑯ 소 득 공 제	
⑰ 과 세 표 준(⑮-⑯)	
⑱ 기 본 세 율	
⑲ 산 출 세 액	
⑳ [⑪× (14/100,9/100)]	
㉑ 비교산출세액 계(⑲+⑳)	
㉒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㉓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⑰-㉒)	
㉔ 기 본 세 율	
㉕ 산 출 세 액	
㉖ 주택등매매차익세액	
㉗ 비교산출세액(⑳+㉕+㉖)	
㉘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㉙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⑩-(①+③)]	
㉚ [㉙× (14/100,9/100)]	
㉛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㉜ 소 득 공 제	
㉝ 과 세 표 준(㉛-㉜)	
㉞ 기 본 세 율	
㉟ 산 출 세 액	
㊱ 비교산출세액 계(㉘+㉚+㉟)	
㊲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㉝-㉒)	
㊳ 기 본 세 율	
㊴ 산 출 세 액	
㊵ 비교산출세액 계(㉖+㉘+㉚+㊴)	
㊶ 종합소득산출세액 (㉑·㉗·㊱·㊵ 중 큰 금액)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㊷ [(②+⑦)× (14/100)]	
㊸ [③× (25/100)]	
㊹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㊺ 종합소득금액(㊹)	
㊻ 소 득 공 제	
㊼ 과 세 표 준(㊺-㊻)	
㊽ 기 본 세 율	
㊾ 산 출 세 액	
㊿ 비교산출세액 계(㊷+㊸+㊾)	
51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52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㊼-51)	
53 기 본 세 율	
54 산 출 세 액	
55 주택등매매차익세액	
56 비교산출세액(㊷+㊸+54+55)	
57 종합소득산출세액(㊿와 56 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58 ⑬와 [(㊶-(㊱와 ㊵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30쪽)

㉑ 주식매수선택권 분납할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8.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❶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3쪽 중 제31쪽)

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 (⑧-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2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 ×4/5
㉮ 근로(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3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⑲ 잔 액 (⑭-⑮-⑯-⑰-⑱)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210㎜×297㎜(백상지 80g/㎡)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 · 국내영업소 ·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 ·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⑨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㉓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33쪽 중 제33쪽)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297㎜(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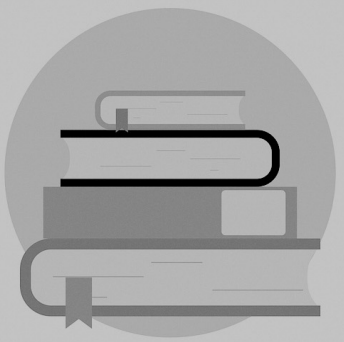

제 2 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 59
제2장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 63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1. 장부의 비치 · 기장 (법 제160조)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영 제208조 ⑤)

가. 복식부기의무자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과세기간(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욕탕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관련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3) 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 의료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다.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09-106호, 2015.7.31)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수입(매출)		⑤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⑦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소계									

※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70④, 영§131의2)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의사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 세무사 등(소령 §147의3, 부령 §109의2⑦)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3억/1.5억/7천5백만원, 소령 §208⑤ 2호)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제2장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법 §70④, 영 §143)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및 시행규칙 제67조)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2.6배 또는 3.2배)

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함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18. 4. 13.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국세청고시 제2018-8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 4. 13. 국세청 고시 제2018-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16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및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임

-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 이상)

업 종	계속사업자 직전수입금액	신규사업자 17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이상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이상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 일반율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 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 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마.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17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됨

○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

2. 단순경비율 적용 안내 (법 §70④, 영§143)

가. 단순경비율 개요

○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68페이지〉 표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소득금액 계산례 》

업 종	구 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0,000원	75.0 %	65.0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
＝11,750천원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 ~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 ~621000, 630301 ~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 ~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 ~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 ~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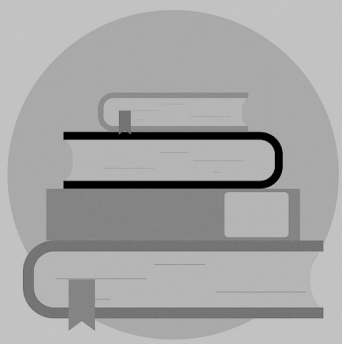

제 3 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 · 납부 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77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 99
제3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10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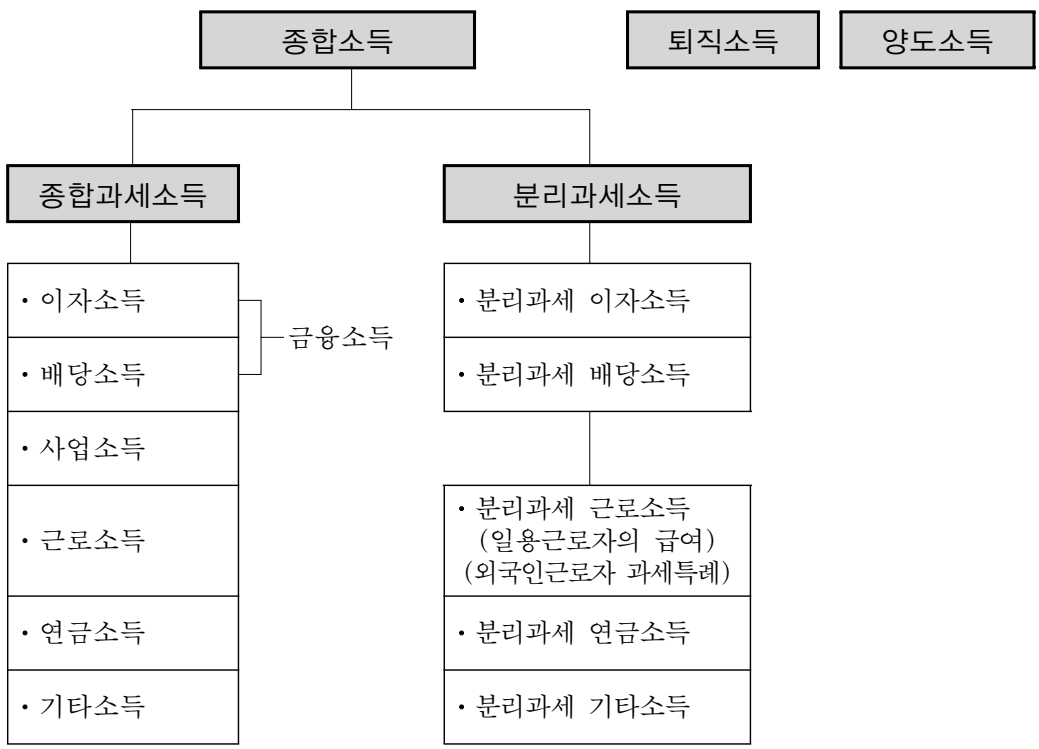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으로서, 보험모집, 방문판매 또는 음료배달을 함

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함)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위 1) 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외국기관·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3.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가. 원 칙

소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하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소득세법 제74조)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전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4.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가. 원칙(소득세법 제6조)

1)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나.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소득세법 제8조)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2)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그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그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합니다.
3) 거주자로 보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 납세지의 지정 (소득세법 제9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사업장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합니다.

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전자신고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자), 중간예납·고지금액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소득유형(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18. 5. 31.(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며,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파일변환 신고(회계프로그램 등)」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2) 서면신고(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109페이지〉 '제4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6조)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2018.5.31)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⑧ 위 ②, ③,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⑩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라. 종합소득세 분납(소득세법 제77조)

거주자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분납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금액

3)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4) **분납세액 계산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 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②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 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마.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1) 전자납부 종류

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모바일 홈택스 앱 포함)
②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③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④ 폰뱅킹(ARS)를 이용한 전자납부
⑤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2)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① 전자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를 클릭합니다.
-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금납부]의 [국세납부]에서 「타인세금납부」를 클릭하여 타인계좌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서면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의 「자진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③ 고지된 국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

- 홈택스의 [신고/납부]의 [세금납부]에서 「국세납부」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4) 은행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하고 납부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은행의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뱅킹, 공과금납부(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확인 절차(공인인증서 등) → 잔고 등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확인 → 국세납부확인서 발급

5) 폰뱅킹(ARS)를 이용한 전자납부

- 처음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본인이 통장, 인장, 신분증 지참)

・거래은행의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국세납부」를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ATM기를 이용하여 「국세납부」또는 「세금/공과금」등을 선택하고 본인확인절차(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거쳐 「국세납부」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전국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5.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는 납부세액의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납부는 0.5%)이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도 가능하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금액 및 분할 기간은 납세자와 카드사 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 납부절차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18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허공평	사업자(주민)등록번호	480203-*******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전화	732-1234		회계연도	2018		

귀속연도/ 기분	2017년 귀속 확정신고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1	1	0	8	2	0	0
농어촌특별세													
계						₩	1	1	0	8	2	0	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8 년 5 월 31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수납인

우체국

- 1면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면 납부서(수납기관용), 3면 영수증서(납세자용)의 3면 1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3면 모두 동일합니다.
- 납부번호 : 분류번호 "0126→국세,국세청",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다음 쪽의 세무서 코드 참조), 납부연월 "〔사례 2018.05 →1805〕", 납부구분 "1", 세목 "10"을 각각 기재합니다.(2018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수입징수관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명을 기재합니다.
- 계좌번호(6자리)는 세무서별로 다르며,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쪽의 "세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소란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회계연도는 "2018"입니다.
- 세목명은 "종합소득세"이며, 납부금액은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맨 끝자리(원단위)의 숫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1,108,203원 → 1,108,200원 (주의 : 신고서에는 그대로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서식40-(1)호 제3쪽⑥1란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8.5.31.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를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 등 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 산 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기광주	233	023744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산	515	042330	북 광 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경 주	505	170176	북 대 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고 양	128	012014	북 대 전	318	023773	용 인	142	002846
공 주	307	080460	북 부 산	606	030533	울 산	610	160021
관 악	145	024675	북 인 천	122	110233	원 주	224	100269
광 명	235	025195	북 전 주	418	002862	은 평	147	026165
광 주	408	060639	분 당	144	018364	의 정 부	127	900142
구 로	113	011756	삼 성	120	181149	이 천	126	130378
구 미	513	905244	삼 척	222	150167	익 산	403	070425
군 산	401	070399	상 주	511	905260	인 천	121	110259
금 정	621	031794	서 광 주	410	060655	잠 실	230	019868
금 천	119	014371	서 대 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기 흥	236	026178	서 대 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김 천	510	905257	서 대 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김 포	234	023760	서 부 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김 해	615	000178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나 주	412	060642	서 인 천	137	111025	중 랑	146	025454
남 대 구	514	040730	서 초	214	180658	중 부	201	011989
남 대 문	104	011785	성 남	129	130349	중 부 산	602	030562
남 양 주	132	012302	성 동	206	011905	진 주	613	950435
남 원	407	070412	성 북	209	011918	창 원	609	140669
남 인 천	131	110424	세 종	320	025467	천 안	312	935188
노 원	217	001562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논 산	308	080473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대 전	305	080486	수 성	516	026181	충 주	303	090340
도 봉	210	011811	수 영	617	030478	통 영	612	140708
동 고 양	232	023757	수 원	124	130352	파 주	141	001575
동 대 구	502	040769	순 천	416	920300	평 택	125	130381
동 대 문	204	011824	시 흥	140	001588	포 천	231	019871
동 래	607	030481	아 산	319	024688	포 항	506	170192
동 수 원	135	131157	안 동	508	910365	해 남	415	050157
동 안 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해 운 대	623	025470
동 울 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 작	108	000181	양 산	624	026194	홍 천	223	100285
동 청 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화 성	143	018351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6.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4호)

가. 가산세의 부과(국세기본법 제47조)

○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가산세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국기법 제6조 제1항, p.84 '다. 납부기한연장' 참조)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 면 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무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 면 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2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결과통지를 안한 경우

②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③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동법 제47조의3 제6항)

①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함)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중복될 때에는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의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다음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①)
②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③)
③ 적격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소법 §81④)
④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 §81⑤)
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⑥)
⑥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소법 §81⑫)
⑦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소법 §81⑪)

마. 가산세 요약(소법 집행기준 81-0-1)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국기법 §47의2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 무 자	일반무신고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 × 7/10,000
			부당무신고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부정행위:60%) ② 일반무신고수입금액 × 14/10,000
		그 외의 자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20%
			부당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제거래 부정행위:60%)
국기법 §47의3	과소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 무 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당과소신고	Max(①,②) ①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부정행위:60%) ②부당과소수입금액 × $\frac{14}{10,000}$
		그 외의 자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부정행위:60%)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일반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10%
		부당초과환급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 40% (국제거래 부정행위:60%)
국기법 §47의4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		미납(미달)세액×경과일수* ×3/10,00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초과환급 받은 세액*×경과일수** ×3/10,000 *신고한 환급세액-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국기법 §47의2 §47의3 §47의4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가산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적용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 2010.1.1. 이후 매매하는 분부터
국기법 §47의5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을 포함한다)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Min(①,②) ① 무납부·미달납부 세액 × (3%+일수*×3/10,000) ② 무납부·미달납부 세액 × 1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소법 §81①	보고 불성실 가산세 **주2), 주4)**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주1)**	미제출, 불분명 또는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 2007년 이후 일용근로자도 적용	미제출(불분명),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1% (3개월이내 지연제출0.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분은 제외함단,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생략 대상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소법 §81③ 1호		계산서 불분명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발급한 계산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미기재(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
소법 §81③ 4호		계산서 미발급·가공발급·위장발급 가산세	계산서미발금, 가공계산서발급, 가공계산서수취, 위장계산서발급, 위장계산서 수취	공급가액의 2%
소법 §81③ 4호, 단서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1%
소법 §81③ 5호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전송기한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 0.5%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2019년부터 0.5%)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소법 §81③ 6호	보고 불성실 가산세	전자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전송기한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 1%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0.3% (2019년부터 1%)
소법 §81③ 2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매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 (1월 이내 지연제출 0.3%)
소법 §81③ 3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	미제출·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 (1월 이내 지연제출 0.3%)
소법 §81④	증빙불비 가산세 **주4)**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일정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수취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법정증빙 미수취금액·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 (정규증빙 수취의무 면제대상 금액과 필요경비불산입 대상 접대비 금액 제외)
소법 §81⑤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주4)**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일정요건의 추계과세자 제외)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부실기재한 경우	미제출·부실기재분의 지급금액의 1% ※영수증수취명세서: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정증빙 아닌 영수증 수취분을 기재하는 서식
소법 §81⑥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주4)**		수입금액 무신고·미달신고(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적용)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소법 §81⑦ 1호	공동사업장 불성실 가산세 **주4)**	미등록 허위등록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법 §81⑦ 2호		무신고 허위신고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 등의 신고 또는 변동신고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허위신고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1% ※ 2007. 1. 1. 이후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법 §81⑧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 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경우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 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비율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함
소법 §81⑨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주4)**	미사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미사용시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0.2%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중 미사용분에 한함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	Max(①,②) ① 미신고기간수입금액 ×0.2% ②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합계액 × 0.2%
소법 §81⑨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주4)**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Max(①,②) ① 건별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차액)의 5% ② 5천원(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달시) ※ 200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소법 §81⑪	현 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주4)	미가맹	가입대상자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 201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9.1.1.~ 2010.12.31: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0.5%, 2008.12.31.이전: 미가입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적용함)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2008.7.1.이후 공급분부터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금액(차액)의 5% • 상기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달시 5천원 ※ 2007.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소법 §81⑫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주3),주4)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 2008.1.1. 이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자가 기부금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미작성·보관금액의 0.2% ※ 2008.1.1. 이후
소법 §81⑬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right] \times 5\%$
소법 §81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주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금액의 0.5%

주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이자·배당·기타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주2) 중복적용 배제

증명서류불비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3) 중복적용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주4) 위의 소득세법상 가산세 중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공동사업장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계산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2. 비과세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예 시〉

조문번호	내 용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번호	내 용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①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의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①③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 과세표준과 세율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20%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4.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5. 신고와 납부·환급

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세가 분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기한은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즉,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0.6%~4.0%를 적용합니다.

4. 가산세

가. 가산세 요약

관련법	종 류	적 용 요 건	가 산 세 액
지방세 기본법 §53	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20%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납부세액 × 40%
지방세 기본법 §54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세액 × 40%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일반초과환급	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 × 10%
		부당초과환급	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 × 40%
지방세 기본법 §55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납부	Min(①,②) ① 미납(미달)세액×경과일수* × 3/10,000 ② **미납(미달)세액 × 75%**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MIN(①,②) ①초과환급분세액*×경과일수** × 3/10,000 ②초과환급분세액* × 75%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 기간
지방세법 §99	소득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가산세 × 10%

나.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례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사유(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무신고가산세 중 다음의 금액을 감면합니다

구 분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 경우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 한경우	20%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통지를 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

②「지방세법」제103조의5에 다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ㄱ), ㄴ)에 해당하는 경우

ㄱ)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5.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신고·납부방법

가. 지방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행정자치부에 제공하며,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을 거쳐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됩니다.

나. 지방소득세의 납부와 환급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6월 30일)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의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바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계상됩니다.

다.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징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지방소득세자료가 실시간으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송되므로, 위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납부하기〕→〔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www.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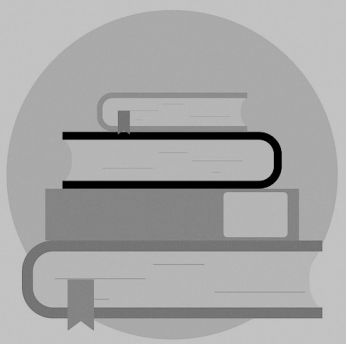

제 4 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서 작성요령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 109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 112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117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 180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 188
제6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 20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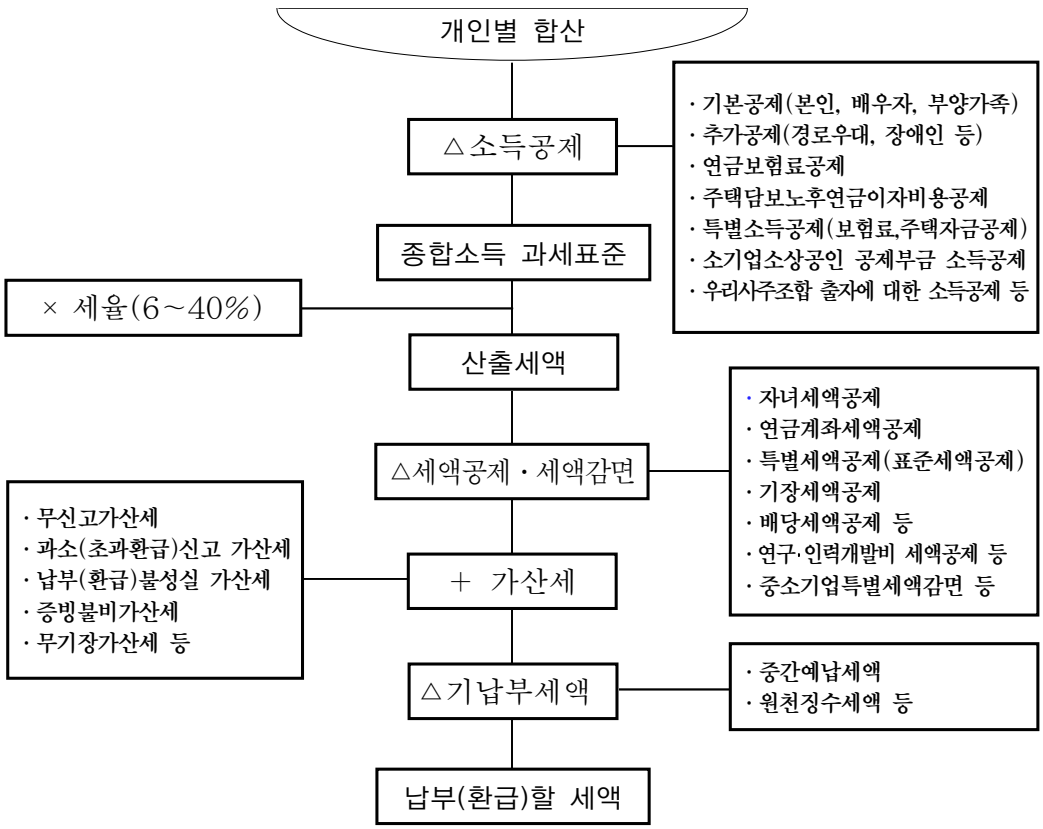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신고서 제3쪽의 ❶~❸ 기본사항 등을 적습니다.

❶ **기본사항란**은 누구나 다 적습니다.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❸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 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2) 그 다음 앞 쪽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흐름에 따라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❺~❽ 각 소득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❺ **이자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❻ **배당소득명세서**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는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❽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는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그 다음으로는 소득별 명세서를 기초로 신고서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와 ❿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신고서 제17쪽의 ⓫-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를 작성한 후 신고서 제15쪽의 ⓫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5)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⓱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⓲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⓳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⓴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6) 신고서 제19쪽의 ⓬ **세액감면명세서**, ⓭ **세액공제명세서**, ⓮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신고서 제21쪽의 ⓯ **가산세명세서**, ⓰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위 각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 제3쪽의 ❹ **세액의 계산** 란을 적습니다.

(9) 신고서 제3쪽 하단에 신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10)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하나의 납부서에 같이 기재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제 2 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신고서 제3쪽의 ❶기본사항, ❷ 환급금 계좌신고, ❸ 세무대리인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견 본 >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 관리번호			-					⑱ 조정반번호	-

1. 기본사항 기재요령 : 1호 - 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납세지(주소지)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신고서로 제출하며, ①성명 및 ②주민등록번호는 피상속인의 것을 적고, ③주소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등이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신고서 3쪽의 신고인 란에는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고 서명 날인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인 란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①성명은 단체의 이름, ②주민등록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③주소는 신고한 납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는 신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는 [1]복식부기의무자 또는 [2]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2]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3]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법 §70④, 법 §70조의2, 영 §131・§132).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2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4], [12], [11], [20], [31], [32], [40]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	내 용
[11]자기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외부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4]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20]간편장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추계-기준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32]추계-단순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40]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⑩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내 용
[10] 정기신고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 2017년 귀속분에 대해 2018년 5월에 하는 신고가 여기에 해당함
[20]수정신고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하는 신고(국세기본법 §45)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정비율(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을 경감(§48)
[30]경정청구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45의2)

신고구분	내 용
40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그 기한 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 : 50% 감면, 1개월~6개월 : 20% 감면(§48)
50 추가신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받게 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 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⑪ **금융회사/체신관서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적고,

⑫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적습니다.
HSBC 등 일부 외국계은행 계좌로는 이체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금융회사 계좌를 적습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❸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대리구분	내 용
1 기장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2 조정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3 신고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4 성실확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와 기장·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⑬ 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⑰관리번호 :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이 소속된 본점의 상호 등을 적고, 개인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2명 이상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조정과 신고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고, 신고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조정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의 것을 적습니다.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명세서

신고서 제5쪽의 ❺이자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❺ 이자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 금액	⑥원천징수된 소득세
		③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1	(주)한국	101-**-*****	5,000,000	1,250,000
11	2	김○○	231212-1******	3,000,000	750,000
합계				8,000,000	2,000,000
13	1	○○은행 ××지점	102-**-*****	1,000,000	140,000
15	1	(주)××	(홍콩법인)	2,000,000	
			이자소득 계	11,000,000	2,140,000

① **소득구분 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된 것) : **소득구분 코드 11**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구분코드 15)이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것 : **소득구분 코드 12**
- 그 밖의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5**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6**
-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구분 코드 17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⑥ **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2.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의 ❻배당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 출자한 공동사업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❻ 배당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 지급법인 ③ 법 인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가산율)	⑧ 배당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21	1	(주)한국 101-**-*****	20,000,000	20,000,000	2,200,000	22,200,000	2,800,000
22	1	(주)○○ 111-**-*****	20,000,000			20,000,000	2,800,000
26	1	(주)×× (일본 법인)	9,000,000			9,000,000	
28	1	△△광고 212-**-*****	4,000,000			4,000,000	1,000,000
		배당소득 계	53,000,000	20,000,000	2,200,000	55,200,000	6,600,000

① 소득구분코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1**

-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2**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구분코드 26)이외의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3**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6**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8**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9**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법인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배당액**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배당액을 적습니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1/100를 가산(Gross-Up)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이자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적습니다.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법인세법 §51의2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 다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아래의 산식에 의한 비율(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해당하는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2개사업연도의감면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text{직전2개사업연도의총소득금액의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의2)
  -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2·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21의8·121의9)

⑦ **배당가산액** : 적용대상 금액(⑥) × 가산율(100분의 11)

⑧ **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 배당가산액(⑦)

⑨ **소득세** :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3.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❼사업소득명세서는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30	30	30	40
② 일련번호			1	2	계	
③사업장	소재지		경기 고양 충장로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1		1
④ 상호			덕양빌딩	낙원빌딩		낙원약국
⑤ 사업자등록번호			128-**-*****	101-**-*****		101-**-*****
⑥ 기장의무			(예) 복식부기	(예) 복식부기		(예) 복식부기
⑦ 신고유형코드			12	12		12
⑧ 주업종코드			701201	701201		523111
⑨ 총수입금액			36,000,000	120,500,300	156,500,300	285,456,000
⑩ 필요경비			13,150,000	55,069,100	68,219,100	311,652,000
⑪ 소득금액(⑨-⑩)			22,850,000	65,431,200	88,281,200	△26,196,000
⑫ 과세기간개시일			17. 1. 1	17. 1. 1		17. 1. 1
⑬ 과세기간종료일			17.12.31	17.12.31		17.12.31
⑭ 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1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1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 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국내인 경우 코드를 적지 않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US

⑥ 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자가 직접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성실신고확인) : 14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주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 및 ⑪ 소득금액**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적습니다.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습니다.

*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⑰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⓲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⑨총수입금액에서 ⑪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⑨총수입금액에서 ⑩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⓲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㉑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⑬ 과세기간 종료일**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은 2017.1.1.로 적고, 과세기간 종료일은 2017.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⑮ **특수관계자**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과세하고 있으나, 거주자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 1명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 친족을 말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견 본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⑯ 일련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⑰상호(성명)	⑱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⑲ 소득세	⑳ 농어촌특별세
1	국민건강보험공단	105-**-*****	1,234,560	

⑯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줄에 합계를 적습니다.

⑰ **상호(성명)** · ⑱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⑲ **소득세** · ⑳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 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음식점 · 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 ·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적는 경우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사업소득

1) 총수입금액

가)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19, 영 §31조 부터 §37)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 및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⑧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⑪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과 유사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 광업권자 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 ▸공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⑮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는 제외
⑯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함
⑱ 협회 및 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⑲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⑳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사업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구 분		수 입 시 기
상품·제품·기타 생산품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 제외	일반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기간 내에 반송·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상품 등의 장기할부 조건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봄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계약기간 1년이상 장기건설: 작업진행율 기준 *계약기간 1년미만 단기건설: 작업진행율 적용 가능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구 분		수 입 시 기
어음의 할인		어음의 만기일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일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받게 되는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날로 한다.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부동산 포함		대금 청산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총수입금액 산입항목과 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산입항목(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text{당해연도수입금액} = \text{선세금} \times \frac{\text{당해연도임대월수}}{\text{계약기간의월수}}$$

-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 그 금액
-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제2항)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⑵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동산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보증금등"이라 하며,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간주임대료 = (해당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 - 3억원[주1])의 적수 × 60/100×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주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②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함

•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

간주임대료 = (해당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 - 3억원[주1])의 적수 × 60/100×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

주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

②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

• 적수의 계산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 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

2017년 귀속 부동산임대업(주택제외)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의 사항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2017년 과세기간부터 : 1.6%
▸2018년 과세기간부터 : 1.8%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수입금액 특례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소득세법 제26조)

•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전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
•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업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 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

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가)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및공급업의 경우만 해당).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임업의 경비(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 임목의 매도경비)
- 양잠업의 경비(매입비, 사양비, 관리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 가축 및 가금비(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복식부기의무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의 범위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
-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광고선전비〔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는 연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015년 지출분부터 적용)
-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4조)
-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5조)
-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의 필요경비
-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 가액

나)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8조)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액 = 기말채권잔액 × 설정률

* 설정률 :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것
* 대손실적률=당해과세기간의대손금 ÷ 직전과세기간 종료일현재의 채권잔액

(2) 대손충당금의 환입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연도에 실제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실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연도말에 전부 환입합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각호의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9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①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② 퇴직급여 추계액×0%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퇴직금전환금 납부액

* 퇴직금전환금 : 1999. 3. 31 이전 납부 잔액
* 퇴직급여 추계액 :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

(2) 충당금의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합니다.

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감가상각의 요소

㈎ 취득가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① 매입한 고정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가건설한 고정자산 :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본적지출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률에 의하여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취득가액의 5%)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개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기존의 자산과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일이나 새로운 업종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2) 감가상각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자산별 / 신고구분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건축물	기타유형고정자산			
신 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무신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 폐기물매립시설은 2015.2.3.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무형고정자산 상각방법

자산별	상 각 방 법
개 발 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사용수익 기부자산	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⑶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기상각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또는 취득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매립한 양 ÷ 매립예정량

⑷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 및 한도미달액의 처리(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상각부인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연도에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이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시인부족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상한 금액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시인부족액을 세무서장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례】

전기 부인누계액	당기상각범위액	당기상각액	당기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전기부인누계액 중 당기시인부족액(30)은 필요경비로 추인되며 나머지금액(70)은 차기이월됩니다.

(5)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시부인(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합니다.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6) 즉시상각 의제(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필요경비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소액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어구 등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 시험기기·공구(금형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마)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무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및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나이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이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도 해당 사업자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34④)

(1)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34②)

㈎ 필요경비 산입한도

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주1] - 이월결손금

※ 주1 : 기준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법정·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전)

㈏ 기부금의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기부금

㈎ 100% 공제 기부금

-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76)

  *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① 필요경비 산입한도

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30%

② 기부금의 내용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3) 지정기부금(소득세법 §34①, 영 §80①)

㈎ 필요경비 산입한도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① + ②
①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② Min(㉠, ㉡)
㉠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 종교단체 외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 기부금의 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36①)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2014.1.1.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

5.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자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익법인신탁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공익법인 기부신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4) 기타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말하며, 이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법정기부금 : 5년(2011.12.31 이전 기부 분은 1년,
2012.1.1.부터 2013.12.31. 이전 기부 분은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바)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접대비」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1)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소득세법 §35, 영 §83~§85)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단, 2015.1.1.부터 2018.12.31.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원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10%)

- 월수의 계산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수입금액별 적용률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00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 × 1만분의 3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당해 과세기간 월수/12)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합산액)
※ 단, 2015.1.1.부터 2018.12.31.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중소기업은 2,400만원
②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 적용률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 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⑵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136③, 영§130)

㈎ 개요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인정

추가 손비인정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문화접대비 지출액
② 일반 접대비 한도액 × 20%

㈐ 문화접대비의 내용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

-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비디오물 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사) 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에는 특정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②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봅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 지급이자 × (당해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사업용자산의 합계액

⑥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⑦ 고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이나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⑧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매입세액

⑩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⑪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⑫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⑭ 선급비용

⑮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필요경비에 산입)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33의2, 소득세법 시행령 §78의3)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처분 손실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기에 업무용 승용차의 개인적 사용과 고가차량을 이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해당 규정을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자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2)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1) 업무용승용차 란

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소득세법 §33의2)

② 제외되는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차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2제9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통계법 §2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를 말한다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②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함)

③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소득세법시행령 §78의3②)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사용비율만큼 업무사용금액을 인정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용 또는 사업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1) **손금인정요건**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50조의2⑤, [국세청고시 제2016-12호, 제2조]에 따른「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2) **손금인정액**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 등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됩니다.

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인정됩니다.

(업무용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보유 또는 임차한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1천만원 × $\frac{\text{보유·임차월수}}{12}$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천만원 × $\frac{\text{과세기간의 월수}}{12}$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업무용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3) **업무사용비율**(소득세법 시행규칙 §42)

①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② 업무사용비율은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합니다.

4) **서류제출의무**(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때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때 P.157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1) **감가상각**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내용연수와 상각률) 및 제64조 제1항 제2호(감가상각방법)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감가상각비상당액**

①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 합니다.

②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보유 또는 임차한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8백만원 × $\frac{\text{보유·임차월수}}{12}$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8백만원 × $\frac{\text{과세기간의 월수}}{12}$

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합니다.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필요경비 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리방법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②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폐업에 따른 처분손실 등 처리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처분손실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8.4. .>

(3쪽 중 제1쪽)

과세 기간	. .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① 복식부기의무 여부	② 차량번호	③ 차종	④ 임차 여부	⑤ 총주행거리 (㎞)	⑥ 업무용 사용거리 (㎞)	⑦ 업무 사용비율 (⑥/⑤)	⑧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⑨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⑪ 감가상각비	⑫ 임차료	⑭ 유류비	⑮ 보험료	⑯ 수선비	⑰ 자동차세	⑱ 기타	⑲ 합계
										⑬감가상각비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⑳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계산

㉑ 차량번호	㉒ 업무사용금액			㉓ 업무외사용금액			㉙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㉚ 필요경비 불산입 합계 (㉔+㉙)	㉛ 필요경비 산입 합계 (⑲-㉚)
	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⑪또는⑬)×⑦)]	㉕ 관련비용 [⑲-⑪ 또는 ⑲-⑬)×⑦)]	㉖ 합계 (㉔+㉕)	㉗ 감가상각비 (상당액) (⑪-㉔ 또는 ⑬-㉔)	㉘ 관련비용 [⑲-⑪ 또는 ⑲-⑬-㉕]	㉙ 합계 (㉗+㉘)			
㉜ 합계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www.nts.go.kr 국세청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㉜ 차량번호	㉝ 차종	㉞ 취득일 (임차기간)	㉟ 전기이월액	㊱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㊲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㊳ 필요경비추인(산입)액	㊴ 차기이월액(㉟-㊳)
㊵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㊶ 차량번호	㊷ 양도가액	㊸ 세무상 장부가액				㊹ 처분손실 (㊷-㊸<0)	㊺ 당기필요경비 산입액 (㊹≤800만원)	㊻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㊹-㊺)
		㊹ 취득가액	㊺ 감가상각비 누계액	㊻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㊴)	㊼ 합계 (㊹-㊺+㊻)			
㊽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㊾ 차량번호	㊿ 차종	(51) 처분일	(52) 전기이월액	(53)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㊻)	(54) 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	(55) 차기이월액 (52+53-54)
(56) 합계						

작성방법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복식부기의무(①)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나. 차량번호란(②)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③) :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④) :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렌트,리스)를 적습니다.

마. 총주행거리란(⑤) :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바. 업무용사용거리란(⑥)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용사용비율란(⑦)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각호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아.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⑧)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⑨)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㉒)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㉓)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㉗)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㉘): ㉗의 금액과 ㉘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추인(산입)액(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7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㉛)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㉜) :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필요경비산입액(㉝) : ㉜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㉞) : ㉜의 금액이 ㉝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가. 전기이월액(㉟)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산입액(㊱) : 전기이월액(㉟)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제2편 제2장 참조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⑨란, ㉒~㊲란, ⑩~㉑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 코드란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30"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으로 적습니다.

2. ②일련번호란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 / 종목·⑧업종코드·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㉒~㉕)과 임차료(㉖~㉙)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정규증빙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㉓·㉗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입한 금액을 ㉔·㉘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㉕·㉙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㉚~㉝)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㉛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은 ㉝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과 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란은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란은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상의 ㉞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란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⑱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9. ⑲란은 1에서 ⑱란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⑳란은 ⑲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 3.2, 간편장부대상자 : 2.6)"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㉑란은 ⑰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⑰란의 기준소득금액과 ⑳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제2편(기장의무와 경비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⑮란은 ⑨수입금액에 ⑭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령 §143 ④)

〈사 례〉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30)
② 일 련 번 호							1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경기 고양 충장로 **
④ 과 세 기 간							2017. 1. 1.부터 2017.12.31.까지
⑤ 상 호							덕양빌딩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0-01-*****
⑦ 업 태 / 종 목					/	/	부동산/임대
⑧ 업 종 코 드							701201
⑨ 총 수 입 금 액							36,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0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㉞)				4,294,000
			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4,294,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20.0%
				⑮ 금액(⑨× ⑭)			7,200,000
		⑯ 필요경비 계 (⑬+ ⑮)					11,494,000
	⑰ 기준소득금액(⑨-⑯)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24,506,000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41.5%
				⑲ 금액{⑨×(1-⑱)}			21,060,000
	⑳비교소득금액(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67,392,000
㉑소득금액 (⑰ 또는 ⑳중 적은금액)							24,506,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 · 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4,294,000	㉓	4,000,000	㉔		㉕	294,000
임 차 료	㉖		㉗		㉘		㉙	
인 건 비	㉚		㉛		㉜		㉝	
계(㉞=⑪)	㉞	4,294,000	㉟	4,000,000	㊱		㊲	294,000

※ 첨 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3)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소득세법 제20호(5)]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3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토지, 주택 또는 건물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 항공기의 항행용역,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8.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간주임대료)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사 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덕양빅딩	②사업자등록번호	128-01-*****
③성명	허 공 평	④주민등록번호	480203-*******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⑤일련번호	거래처(공급자)		⑧ 매수	⑨ 거래품목	⑩ 거래금액
	⑥상호(성명)	⑦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00건자재	128-**-*****	1	페인트	100,000
2	00벽지	128-**-*****	2	벽지	194,000
계					294,000

(210㎜ × 297㎜(신문용지 54g/㎡))

4.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신고서 제11쪽 ❽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는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아니합니다.

< 견 본 >

❽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③ 상 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 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51	1	A주식회사 108-**-*****	10,000,000	6,500,000	3,500,000	39,600	
60	1	D주식회사 123-**-*****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60	2	F주식회사 223-**-*****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60	3	h주식회사 203-**-*****	10,000,000		10,000,000	2,000,000	
합계			30,000,000	16,000,000	14,000,000	2,800,0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 · 국내영업소 ·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연금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6

○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 6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 61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 또는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 ·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⑥ **필요경비**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연 900만원 한도)

총 연 금 액	연 금 소 득 공 제 금 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⑦ **소득금액 = ⑤ 총수입금액 - ⑥ 필요경비**

⑧ **소득세** · ⑨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 · 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만,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 · 등록 ·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3)

다.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

1)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가) 연금소득 과세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①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액을 원천징수 후 다음해 1월분 지급시 연말정산

② 사적연금(퇴직연금 · 개인연금)은 지급금액에 아래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이 (연금수령일 현재)	세 율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 사망할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 및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분리·합산 선택 가능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 공적연금 : 2002.1.1. 이후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지자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

• 국민연금,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

○ 사적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보험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 개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

다) 비과세 연금소득

○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에서 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장해연금 · 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라)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금액

가)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이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①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

$$\text{과세기준금액} = \text{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text{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

②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text{과세기준금액} = \text{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2002.1.1.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text{총기여금 납입월수}}$$

○ 사적연금

① 내용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그 연금수령액

㉠ 이연퇴직소득

㉡ 납입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은 금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기타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연금계좌평가액은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을 연금수령으로 봄
* 2013.3.1.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제 6년차임
*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연금수령한도와 무관하게 연금수령으로 봄

③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수령방법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연금외수령하면 재원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그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④ 연금외수령 판정방법

- 원칙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봄
-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특례 적용하지 않음)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과세대상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 무조건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금액: Min (㉠, ㉡)
  ㉠ 이연퇴직소득
  ㉡ (수령액 - 과세제외금액) -12,000,000

나)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되, 900만원을 한도로 함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총연금액이 4,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이 적용됨

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①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②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 : 연금 수령한 날

③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3) 기타사항

○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적연금소득합계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액 590만원 = 연금소득금액 610만원

○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다음의 금액임

- 공적연금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의 ⑮총연금액*
  소득세법 별지 24호 서식 (5)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⑮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총연금액을 뜻함

- 사적연금 :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
  소득세법 별지 24호 서식 (6)

4)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2015.05.13 개정)

관리번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① 법 인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금지급내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㉖ 종합소득 과세표준(⑰-㉕)		
⑯ 연 금 소 득 공 제			㉗ 산 출 세 액		
			세액감면	㉘「소득세법」	
				㉙「조세특례제한법」	
⑰ 연금소득금액(⑮-⑯)				㉚ 감면세액 계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 본 인		세액공제	㉛자녀 공제대상자녀(명)	
	기본공제 ⑲ 배우자			6세 이하 (명)	
				출생·입양자(명)	
	기본공제 ⑳ 부양가족(명)			㉜ 표준세액공제	
	추가공제 ㉑ 경로우대(명)			㉝ 외국납부	
	추가공제 ㉒ 장애인(명)				
	추가공제 ㉓ 부녀자			㉞ 세액공제 계	
	추가공제 ㉔ 한부모				
	㉕ 소득공제 계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㉟ 결 정 세 액				
	㊱ 기납부세액				
	㊲ 차감징수세액				

㊳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㊲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2016.02.25 개정)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 ]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계좌명세	⑨ 계좌번호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3.3.1. 전[ ] 이후[ ]			

소득명세	⑯ 귀속연월			⑰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㉒ 부득이한 사유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 · 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⑱일반연금						
		연금수령 ⑲의료비인출					㉓ 연금외수령 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연금수령 ⑳부득이한 사유						
		㉑연금외수령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㉔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㉕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㉗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㉘ 퇴직분				
기타소득	㉙ 연금외수령		15%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㉚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❷ 퇴직	❸ 세액이연 퇴직소득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라.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④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 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⑥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각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을 포함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⑨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⑭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⑮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⑯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⑰ 사례금

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⑲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⑮, ⑯, 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⑳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㉑ 연금외 수령한 소득

㉒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㉓ 뇌물

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㉕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수 입 시 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대금청산일, 자산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 중 연금외수령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위 이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7조)

가) 지급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 대가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나) 기타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다)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5) 분리과세 기타소득

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배당금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나)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기타소득과 위 나)의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의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위 가) 및 나)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 합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음
    - 합산이 불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됨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견 본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③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11,000,000				11,000,000
배당소득금액	51,400,000				51,400,00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4,000,000				4,000,00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88,281,200	26,196,000	9,000,000		53,085,200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26,196,000				0
근로소득금액	3,500,000				3,50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14,000,000				14,000,000
합계 (종합소득금액)	145,985,200	26,196,000	9,000,000		136,985,2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별 소득금액**

신고서 제5쪽부터 제11쪽까지 ❺~❽ 각 소득별 명세서의 각 소득금액을 옮겨 적고 이를 합계합니다. 즉, ❺이자소득 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❻배당소득 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 ❼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❿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②)에 적습니다.

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③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에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 규정과 일치시킴(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 후 10년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만 공제되므로,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발생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① - ② - ③ - ④)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0"으로 적으며, 그 남은 결손금은 ⑩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나. 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 45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명세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10년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에서 공제되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 부터 10년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금액·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⑩이월결손금 명세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발생과 공제내용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 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2012	10,000,000	7,000,000	3,000,000			0
	2013	6,000,000		6,000,000			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발생 과세기간** · ② **발생금액**

직전 10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로 적습니다.

③ **전기까지 공제액**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 **당기공제액**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공제액의 합계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의 금액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⑤ **소급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에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⑥ 그밖의 **공제액**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잔액**

각 과세기간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적습니다. (② - ③ - ④ - ⑤ - ⑥)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은 보통 그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0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직전과세기간

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2)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가) 신청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의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 서식)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결손금 중 소급공제할 금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4)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⑩ 이월결손금란은「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⑫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⑯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란과

⑰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⑯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⑭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각사업장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⑰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⑮종합소득결정세액 \times \frac{각사업장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⑱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⑲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소득금액산출세액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⑲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⑱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직전과세기간사업장별소득금액 - ⑫해당사업장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직전\ 과세기간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합계(⑫란의\ 합계)}$$

[별지 제40호의4서식] (앞 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신 청 내 용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구 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사업장	⑦상 호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사 업 장 소 재 지			
해당 과세기간	⑩이 월 결 손 금			
	⑪사 업 장 별 결 손 금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⑬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⑭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⑮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⑯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⑰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환급세액 계산	⑱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			
	⑲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⑳소 급 공 제 가 능 액(⑯-⑲)			
	㉑소 급 공 제 한 도 액 (⑰)			
	㉒환급세액(⑳과㉑ 중 작은 금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41〉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42〉 예금종류	예금
〈43〉 계좌번호	

신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70g/㎡)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15쪽의 ⓫ 소득공제명세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 견 본 〉

(31쪽 중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 국민연금		2,040,000
		② 배우자	1,500,000		⑩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양가족(3 명)	4,500,000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 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⑤ 장애인(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⑥ 부녀자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⑦ 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0	최공평	1	680202-1******	4	최성공	1	991105-2******
1	김성실	1	470306-2******				-
3	김행복	1	720405-2******				-
4	최길동	1	980211-1******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각 항목 기재요령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별지 제37호 서식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기부금이 있는 경우(이월분)에는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명세서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기재합니다.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①~③)**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나이 요건 등 충족 시)

② 추가공제(④~⑦)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를 공제합니다.

⑩ 국민연금 이외에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⑪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2주택 이상 보유시 적용제한)

⑭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⑰~㉑)는 관련 제목(조문)을 ⑰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⑲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⑳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⑱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가. 인적공제

1)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공제

나) 부양가족공제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7.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7. 1. 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권자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 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제수, 형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동거입양자는「민법」또는「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쪽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7.12.31. 이전 출생)인 경우 : 1명당 100만원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200만원

장애인의 범위 및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공제시 제출할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한함): 50만원

라) 한부모 소득공제 : 100만원

※ 추가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위 다)의 공제와 라)의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라)의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나.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1)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3)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4)

1) 공제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

공제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3) 공제 금액

-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며, 이때도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제출서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라.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장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자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 제4항)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며, 서로 공제 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공 제 한 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300만원 (ⓑ :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 300 · 500 · 1,500 · 1,800만원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공제대상 및 공제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임차자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연간 1.6% (2017.3.10.이후)[1] 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⑶ 공제한도

주택임차월세액 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주택마련저축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⑴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

1) 2016.3.16.부터 2017.3.9. 까지: 1.8%
2015.3.13.부터 2016.3.15. 까지: 2.9%
2014.3.14.부터 2015.3.12. 까지: 3.4%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⑴ 공제대상 및 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12.31. 이전 차입분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⑵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①·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다만, 2000.11.1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상환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위 (가)의 ① 및 ②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가)의 ①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2013. 12.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 경우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09. 2.12.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요건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공제한도

2015.1.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 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종합한도금액(연 300만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임.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000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임.

* 2012.1.1. 이후 차입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차입금부터는 공제한도액이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임.

⑷ 공제대상여부 판정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1주택(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3.12.31. 이전 차입분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2005.12.31 이전의 대출분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지 못함.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적용요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그 조합이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 = 출자·투자액 × 10%(~100%)

3) 공제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4) 공제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소득공제신청서」에「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3) 제출서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1) 적용요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조특법 부칙 제15227호, 2017.12.19 제1조 및 제37조)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단,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대중교통이용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액 각각 연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최대 5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소득공제액 = ㄱ)기본공제액 + ㄴ)추가공제액

ㄱ) 기본공제액 = MIN(①+②+③+④-⑤, ⑥한도)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한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 × 2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2018.1.1.이후에는 연간 250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

ㄴ) 추가공제액 = MIN(㉮, ㉯)

㉮ 기본공제의 한도초과금액: (①+②+③+④ - ⑤) - ⑥

㉯ 전통시장분① × 40% , 연간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분② × 40% , 연간 100만원 한도

3) 공제제외 사용금액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③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④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⑧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

⑨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업,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

⑩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⑪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것

⑫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4)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5)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① 신용카드사업자가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함.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②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집계표(내역서)를 조회·출력하여 첨부

③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2015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50%·100% 적용분은 종합한도 제외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의 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제 6 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의 ⓬세액감면명세서 및 ⓭세액공제명세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해당 법 조문(제목)**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단 세액공제 중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인 경우에는 ⓭세액공제명세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③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1)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세액감면 · 세액공제의 한도(소득세법 제61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여러 가지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감면후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특별상각·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세액감면·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43조(구분경리),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이 있습니다.

다. 세액공제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1) 공제대상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Up)이 배당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당가산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배당세액공제액 : Gross-Up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의 11/100

▶ **한도액** :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나)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1) 공제대상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2) 세액공제금액

$$\text{공제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기장신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text{공제율(20\%)}$$

(3) 공제한도 : 100만원

(4) 세액공제 배제

-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증명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 · 지변 · 화재 · 전쟁 · 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⑴ 외국납부 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납부소득세액으로 봅니다. (의제외국납부세액)

⑵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⑶ 외국납부소득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소득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①·②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방법은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text{한도액}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필요경비산입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월필요경비 산입불가)

②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⑷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⑴ 적용대상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적용합니다.

⑵ 세액공제 금액

①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소득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left(\frac{\text{상실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가액}}\right)$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사업소득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재해상실비율 ($\frac{\text{소득별상실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가액}}$)

※ 소득별 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frac{\text{소득별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3) 공제한도 : 재해손실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4) 공제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130만원 이하의 경우와 130만원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2)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71만5천원+130만원초과분×30%
- 한도액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바)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사)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Min(①, ②)×12% 또는 15%[1)]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2)])+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연 700만원

아) 특별세액공제

(1) 공제대상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합니다.

(가) 「소득세법」 상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성실사업자)

①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

1)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④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의 사실이 없을 것

(나)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2) 공제대상 특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1항)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 제 대 상	공 제 금 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4)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와 ㉯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 ㉯를 제외한 기본 공제대상자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지출액-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연 700만원
㉯ : 본인·장애인·중증질환환자등·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 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지출기간 : 2017.1.1.~2017.12.31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5)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

(가) 세액공제액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

-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기타 공납금
  〔이 경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및 방과후 학교수강료(교재구입비 포함),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포함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제9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당해연도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다)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의 학습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교습에 한함)
- 국외교육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라)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 일반적인 경우의 교육비공제대상금액 및 한도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합니다.

(마) 참고사항

-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및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 공제요건**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제4항)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14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가) 공제 대상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5%(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함),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위탁아동(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부금 한도액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없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30%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①+② ①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②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20%와 종교단체기부금 외의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나. 가 이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기부금)×30%

* 기준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산입액 - 원천징수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나)의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 (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부금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7)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가) 근로소득자 및 성실사업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성실사업자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합니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연도에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거부한 사업자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8)
  ① ERP 또는 POS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②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 결제대행업체·사업용계좌로만 매출대금을 결제받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④ 수입금액 공동관리 버스운송사업자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⑥ 신고한 사업용계좌로만 매출·매입 결제
  ⑦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된 면세인적용역소득자

(b) 장부 비치·기장 및 신고

- 복식장부(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포함)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과세기간을 제외함)

(c)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라) 그 밖의 거주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주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대 상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함	투자금액의 3% (중소,중견기업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함	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종 류	대 상	세액공제액
월세액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가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0% (월세액 한도 75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제 104의8)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한도 100만원)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27)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함	세액공제: Min(①,②) ① 20만원초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금액 × 5% ② 한도: 2천만원

2. 준비금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⓮ 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준비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나중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견 본 >

⓮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계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준비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명칭)을 적습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③ **연도**·④ **금액**

준비금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⑤ **당기환입액**·⑥ **환입액누계**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누계 + 당기환입액)을 적습니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당초의 손금산입액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당초의 손금산입액과 환입누계액이 같게 되어야 합니다.

⑦ **사업자등록번호**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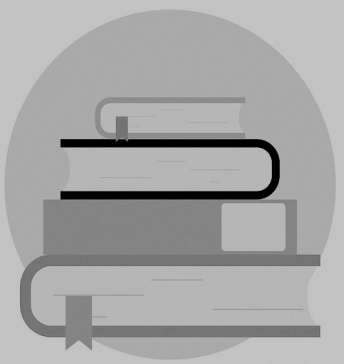

제 5 편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전자신고 매뉴얼 별도 제공)

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227
제2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 230
제3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 232
제4장 ARS 신고방식 / 238
제5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 241
제6장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 242
제7장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 244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1. 소득세 전자신고 개요

가. 전자신고 이용기간

○ 스마트폰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
- 신고기간 안에는 이미 한 전자신고는 재로그인하여 수정 가능

○ 홈택스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
- 신고기간 안에는 이미 한 전자신고 수정 가능(마지막 전자신고만 유효)

○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 **매일 07:00~23:30**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나. 전자신고방식

○ 신고서 작성방식(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임)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스마트폰에 의한 신고서 작성
- 스마트폰을 통해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M국세청)을 내려 받은 후 "종합소득세(단일소득단순경비율)"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
-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금액 등을 확인 후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 변환방식(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임)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한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정상 시 제출하는 방식 단,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를 참조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형식으로 신고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다. 서면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방법

○ 전자신고 제외서식인 첨부서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서식에 첨부하여 6월 11일(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7월 10일) 까지 제출가능 단,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기한연장 불가)

2. PC 전자신고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가입

가.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하여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을 클릭하여 필수프로그램을 설치

나. 회원가입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STEP.1 회원유형선택

→ STEP.2 본인인증

회원유형	본인인증수단
개인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공인인증서
	공공 I-PIN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본인명의 신용카드번호
법인 ·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보안카드

⊡ STEP.3 아이디 선택

기존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EITC 가입자는 기존아이디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신규아이디로 통합아이디를 생성합니다.

* 통합아이디 : 영문 또는 영문, 숫자, _(특수문자) 조합 6~20자
  대소문자 구분함 (예) abcd_1234(O), ABCD_1234(O)
  아이디입력 후 중복확인 을 클릭

⊡ STEP.4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 STEP.5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신규가입자는 회원정보등록)

* 사용자아이디 : 영문 또는 {영문, 숫자, _(특수문자)} 조합 6~20자
  대소문자 구분함 (예) abcd_1234(O), ABCD_1234(O)
  아이디입력 후 중복확인 을 반드시 클릭
* 비밀번호 : 영문,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하여 조합된 9~15자
* 휴대전화번호 : 전자고지안내, 우편물발송알림 신청 시 활용되므로 변경되면 My NTS 〉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
* 이메일 :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하게 활용되므로 변경 시 회원정보 수정
* 상담 ARS 비밀번호 :「세미래콜센터」126번 전화상담 시 개인인증이 필요한 모든 상담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

○ 스마트폰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

- 신고기간 안에는 이미 한 전자신고는 재로그인하여 수정 가능

○ 홈택스 전자신고는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

- 신고기간 안에는 이미 한 전자신고 수정 가능(마지막 전자신고만 유효)

○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 **매일 07:00~23:30**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제 2 장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1. 전자신고 가능서류

구분	근거법령	서식번호	서식명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서식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서식 부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부표)
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8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 서식	표준재무상태표
9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 서식	표준손익계산서
1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8 서식	표준원가명세서
1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 서식	표준합계잔액시산표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기부금 명세서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조정계산서
1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2)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1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7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8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세액공제신청서
19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20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서식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2.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 시 본인이 정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비회원로그인 방식으로 신고가능(본인인증필요)

나.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함

다. 세금신고 접수 확인

○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신고서 전송 후 수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자료가 홈택스에 저장되어 신고효력이 인정됨

제 3 장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요령

1.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세무대리인 등이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전송

2.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절차

가.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 사용 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

나.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다. 신고서 변환/제출전송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화면에 접근한 후, 파일변환 신고(회계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전송함

○ 형식검증, 내용검증 후 오류 발생 시 신고서 재작성, 정상 시 제출

라. 세금신고 접수 확인

○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남

-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결과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호의2	
2	연구 · 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3	
3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8호	
6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2	
7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규칙 별지제11호의3(1)	
8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2)	
9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3(3)	
1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별지제11호의5	
11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	
12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4	
13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5	
14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	
15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2	
16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3	
17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2호	
18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5호	
19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8호	
20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82호의2	
21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8호의2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22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국기법 제5조의2 제3항	
23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산입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4	접대비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5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5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8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7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9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8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0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9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2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0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6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1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2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3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7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4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1)	외부조정 제출면제
35	유형 ·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2)	외부조정 제출면제
3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4)	외부조정 제출면제
37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8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9	내용연수신고서(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0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1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1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1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3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1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44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3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5	영수증수취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40호의5	변환방식 연장제외
46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7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8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9	소득구분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0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1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2	부동산(주택 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3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소득법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4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6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5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6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7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7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7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8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7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2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3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구)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4	변환방식 연장제외
6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4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5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6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7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6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9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8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94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9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9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0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9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3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3	성실신고확인서	기재부 고시 제2012-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 비 고**

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인적사항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1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 4 장 ARS 신고방식

ARS 신고방식

■ **(신고대상) 모두채움신고서 제공대상자** 중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 **(신고방법) ARS(1544-9944)**로 전화 → 1번 종합소득세 선택 →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인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세액 확인 → 신고 완료**

＊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서 삭제 및 환급계좌 입력·변경도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번호 음성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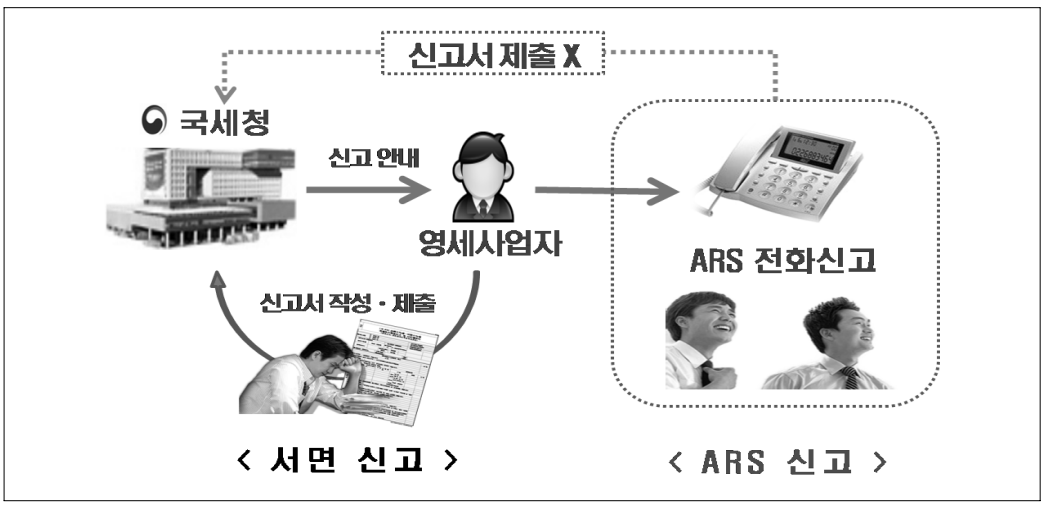

■ **(개별인증번호)** 안내문 첫페이지 받는사람 주소지 위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및 엔티스(CA01)에서도 **개별인증번호** 조회가능

■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병행) 납부할세액이 있는 납세자**(F유형 및 H유형 일부)에게는 세무서 계좌번호, 서코드 등 **납부서의 각종 기재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신고서 수정시 수정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액은 미기재)

■ **(보이는 ARS)** 음성안내로 인한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스마트폰(아이폰 제외) 사용자에게 보이는 ARS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선택

⇒

② 보이는 ARS
(터치식 이미지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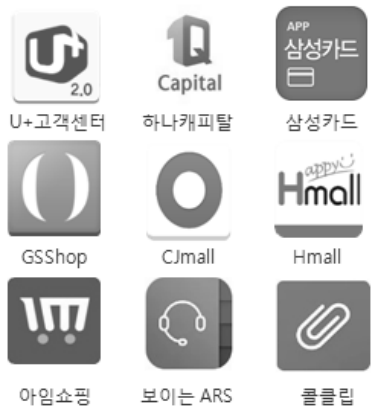

보이는ARS를 지원하는 앱(통신사, 홈쇼핑, 은행 등 58개)이 설치되어 있어야 구현가능 함

■ ARS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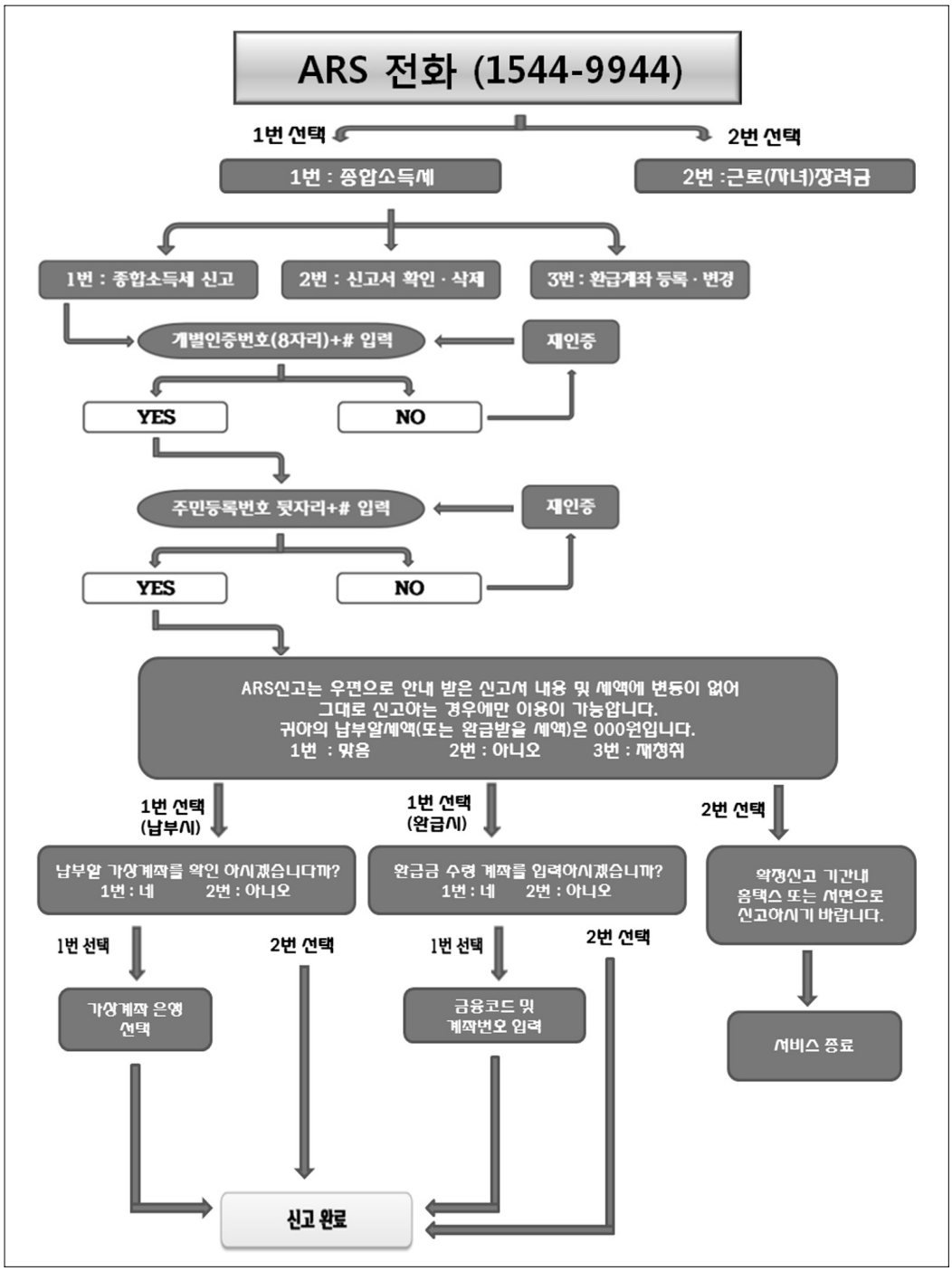
ARS 전화 (1544-9944)
1번 선택
2번 선택
1번 : 종합소득세
2번 :근로(자녀)장려금
1번 : 종합소득세 신고
2번 : 신고서 확인 · 삭제
3번 : 환급계좌 등록 · 변경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재인증
YES
NO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재인증
YES
NO
ARS신고는 우편으로 안내 받은 신고서 내용 및 세액에 변동이 없어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납부할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000원입니다.
1번 : 맞음 2번 : 아니오 3번 : 재청취
1번 선택
(납부시)
1번 선택
(환급시)
2번 선택
납부할 가상계좌를 확인 하시겠습니다까?
1번 : 네 2번 : 아니오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하시겠습니까?
1번 : 네 2번 : 아니오
확정신고 기간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선택
2번 선택
1번 선택
2번 선택
가상계좌 은행
선택
금융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서비스 종료
신고 완료

제 5 장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만 해당]

1.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을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려(다운) 받은 **국세청홈택스(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자료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인적공제 사항만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단, 연금 관련 공제는 수정 가능)
-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이월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가산세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

○ **인적공제사항을 완료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화면하단의 전자신고서 제출을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재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제 6 장 전자신고 시 유의사항

1. 오류검증 추가 사례

○ 기장의무는 복식부기를 선택하고 신고유형을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선택한 사업자가 세액공제 감면을 신청

○ 세액감면(면제)·공제를 기입하고 세액감면(면제)·공제신청서 미제출

○ 근로소득명세가 없는 납세자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를 기입

○ 사업소득명세가 없는 납세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공제 적용

○ 영수증수취명세서(1)상 ㉝송금명세서제출분 금액과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상 거래금액 합계액이 불일치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제출자가 사업소득명세서 상 신고유형이 추계-기준율(31번)이 아닌 경우

○ 기장세액공제 신청자의 사업소득명세서 상 신고유형이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이 아니거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소득명세서 상 신고유형이 간편장부가 아닌 경우

○ 세무대리인 신고하면서 신고서 표지의 ❸세무대리인 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대리구분, 관리번호 미입력

2. 세무대리인 기타 당부사항

○ 신고마감일(5.30~31) 전 조기신고 당부
- 신고마감일에 신고서 입력·전송 시 시스템 과부하, 제출건수 제한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오니 조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임납세자 신고도움자료 열람 당부
- 회원가입 없이 본인명의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수임동의가 가능하오니 수임납세자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재전송 등 변환파일 대량 전송 일체 금지
- 신고기간 중 회당 변환제출 가능건수를 100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동일 납세자의 신고서를 각기 다른 아이디로 작성하여 이중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변환방식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주업종코드의 정확한 입력 요청
- 건물건설업(451104)을 건물임대업(701201)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증빙서류의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제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전자신고한 서류(재무제표 등)를 재차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제출대상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7장 국세청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1. 회원가입

Q1 : 회원가입을 왜 다시 해야 하나요?
홈택스(이세로, 현금영수증) 기존 회원도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A : 그동안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각 사이트마다 회원가입하여 각각 로그인을 통해 이용하였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8개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워진 홈택스로 개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가입을 새로 하셔서 통합아이디를 생성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원가입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Q2 : 아이디/PW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니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 : 2/23 이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하셨습니까? 국세청에서 새로운 통합 홈택스 홈페이지가 오픈하였고 이전에 홈택스에 가입을 한 경우에도 번거롭지만 통합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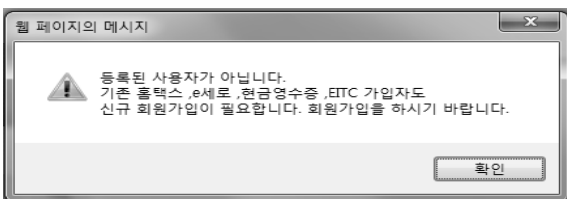

Q3 : 그러면 예전의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회원가입 시 기존에 가입한 아이디 정보(기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가 조회되며 타인이 먼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아이디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Q4 : 회원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회원유형선택(개인, 법인사업자·세무대리인) 후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공공I-PIN,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A : 본인인증 후 통합아이디 등록, 이용약관 동의, 사용자 상세정보 등록 후 [회원가입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이 됩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 - ●●●● 인증하기

취소 다음

STEP.1 회원유형선택 | STEP.2 본인인증 | STEP.3 아이디 선택 | STEP.4 이용약관 동의 | STEP.5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 STEP.6 가입완료

기존 가입내역 확인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장려세제	신규등록
아이디 : **hmyong1** 가입일시 : **2013-03-06**	아이디 : **hmyong1** 가입일시 : **2005-05-19**	가입정보없음	가입정보없음	신규아이디를 입력합니다.

· 통합아이디 | 중복확인

※영문 또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_) 조합, 6~20자리

이용약관 동의

STEP.1 회원유형선택 | STEP.2 본인인증 | STEP.3 아이디 선택 | STEP.4 이용약관 동의 | STEP.5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 STEP.6 가입완료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국세청 대민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포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포털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포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 수집·이용 목적 : 국세청 대민포털 제공 서비스등 업무 이용
- 수집 대상 개인정보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 서비스 이용과정 중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항목
접속IP정보, OS와 브라우저 종류, 서비스 이용기록, 인증서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수집 시~ 회원탈퇴일로부터 6개월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8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소득공제 불가)이 있습니다.

위의 정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취소 다음

Q5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회원가입하나요?

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또는 세무서 방문 후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확인(주민등록증 등) 후 해당 세무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Q6 : 세무대리인의 경우 어디로 회원가입 해야 하나요?

A : 세무대리인의 메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법인·세무대리인"로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Q7 : 세무대리인도 다시 회원가입 해야 하나요? 기존 수임등록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세무대리인 역시 (통합)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홈택스 수임동의건은 그대로 이관되어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건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 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홈택스에서는 수임동의 되어 있지 않고, 기존 e-세로에서만 수임동의된 납세자는 통합 홈택스에서 다시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Q8 : 휴대전화 인증이 안 됩니다.

A : ①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휴대전화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번호 명의의 휴대전화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모든 정보가 맞는데도 인증에 실패한다면 1600-1522(nice 정보통신)로 문의)

Q9 : 신용카드 인증이 안 됩니다.

A : 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②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인증 불가합니다.
(모든 정보가 맞는데도 인증에 실패한다면 1600-1522(nice 정보통신)로 문의)

Q10 : 다른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만 이용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을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후 우측의 "법인·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Q11 : 공공아이핀 ID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 공공아이핀을 선택 후 확인되는 팝업창에서 "신규발급"을 선택하거나 공공아이핀 홈페이지 www.g-pin.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818-30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 회원가입시 본인 인증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인증수단	개 인	법인 · 세무대리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O	X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	X	O
휴대전화	O	X
신용카드	O	X
아이핀	O	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X	O

Q13 : 회원가입에서 개인과 법인·세무대리인 유형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A : 좌측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메뉴를 위한 회원가입이고, 우측의 "법인·세무대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된 메뉴를 위한 회원가입입니다.

Q1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어디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A : "개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하는 경우 개인회원 가입과 동시에 사업자번호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Q15 : 회원정보,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로그인 후 상단의 [MY NTS] 클릭 좌측 하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16 : 비밀번호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영문, 숫자, 특수문자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조합된 9자~15자 설정을 해야하며 일련번호 등 쉬운 문자열 및 키보드상 나란히 있는 문자열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17 : 비밀번호 찾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송방법을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가 일치한 경우 [비밀번호 재발급]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연락처로 신규 비밀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인증(본인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정보, I-PIN) 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

Q18 : '개인 사업자'는 어떠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A : ① 대표자의 개인용(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 개인,개인사업자의 대표로 회원가입하는 경우) → 개인 및 개인사업장 관련 모든 세금신고 / 납부 / 증명서에 관련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세로 업무는 불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가능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각각의 사업용(사업자번호로 발급된)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② 사업용(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회원가입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번호에 해당되는 세금신고 / 납부 /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ex. 사업장이 A.B.C 3개가 있다.
A사업자번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A사업장의 세금신고, 납부, 증명발급 가능
B와 C의 사업장 관련 업무는 이용할 수 없음
이세로 업무는 A,B,C 사업장 각각 회원가입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Q19 :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개인, 개인사업자의 대표(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개인용 ● 범용인증서 ●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 홈택스 전용 인증서 ●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용 ● 범용인증서 ● 금융용 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인증서 ● ASP용(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용 ● 범용인증서 ● 전자세금용 ● ASP용(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도)

Q20 :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 발급받은 해당 인증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기관	홈페이지	전화번호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1577-5000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증권전산)	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566-2119

Q21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회원가입하나요?

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안카드가 없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보안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후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확인(주민등록증 등) 후 해당 세무서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Q22 :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홈택스 상단의 [공인인증센터] 클릭 - [공인인증서등록]의 "바로가기"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경우 "사업자(개인/법인)"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23 : 공인인증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A : 새로운 홈택스 통합 사이트에 새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바로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4: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공인인증서 창에서 본인의 이름이 확인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창에서 상호가 확인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것입니다.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의 [공인인증서 신청 및 관리] - [관리]에서 [공인인증서 신원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설치

Q25 : 보안모듈관리 프로그램 설치에서 설치되지 않고 화면이 멈춰있습니다.

A : 1. 팝업창 중간에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수동설치를 합니다.
2. ① 인터넷 창을 모두 닫고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or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Veraport20(보안모듈 관리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다시 홈택스로 접속 합니다.
② 홈페이지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 클릭 하면 자동설치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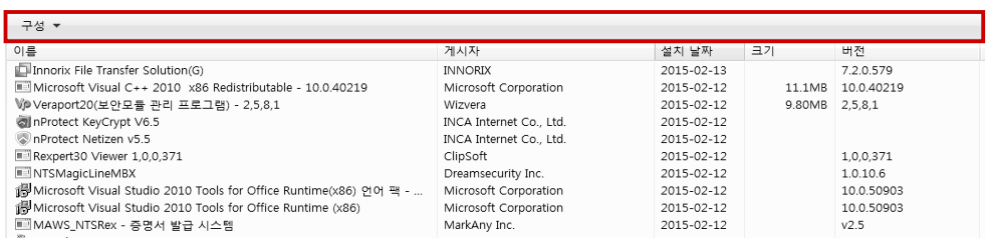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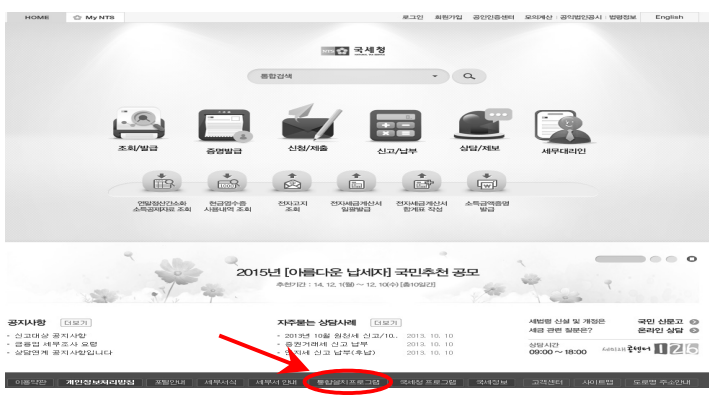

Q26 : 프로그램 설치 중 "국세청 암호화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중입니다..."로 오류가 나면서 진행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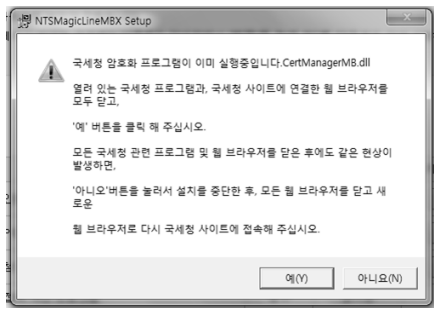

A : 1. 국세청 관련 인터넷 창을 모두 닫은 후 재접속합니다.
2. [작업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작업관리자시작] - 프로세스 탭 - 이미지이름 클릭 - iexplore.exe 클릭 - 프로세스 끝내기 클릭(iexplore.exe은 모두 끝내기)

Q27 : 필수 설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A :

프로그램명	기능	필수여부	설치상태	설치파일다운로드
MAGIC-PKI	공인인증서 32bit 전용	필수	설치됨	
NETIZEN	개인PC 보안 프로그램	필수	설치됨	
KEYCRYPT	국세청 홈페이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필수	설치됨	
IPINSIDE	부정접속 차단 프로그램	필수	설치됨	
REXPERT	리포트 뷰어 설치 프로그램	필수	설치됨	
E-SAFER	인터넷 증명서 위변조 방지	필수	설치됨	
VOICEYE	보고서 출력용 데이터 음성 변환 바코드	필수	설치됨	
INNOEX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필수	설치됨	

Q28 : 통합설치 프로그램 안내 화면에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됩니다.
설치완료 메세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됩니다.

A : 1. 필수설치를 클릭해도 설치가 안되면
"필수여부"에 "필수"로 되어있는 프로그램만 각각 "다운로드" 클릭해서 설치 진행합니다.
2. ① 설치가 안되거나 설치완료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모든 인터넷 창을 닫고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or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해당 프로그램 삭제 후 재설치 합니다.
② 재설치 후 새로고침(F5) 하거나 인터넷 창 닫고 다시 접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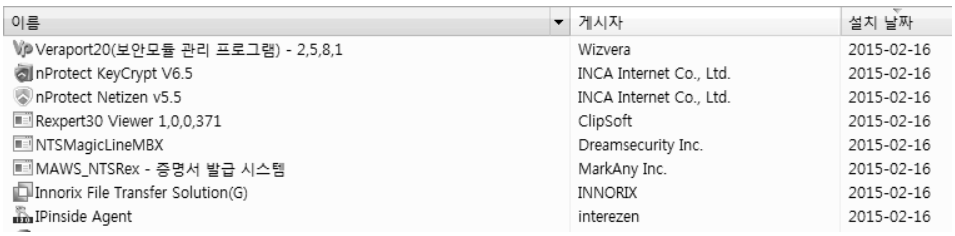

이름	게시자	설치 날짜
Veraport20(보안모듈 관리 프로그램) - 2,5,8,1	Wizvera	2015-02-16
nProtect KeyCrypt V6.5	INCA Internet Co., Ltd.	2015-02-16
nProtect Netizen v5.5	INCA Internet Co., Ltd.	2015-02-16
Rexpert30 Viewer 1,0,0,371	ClipSoft	2015-02-16
NTSMagicLineMBX	Dreamsecurity Inc.	2015-02-16
MAWS_NTSRex - 증명서 발급 시스템	MarkAny Inc.	2015-02-16
Innorix File Transfer Solution(G)	INNORIX	2015-02-16
IPinside Agent	interezen	2015-02-16

Q29 : 통합설치 프로그램 안내에서 반드시 전체설치 해야 하나요?

A : 필수설치만 해도 무관합니다.

Q30 : 홈페이지 이용 중 "SSO/EAM 오류입니다. 오류코드 -9404"가 발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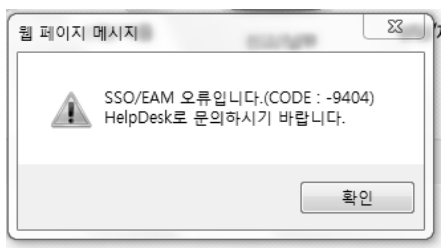

A : 한 아이디로 중복 로그인 하여 발생한 오류입니다.
차세대 통합 사이트 홈택스에서는 한 아이디로 여러 PC에서 동시접속이 불가합니다.
업무상 여러 PC에서 접속이 필요하다면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여 사용자별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Q3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가 무엇 인가요?

A : 공인인증서가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전용 보안카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인증이 비활성화 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개인으로 회원 가입하면 가능한가요?

A :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 회원 가입 후 사업자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등록 또는 세무서에서 수령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

Q33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기존에 이용을 했는데 지금 새롭게 오픈한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보안카드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 시 보안카드 난수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나오며 은행 보안카드와 동일하게 앞 2자리, 뒷 2자리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는 전자세금계산서 용도이므로 홈택스 증명발급 또는 신청/제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항목은 공인인증서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5. 부서사용자

Q34 : 부서사용자는 무엇인가요?

A : 차세대 통합 사이트 홈택스에서는 한 아이디로 여러 PC에서 동시접속이 불가합니다. 업무상 여러 PC에서 접속이 필요하다면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여 사용자별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35 : 부서사용자 신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클릭 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 메뉴를 선택하여 아이디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먼저 “대기”상태 이므로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MY NTS]에서 우측 하단의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기존 부서사용자가 확인됩니다.
승인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선택해서 “상태”를 “사용”으로 변경 후 [비밀번호 발송]을 클릭하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상단의 [회원정보조회]에서 비밀번호변경이 가능합니다.

Q36 : 부서사용자를 신청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 주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MY NTS]에서 우측 하단의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기존 부서사용자가 확인됩니다.
해당 아이디를 선택해서 “상태”를 “사용”에서 “중지”로 변경 후 [저장]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Q37 :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별도의 아이디로 홈택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서사용자아이디 신청하기]가 필요하며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부서사용자아이디를 ‘사용’으로 승인하면 아이디를 신청한 직원이 부서사용자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부서사용자 아이디 이용절차

STEP1.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① 업무담당자가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 화면 상단 오른쪽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클릭

② [세무대리인부서사용자ID 신청하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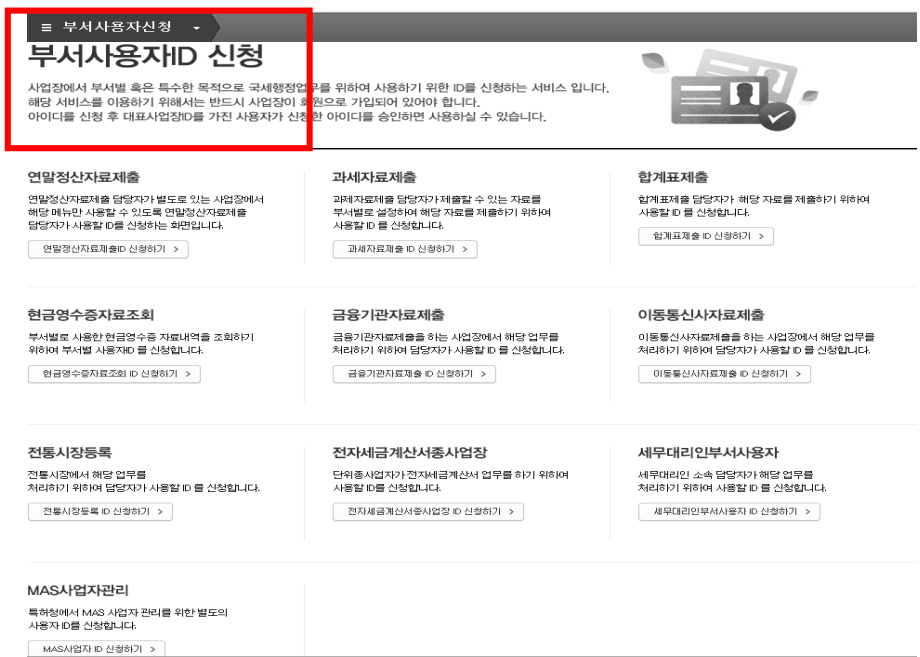

③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관해 동의

* ☐ 동의함 : √체크 시 다음화면으로 자동 분기됩니다.

④ 부서사용자별 아이디 신청하기 정보 입력 후 신청

* 실명인증 : 성명을 입력한 후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사업자 정보 : 아래 기본정보에서 입력한 사용자 아이디를 사용 승인요청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회원 가입여부 확인 를 클릭하여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부서사용자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서사용자 유형 :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 사용자 아이디 : 아이디 생성규칙에 따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입력 : 영문, 숫자, 특수문자 각1개 이상 포함하여 조합9~15자

* 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 세무대리인 아이디로 요청받은 부서사용자 아이디의 '사용' 승인완료 메일/SMS문자 발송 시 사용됩니다.

STEP2. 부서사용자 아이디 승인하기

① 세무대리인 사업자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홈페이지 상단 My NTS 클릭 후

②–1. 나의할일 을 클릭 후 *부서사용자 ID 승인 요청 바로가기

②–2.하단 부서사용자 아이디관리 > 를 클릭

③ 부서사용자 아이디관리 화면에서 승인할 아이디 선택

④ 부서사용자아이디 정보를 확인 후

* 상태 : ○사용 : 부서사용자 유형 별 요청한 사용자 아이디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변경합니다.
○중지 : 부서사용자 아이디가 더 이상 필요없는 경우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합니다.

※직원이 신청한 부서서사용자 아이디를 ⦿사용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 당시 업무담당자가 입력한 휴대전화번호이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주소 :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 당시 업무담당자가 입력한 이메일이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 발송** : ☑ 임시 비밀번호 발송 를 체크하여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임시비밀번호를 발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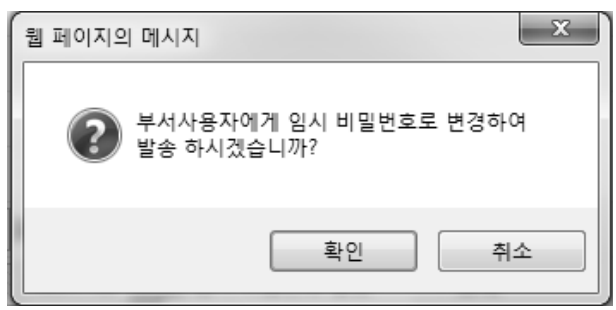

* 저장하기 : 부서사용자 아이디 상태를 사용 중지 중에서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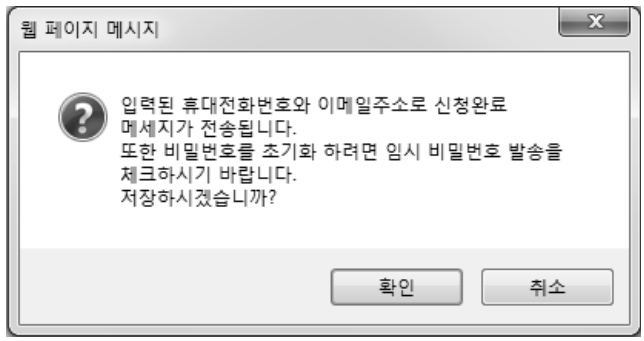

STEP3. 부서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① 담당자가 신청한 아이디/비밀번호로 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며 세무대리인 회원가입 시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② 부서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업무처리

※ 세무대리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WWW.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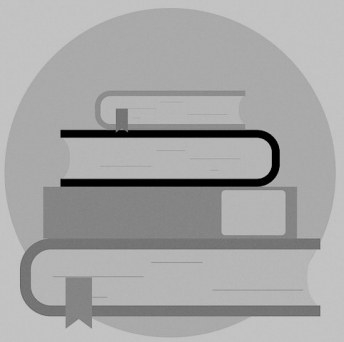

제 6 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267
제2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70
제3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 271
제4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 27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제1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1.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3.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4.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5.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귀속까지 100만원, '18귀속부터 120만원)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7.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제 2 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제3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text{주업종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함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나, 소득세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0억 (2017.5월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0억) 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9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10억) 이상 ＊음식 9억+음식환산 2.5억(5억×10/20)
④ 제조업 9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0억)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8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20억) 이상 ＊도매 18억+도매환산 2억(1억×20/10)
⑥ 음식점 9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10억) 이상 ＊음식 9억+음식환산 2억(1억×10/5)
⑦ A사업장(제조 5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10억) 이상 ＊제조 8억+제조환산 2억(4억×10/20)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20억) 이상 ＊도매 10억+도매환산 20억(5억×20/5)]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9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10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억	공동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25억 ＊임대 2억+ 임대환산 0.25억(1억×5/20)
④ 공동사업장A 제조 12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10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10억) 미만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10억) 이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제 4 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2.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소득,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 부터)

4. 서면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6. 서면소득 2015-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7.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제 목]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요 지]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 하더라도 교육비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8.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 징세과-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 소득세과-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1.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2. 소득세과-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3. 소득세과-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70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WWW.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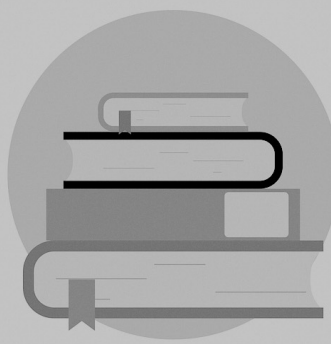

제 7 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28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300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313
- 약국사업자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329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343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356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368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383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396
- 학원강사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402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414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12.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424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1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436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서 작성사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제조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　　성 명 : 최 공 정

자료2 사업소득 내역

① 상호 : 세종상사　　업종 : 제조업/신발
2017년 총수입금액 1,500,000,000원, 필요경비 1,400,000,000원
※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② 신고유형 : 성실신고확인

자료3 가족사항 등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70. 2. 3	100,000,000원	
배 우 자	71. 4. 5	없 음	
모	47. 3. 6	〃	만 70세
자　　녀	96. 2. 7	〃	만 21세
자　　녀	97. 8. 9	〃	만 20세

① 모 의료비 지출액 : 8,000,000원
②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 각각 5,000,000원, 6,000,000원

자료4 기타자료

① 중간예납 4,000,000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연간 3,000,000원 납부하였음
③ 성실신고확인비용 : 2,0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부담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교육비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기본사항 ⇒ ❼ 사업소득명세서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 소득공제명세서 ⇒ ⓬세액감면명세서 ⇒ ⓭ 세액공제 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14성실신고확인에 ✓표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므로 14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신발 제조업 코드인 1920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500,000,000원

⑩ 필요경비 : 1,400,000,000원

⑪ 소득금액 : 100,0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0원을 적습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1,0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7,00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난에 본인, 배우자, 모, 1997년생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⑲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3,000,000원

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3,000,000원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10,000,000원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100,000,000원 {13쪽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10,000,000원 (15쪽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90,000,000원 (종합소득금액⑲ - 소득공제⑳)

㉒ 세율·㉓ 산출세액 : 35%, 16,600,000원

* 과세표준 90,000,000원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0,000원 = 16,600,000원

⓬ 세액감면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③ 세액감면 : 3,320,000원

$$\text{산출세액}(16{,}600{,}000\text{원})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소득금액}(100{,}00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100{,}000{,}000\text{원})} \times \text{감면율}(20\%)$$

* 수도권에서 소기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므로 20%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감면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⑤ 조특법상 세액공제 : 조특법 제126조6(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1,000,000원

* 확인비용(2,000,000원) × 공제율(60%) = 1,200,000원 (한도 : 100만원)

○의료비세액공제 : 750,000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경우이므로 의료비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와 의료비부담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5,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란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8,000,000원 중 사업소득금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5,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 8,000,000 - 100,000,000 × 3% = 5,000,000

○교육비세액공제 : 1,650,000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 11,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1,650,000원을 적습니다.

※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
=750,000+1,650,000=2,400,000

⑥ 세액공제 합계 : 3,55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⓰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4,000,00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4,000,000원(①~⑩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㉔ 세액감면 : 3,320,000원 (⓬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㉕ 세액공제 3,550,000원 (⓭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9,730,000원 (㉓-㉔-㉕)

㉙ 합계 : 9,730,000원 (㉖+㉗+㉘)

㉚ 기납부세액 : 4,000,000원 (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5,730,000원 (㉙-㉚)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5,730,000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90,00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1,660,000원 (㊶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000원 = 1,660,0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332,000원, ㉕×10/100=355,000원)
㊻・㊾・㊶・㊷란의 금액 : 973,000원 (㊸-㊹-㊺)

〈농어촌특별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는 현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이므로 다음과 같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㊶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⑱란)를 옮겨적고 20%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2,400,000원 (별지 제68호 서식 ⑱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480,000원 (㊶ × 세율20%)
㊼・㊾・㊶란의 금액: 480,000원 (㊹+㊺-㊻)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최 공 정	② 주민등록번호	7 0 0 2 0 3 – 1 * * * * * *
③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④ 주소지 전화번호	02-***-****	⑤사업장 전화번호	02-***-****
⑥ 휴 대 전 화	010-***-****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홍길동 ⑭ 사업자등록번호 2 0 8 – 3 6 – * * *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2조정3신고4(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 * * * * * * ⑱조정반번호 1 – * * *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100,000,000				
소 득 공 제		⑳	10,0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90,000,000	㊶	90,000,000	㊷	2,400,000
세 율		㉒	35%	㊷	3.5%	㊷	20%
산 출 세 액		㉓	16,600,000	㊸	1,660,000	㊸	480,000
세 액 감 면		㉔	3,320,000	㊹	332,000		
세 액 공 제		㉕	3,550,000	㊺	355,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9,730,000	㊻	973,000	㊹	480,000
가 산 세		㉗		㊼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9,730,000	㊾	973,000	㊼	480,000
기 납 부 세 액		㉚	4,000,000	㊿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5,730,000	(51)	973,000	㊾	480,000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㉜				㊿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5,730,000	(52)	973,000	(71)	480,00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2일 신고인 **최 공 정**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 련 번 호			1						
③사업장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④ 상 호			세종 상사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31-35-*****						
⑥ 기 장 의 무			1						
⑦ 신 고 유 형 코 드			14						
⑧ 주 업 종 코 드			192001						
⑨ 총 수 입 금 액			1,500,000,000						
⑩ 필 요 경 비			1,400,000,000						
⑪ 소 득 금 액(⑨-⑩)			100,000,000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1.1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100,000,000				100,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100,000,000				100,00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33쪽 중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1명)	1,000,000	특별공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최공정	1	700203-1******				
3	김부인	1	710405-2******				
1	김모친	1	470306-2******				
4	최자녀	1	970809-2******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3,000,000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3,000,000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10,0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320,000**	**131-35-*******
⑤ 세액감면 합계		**3,320,000**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1명)				**15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조특법 제126조의6(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00,000**		**1,000,000**	**131-35-*******
조특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6,000,000		2,400,0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55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33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		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 계						

⑰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4,000,000**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4,000,000**	㉖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5.3.13.>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최 공 정**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700203-1******
③ 상 호	**세종상사**	④ 사업자등록번호	131-35-*****

(2017)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470606-2*******	○						8,000,000	
			합 계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2일

제출자 **최 공 정**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2014.3.14>

의료비부담명세서

공제대상자 인적사항

① 성 명 **최 공 정**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700203-1******
③ 상 호 **세종상사**	④ 사업자등록번호 131-35-*****

2017 년 의료기관별 의료비 납부명세

⑤ 의료기관 명칭	⑥ 사업자 등록번호	⑦ 납부금액	⑧ 세액공제 대상액
국세의료원	503-**-*****	8,000,000	5,000,000
합 계		8,000,000	5,000,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2018. 3. 21.>

(앞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상 호	**세종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31-35-*****
③ 대표자	**최 공 정**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 성명 **최 공 정**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대상자	⑨ 성명 **최○○**	⑩ 신청인과의 관계	**자녀**

Ⅰ. 교육비 부담 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총교육비A)	⑮ 장학금 등 (B)		⑯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직접지급액	
2017.2.23	대학교		11,000,000			11,000,000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⑰ 구입연월	⑱ 품 목	⑲ 수 량	⑳ 단 가	㉑ 금 액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일

신청인 최 공 정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3.21>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세종상사	② 사업자등록번호 131-35-*****
	③ 대표자 성명 최공정	④ 생년월일 700203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❸ 신청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⑩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11				
⑩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74				
⑩③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3E				
⑩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20%	16,600,000	3,320,000	
⑩⑤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⑩⑥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⑩⑦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의2제5항	179				
⑩⑧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⑩⑨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⑪⓪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⑪①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⑪②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⑪③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⑪④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⑪⑤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⑪⑥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⑪⑦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⑪⑧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⑪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⑫⓪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⑫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⑫②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⑫③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⑫④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6항	13I				
⑫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⑫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F				
⑫⑦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H				
⑫⑧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⑫⑨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⑬⓪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⑬①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⑬②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⑬③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⑬④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⑬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⑬⑥ 기타		164				
⑬⑦ 세액감면 합계		1A4		16,600,0000	3,320,000	

❹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⑩⑦, ⑫⑧ ~ ⑬⑤에 대해 적용)

⑩⑥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감면한도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⑭ ⑪ × 20%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 ⑭)]	
	⑯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⑰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⑯ – ⑩)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2018 년 7 월 2 일

신청인 최공정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2018.03.21개정)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세종상사	사업자등록번호	131-35-*****
	성 명	최공정	생년월일	700203
	업 종	제조업 신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		

1. 당기분 공제대상세액 계산

(단위: 원)

신청 내용	과세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제세액 계산	① 성실신고확인비용	2,000,000
		② 공제가능액(① × 60/100)	1,200,000
		③ 공제한도액	1,000,000
		④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② 또는 ③ 중 적은 금액)	1,000,000

2. 당기 공제세액(=⑬): 1,000,000 원

(단위: 원)

과세기간	공제 대상세액							⑫ 결손 등 사유로 미공제액	⑬ 공제세액 (⑪-⑫)	⑭ 소멸	이월액 (⑪-⑬-⑭)
	⑤ 당기분 (=④)	이월분					⑪ 계 (⑤+⑥+⑦+⑧+⑨+⑩)				
		⑥1차연도	⑦2차연도	⑧3차연도	⑨4차연도	⑩5차연도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2일

신청인 최공정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1)] <개정 2018.3.2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①과세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호	세종상사	③성명	최 공 정
		②사업자등록번호	131-35-******		

1. 소득공제 (단위: 원)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금액 (소득공제금액)	비 고
④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소득공제명세서의란의 ⑲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
⑤			
⑥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공제금액) × 세율 – 산출세액

2. 세액감면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⑦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⓬세액감면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⑧			
⑨			
⑩			

3. 세액공제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세액	비 고
⑪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2,400,000원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⓭세액공제명세서의 ③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공제·감면세액(⑦~⑰) 합계		2,400,000원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추계(단독)와 복식기장(공동) 신고서 작성사례
- 부동산임대업(추계)과 음식점업(복식기장)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
성 명 : 김 한 국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1) 사업장 : 서울 중구 퇴계로 ××
① 업종 : 부동산임대업
② 2017년도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2016년도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③ 신고유형 : 추계신고

(2) 사업장 : 서울 중구 퇴계로 ×× 한국식당
① 업종 : 음식점업 (공동사업장,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50%)
② 2017년도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필요경비 40,000,000원
2016년도 총수입금액 : 70,000,000원
③ 신고유형 : 복식기장 (자기조정)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66. 2. 4		
배 우 자	67. 3. 5	없 음	
장 모	48. 5.10	〃	
자 녀 (1)	97. 7.20	〃	
자 녀 (2)	98. 9. 8	〃	

자료4 기타

①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720,000원을 납부하였음
② 중간예납세액 : 5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기본사항 ⇒ ❼ 사업소득명세서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 소득공제명세서 ⇒ ⓬ 세액감면명세서 ⇒ ⓭ 세액공제 명세서 ⇒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11]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기장의무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별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 만원이상	1억5천 만원미만	3천6백 만원이상	3천6백 만원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 만원이상	7천5백 만원미만	2천4백 만원이상	2천4백 만원미만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30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김한국의 부동산임대업은 단순경비율대상입니다.
* 단순경비율 코드 : 32

> ※ 소득세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⑧ 주업종 코드 : 점포(자기땅) 임대 코드인 7012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⑩ 필요경비 : 8,300,000원
* 부동산 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 41.5%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20,000,000 × 단순경비율 41.5% = 8,300,000

⑪ 소득금액 : 11,7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난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식당", "123-45-*****"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자 본인이 세무조정 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조정에 해당합니다.

*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코드 : 11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⑧ 주업종 코드 : 기타음식점업 552305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30,000,000원 (지분 50%)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 20,000,000원 (지분 50%)

⑪ 소득금액 : 10,000,000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1"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2.31"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이므로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⑮ 특수관계자 : 해당사항 없습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란에 11,70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10,0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21,7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4,500,000원(3명×150만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7,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720,000(연간 납입금액)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장모, 자녀 등 5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8,220,000원

⓰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500,00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500,000원(①~⑩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21,7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8,220,000원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13,480,000원 (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㉓ 산출세액 : 15%, 942,000원
* 과세표준 13,480,000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942,000원

⓭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86,820원 (100만원 한도)

* 산출세액(942,000원) × $\frac{\text{기장된 종합소득금액(10,000,000원)}}{\text{종합소득금액(21,700,000원)}}$ × 공제율(20%)

* 음식점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복식기장하므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명이므로 세액공제 금액 300,000원을 적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123-45-*****)를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456,82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⓯ 가산세 명세서(신고서 제21쪽)

* 부동산임대업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㉕ 세액공제 : 456,820원
* ⓭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485,180원 (㉓-㉔-㉕)

㉙ 합계 : 485,180원 (㉖+㉗+㉘)

㉚ 기납부세액 : 500,000원
* ⓰기납부세액명세서(신고서 제21쪽)의 ⑪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14,820원) (㉙-㉚)
* 기납부세액(㉚)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㉙)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0원 (㉝-㉞-㉟)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13,48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94,200원 (㊶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원 = 94,2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㉕×10/100=45,682원)

㊻·㊾·㊶·㊷란의 금액 : 48,518원 (㊸-㊹-㊺)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한 국	② 주민등록번호	660204-1******
③ 주 소	서울 종로구 퇴계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율 32 추계-단순율 40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 50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농협 ⑫ 계좌번호 123-45-67800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 기장 2 조정 3 신고 4 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21,700,000					
소 득 공 제	⑳	8,22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13,480,000	㊶	13,480,000	㊶		
세 율	㉒	15%	㊷	1.5%	㊷		
산 출 세 액	㉓	942,000	㊸	94,20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456,820	㊺	45,682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485,180	㊻	48,518	㊹		
가 산 세	㉗		㊼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485,180	㊾	48,518	㊼		
기 납 부 세 액	㉚	500,000	㊿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14,820	(51)	48,518	㊾		
납부특례세액 차감	㉜				㊿		
납부특례세액 가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14,820	(52)	48,518	(5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30		40		
②일련번호		1		1		
③사업장	소재지	중구 퇴계로 **		중구 퇴계로 **		
	국내1/국외9 / 소재지국코드	1	-	1		
④상호		부동산 임대		한국식당		
⑤사업자등록번호		123-**-*****		123-45-*****		
⑥기장의무		2		2		
⑦신고유형코드		32		11		
⑧주업종코드		701201		552305		
⑨총수입금액		20,000,000		30,000,000		
⑩필요경비		8,300,000		20,000,000		
⑪소득금액(⑨-⑩)		11,700,000		10,00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12.31		
⑭대표공동사업자	성명			김한국		
	주민등록번호			660204-1******		
⑮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11,700,000				11,700,000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10,000,000				10,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21,700,000				21,70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720,000
		②배우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3명)	4,5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한국	1	660204-1******	2	여장모	1	480510-2******
3	최서울	1	670305-2******				-
4	김중부	1	970720-1******				-
4	김충무	1	980908-1******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8,22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86,820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명)				300,000	
		(6세이하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456,82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		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 계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500,000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500,000	㉖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4.30>

(앞 쪽)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장	① 상 호	한국식당	②사업자등록번호	1 2 3 - 4 5 - * * * * *
	③ 소재지	서울 중구 퇴계로 **	④개업일	
대표공동사업자	⑤ 성 명	김한국	⑥주민등록번호	6 6 0 2 0 4 - 1 * * * * * *
	⑦ 주 소	서울 중구 퇴계로 **	⑧전화번호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30), 부동산임대업외(40)	⑩전환정비사업 조합원 등	여1 / 부2	⑪주업종 코 드	552305
⑫ 신고유형코드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성실신고확인(14),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⑬과세기간	17년1월 1일부터 17년12월31일까지

총수입금액					
⑭직전 과세기간	⑮해당 과세기간	⑯필요경비	40,000,000	⑰소득금액 (⑮ - ⑯)	20,000,000
70,000,000	60,000,000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동사업자		⑳ 분배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⑱성 명	⑲주민등록번호		㉑ 수입금액	㉒ 소득금액	㉓ 가산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㉔ 소득세	㉕ 농어촌특별세
합 계		100%	60,000,000	20,000,000			
김한국	660204-1******	50%	30,000,000	10,000,000			
정우정	661010-1******	50%	30,000,000	10,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금융소득 및 복식부기(자기조정) 신고서 작성사례
- 약국사업자

자료1 김성실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현황

① (주)ABC로부터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 1,500만원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375만원, 지방소득세 37만5천원

② (주)A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은행예금 이자소득 : 1,000만원
- 원천징수세액 : 이자소득 140만원, 지방소득세 14만원

③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 : 2,000만원

④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B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2,000만원
- 잉여금 처분 결의일 : 2017. 3. 21.
- 원천징수세액 : 배당소득 280만원, 지방소득세 28만원

자료2 약국 사업소득 현황

○ 2017년 수입금액 8,000만원, 필요경비 4,000만원
○ 2017년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사용금액 1천만원
○ 2016년 수입금액 7,000만원
○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2. 4. 1		
배 우 자	54. 3. 4	없음	
자 녀	85. 3. 1	〃	

자료4 기 타

○ 중간예납 : 2,40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은행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작성 ⇒ ❺이자소득 명세서 작성⇒ ❻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 ❼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⓫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⓱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⓭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⓰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작성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약국 사업자 등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⑨ 신고유형 : 11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❺ 이자소득 명세서 (신고서 제5쪽)

① 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11, 12, 13, 15, 16)으로 적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11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12

그 밖의 이자소득 : 1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 15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른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 16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 징수의무자 또는 소득발생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11코드), 20,000,000원(15코드), 10,000,000원(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 3,750,000원(11코드), 1,400,000원(13코드)을 각각 적습니다.

❻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

① 소득구분코드 :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21, 22, 23, 26, 28, 29)으로 적습니다.

* 금융소득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 21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는 배당소득 : 22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 2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2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 29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배당액 : 20,000,000원

*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대상금액 : 20,000,000원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배당소득(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 **포함**)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 이자소득(4,500만원)만으로 금융소득이 이미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2,000만원 전액이 배당가산 대상금액임

⑦ 배당가산액 : 2,200,000원

* ⑥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20,000,000원 × 가산율(11%) = 2,200,000원

⑧ 배당소득금액 : 22,200,000원

* ⑤ 배당액 20,000,000원 + ⑦배당가산액 2,200,000원 = 22,200,000원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 2,800,000원을 적습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중부약국"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206-**-*****"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의약품 소매업 코드인 52311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90,000,000원

> ○ 소득세과-338, 2012.04.12
>
>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⑩ 필요경비 : 40,000,000원

⑪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사업소득을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45,000,000원을 이자소득금액란에,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22,200,000원을 배당소득금액란에, ❼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의 합계액 50,000,000원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1985년생 자녀1명은 만 20세를 넘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⑧ 인적공제 계(①~⑦) : 3,000,000원

㉒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㉘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3,000,000원

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신고서 제23쪽)

〈❶금융소득명세〉

① 비영업대금이익 : 15,000,000원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11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20,000,000원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15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 0원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 10,000,000원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13코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⑤ 이자소득 합계 : 45,000,000원 (①+②+③+④)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 배당소득 : 20,000,000원

*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⑦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0원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 26코드의 ⑤배당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 0원 (해당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⑨ 배당소득 합계 : 20,000,000원 (⑥+⑦+⑧)

〈❷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⑩ 금융소득금액 : 65,000,000원 (⑤+⑨)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 20,000,000원

⑫ 기준초과금액 : 45,000,000원 (⑩-⑪)

⑬ 배당가산액 : 2,200,000원

*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의 ⑦배당가산액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50,000,000원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⑮ 종합소득금액 : 97,200,000원 (⑫+⑬+⑭)

⑯ 소득공제 : 3,000,000원

*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⑰ 과세표준 : 94,200,000원 (⑮-⑯)

⑱ 기본세율·⑲ 산출세액 : 35%, 18,070,000원

⑳ 〔⑪×14/100, 9/100〕 : 2,800,000원

* ⑪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 징수세율 14/10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적습니다. (2001.1.1~2004.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15/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㉑ 비교산출세액 계 : 20,870,000원 (⑲+⑳)

㉒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 : 3,750,000원

㉓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50,000,000원 (⑩-(①+③))

㉔ 〔㉓×14/100, 9/100〕 : 7,000,000원

* ⑳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 50,000,000원

* ⑭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㉖ 소득공제 : 3,000,000원

*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㉗ 과세표준 : 47,000,000원 (㉕-㉖)

㉘ 기본세율·㉙산출세액 : 24%, 6,060,000원

* ㉙산출세액 계산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㉚ 비교산출세액 계 : 16,810,000원 (㉒+㉔+㉙)

㉛ 종합소득산출세액 : 20,870,000원 (㉑와㉚중 큰 금액)

〈4배당세액공제〉

㊵ ⑬와 (㉛-㉚) 중 적은 금액〕 : 2,200,000원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 2,200,000원

* ⓱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㊵란에 산출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④ 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2,2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⓰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2,400,000원

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 5,150,000원

* ❺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⑥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2,800,000원

* ❻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옮겨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10,350,000원 (①~⑩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117,200,000원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3,000,000원

*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114,200,000원 (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㉓ 산출세액 : 35%, 20,870,000원

* ⓱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㉛종합소득산출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㉕ 세액공제 : 2,270,000원

* ⓭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18,600,000원 (㉓-㉔-㉕)

㉙ 합계 : 18,600,000원 (㉖+㉗+㉘)

㉚ 기납부세액 : 10,350,000원

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8,250,000원 (㉙-㉚)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114,20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2,087,0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㉕×10/100=227,000원)

㊻・㊾ 란의 금액 : 1,860,000원(㊸-㊹-㊺)

㊿ 기납부세액 : 795,000원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 10,350,000원 -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 명세서의 ①란) 2,400,000원〕 × 10% = 795,000원

51・52란의 금액 : 1,065,000원 (㊾-㊿)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성 실	② 주민등록번호	5 2 0 4 0 1 – 1 * * * * * *
③ 주 소	인천 남동구 인하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무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117,200,000				
소 득 공 제		⑳	3,0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114,200,000	㊶	114,200,000	㊶	
세 율		㉒	35%	㊷	3.5%	㊷	
산 출 세 액		㉓	20,870,000	㊸	2,087,00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2,270,000	㊺	227,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18,600,000	㊻	1,860,000	㊹	
가 산 세		㉗		㊼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18,600,000	㊾	1,860,000	㊼	
기 납 부 세 액		㉚	10,350,000	㊿	795,000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8,250,000	(51)	1,065,000	㊾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㉜				㊿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0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8,250,000	(52)	1,065,000	(5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남인천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이자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1	(주)ABC	216-81-*****	15,000,000	3,750,000
13	1	(주)AA은행	201-81-*****	10,000,000	1,400,000
15	1	CC.ltd	-	20,000,000	-

(제5쪽)

[별지 제40호 서식(1)]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번호	배당지급법인 ③ 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가산율)	⑧ 배당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21	1	(주)BB / 206-81-*****	20,000,000	20,000,000	2,200,000	22,200,000	2,800,000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40								
②일련번호			1								
③사업장	소재지		남동구 인하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					
④상호			중부약국								
⑤사업자등록번호			206-**-*****								
⑥기장의무			1								
⑦신고유형코드			11								
⑧주업종코드			523111								
⑨총수입금액			90,000,000								
⑩필요경비			40,000,000								
⑪소득금액(⑨-⑩)			50,00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⑭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45,000,000				45,000,000
배당소득금액	22,200,000				22,200,00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50,000,000				50,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117,200,000				117,20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②배우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명)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3,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성실	1	520401-1******				
3	이행복	1	540304-2******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3,0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2,200,000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2,27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		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계						

⑰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2,400,000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5,150,000	㉒	
	배당소득	⑥	2,800,000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10,350,000	㉖	

[별지 제40호 서식(1)] (23 쪽)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❶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15,000,000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20,000,000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20,000,000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 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10,000,000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45,000,000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20,000,000

❷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분	금 액
⑩금융소득금액(⑤+⑨)	65,000,000
⑪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⑫기준초과금액(⑩-⑪)	45,000,000
⑬배당가산액	2,200,000
⑭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50,000,000
⑮종합소득금액(⑫+⑬+⑭)	97,200,000
⑯소득공제	3,000,000
⑰과세표준(⑮-⑯)	94,200,000
⑱기본세율	35%
⑲산출세액	18,070,000
⑳[⑪× (14/100, 9/100)]	2,800,000
㉑비교산출세액계(⑲+⑳)	20,870,000
㉒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3,750,000
㉓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⑩-(①+③)}	50,000,000
㉔[㉓× (14/100, 9/100)]	7,000,000
㉕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50,000,000
㉖소득공제	3,000,000
㉗과세표준(㉕-㉖)	47,000,000
㉘기본세율	24%
㉙산출세액	6,060,000
㉚비교산출세액 계(㉒+㉔+㉙)	16,810,000
㉛종합소득산출세액(㉑와 ㉚ 중 큰 금액)	20,870,000
❹ 배당세액공제	
㊵[⑬와 (㉛-㉚) 중 작은 금액]	2,000,000

❸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㉜[(②+⑦)× (14/100)]	
㉝[③× (25/100)]	
㉞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㉟소득공제	
㊱과세표준(㉝-㉞)	
㊲기본세율	
㊳산출세액	
㊴종합소득산출세액(㉜+㉝+㊳)	

210㎜×297㎜(백상지 80g/㎡)

4. 근로소득 및 복식기장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대학교수

자료1 김성공 교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

(1) 지급처 : A+대학교

(2)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7,750,000원

(3)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① 소득공제 :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명 150만원

② 세액공제 대상 :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 100만원, 교육비 600만원 지출

(4)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 2,925,000원, 지방소득세 292,500원

자료2 사업소득자료 : 연구개발용역 대가

(1) X법인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음. (직전연도 수입금액 : 9천만원)

① 연구용역대가 1억원, ② 용역제공완료일 2017.11.30

(2)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함

① 필요경비 7천만원, ② 소득금액 3천만원

(3)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3,000,000원, 지방소득세 300,000원

자료3 기타소득 자료 : 원고료

(1) C출판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원고료를 지급받음.

① 원고료 1,000만원, ② 법정필요경비(80%) : 800만원

③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 400,000원, 지방소득세 40,000원

자료4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7. 4.26		근로소득
배 우 자	58. 4.16	없 음	
자 녀	92. 8. 9	〃	
자 녀	98. 2.17	〃	

신고서 작성 해설

□ 김성공 교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X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지급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 김성공 교수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나,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김성공 교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무조건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세무대리인 ⇒ ❼사업소득명세서 ⇒ ❽근로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명세서 ⇒ ⓫소득공제명세서 ⇒ ⓭세액공제명세서 ⇒ ⓰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⑨ 신고유형 : 12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자로서의 소득과 비사업자로서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신고유형을 적습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세무대리인 (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⑬성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전화번호, ⑯대리구분, ⑰관리번호, ⑱조정반번호를 적습니다. ⑮대리구분 란에는 2조정에 ✓표를 합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사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연구 및 개발업 코드인 730000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1억원)을 적습니다.

⑩ 필요경비 : 70,000,000원

* 연구용역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⑪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 1

㉑ 상호(성명) : X법인

㉒ 사업자등록번호 : 209 - 81 - *****

㉓ 소득세 : 3,000,000원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① 소득구분 코드 : 51

② 일련번호 : 1

③ 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근무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참조).

⑤ 총수입금액(총급여액·총연금액) : 50,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㉑ 총급여)

⑥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 12,25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㉒ 근로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 37,750,000원(⑤-⑥)

⑧ 원천징수소득세 : 2,925,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㊹결정세액)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❼사업소득명세서의 ⑪소득금액의 합계액,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㉓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란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67,75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4,500,000원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63,250,000원 (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 : 24%

㉓ 산출세액 : 9,960,000원 (63,250,000 × 24% - 5,22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 660,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6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 5,549,667원

$$=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9{,}960{,}000\text{원}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 37{,}75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 67{,}750{,}000\text{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4,249,667원×30%)=1,989,900원(공제한도인 660,000원을 공제)

a) 공제액

구 분	공제금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 120,000원

공제대상금액 : 1,000,000원

○교육비 : 900,000원

공제대상 금액 : 6,000,000원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기재하고 15%를 적용한 금액 900,000원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83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⓰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⑦ 원천징수세액(사업소득) : 3,000,000원을 적습니다.

⑧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 : 2,925,000원(❽근로소득명세서의 ⑧소득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5,925,000원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㉕ 세액공제 : 1,830,000원

* ⓭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8,130,000원 (㉓-㉔-㉕)

㉙ 합계 : 8,130,000원 (㉖+㉗+㉘)

㉚ 기납부세액 : 5,925,000원

* ⓰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2,205,000원 (㉙-㉚)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2,205,000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2.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63,25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996,000원 (㊶ × 세율2.4% - 누진공제액522,000원 =996,0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 ㉕×10/100=183,000원)
㊻·㊾ 란의 금액 : 813,000(㊸-㊹-㊺)
㊿ 기납부세액 : 592,500원
51·52란의 금액 : 220,500원 (㊾-㊿)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성 공	② 주민등록번호	570426-1******
③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박조정 ⑭사업자등록번호 135-**-***** ⑮전화번호 031-***-****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2-****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67,750,000				
소 득 공 제		⑳	4,5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63,250,000	㊶	63,250,000	㊶	
세 율		㉒	24%	㊷	2.4%	㊷	
산 출 세 액		㉓	9,960,000	㊸	996,00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1,830,000	㊺	183,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8,130,000	㊻	813,000	㊹	
가 산 세		㉗		㊼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8,130,000	㊾	813,000	㊼	
기 납 부 세 액		㉚	5,925,000	㊿	592,500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2,205,000	(51)	220,500	㊾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㉜				㊿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2,205,000	(52)	220,500	(5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공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박 조 정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수원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40								
②일련번호			1								
③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기장의무			1								
⑦신고유형코드			12								
⑧주업종코드			730000								
⑨총수입금액			100,000,000								
⑩필요경비			70,000,000								
⑪소득금액(⑨-⑩)			30,00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1	X법인	209-81-*****	3,000,000	

[별지 제40호서식(1)]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③상 호(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51	1	A+대학교 206-**-*****	50,000,000	12,250,000	37,750,000	2,925,000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30,000,000				30,000,000
근로소득금액	37,750,000				37,75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67,750,000				67,75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②배우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1명)	1,5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4,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성공	1	570426-1******				
3	이성실	1	580416-2******				-
4	김공정	1	960217-2******				-
4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4,5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1명)				15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000,000	12%	120,000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6,000,000	15%	900,000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83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⓯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계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3,000,000	㉔	
	근로소득	⑧	2,925,000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5,925,000	㉖	

5.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대전 중구 보문로 ××
성 명 : 이 세 종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상 호 : 대전예체능학원
사업장 : 대전 중구 보문로 ××

2017년도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필요경비 : 35,000,000원
2016년도 총수입금액 : 50,000,000원

신고유형 : 간편장부, 업종코드 : 809003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女	67. 1. 3	25,000,000	사업소득
배 우 자	66. 3. 5	30,000,000	근로소득
자 녀 (1)	97. 9. 1	없 음	
자 녀 (2)	98. 1. 8	〃	

※ 배우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2명의 부양가족 공제하였음

자료4 기부금 내역

기부자	기부금단체	기부금종류	기부금액
본 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100,000원
본 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500,000원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2,000,000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이월액 :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간편장부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기본사항 ⇒ ❼ 사업소득명세서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 소득공제명세서 ⇒ ⓭ 세액공제 명세서 ⇒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20]간편장부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 경우이므로 20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예체능계열학원 코드인 809003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⑩ 필요경비 : 35,000,000원

⑪ 소득금액 : 25,000,000원(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25,000,000원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⑥ 부녀자공제 : 5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2,000,000원

⑭ 기부금공제 : 500,000원

* 지정기부금 공제액 : 이월액 500,000원(2013.12.31.이전 지급분)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25,000,000)$\times\frac{10}{100}$ =2,500,000

>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⑮ 특별공제합계 : 근로소득이 없는 자 란에 50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난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2,500,000원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70,000원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 금액 : 100,000원

세액공제 : 90,909원

* 공제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0,000원) × $\frac{100}{110}$ = 90,909

⑥ 세액공제 합계 : 160,909원

*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⑯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원(①~⑩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25,000,000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2,500,000원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22,500,000원 (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 : 15%

㉓ 산출세액 : 2,295,000원

* 과세표준 22,500,000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 =산출세액2,295,000원

㉕ 세액공제 : 160,909원(⓭ 세액공제 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2,134,091 (㉓-㉔-㉕)

㉙ 합계 : 2,134,091원 (㉖+㉗+㉘)

㉚ 기납부세액 : 300,000원 (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1,834,091원 (㉙-㉚)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834,091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22,50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229,500원 (㊶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원 = 229,5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 ㉕×10/100=16,091원)

㊻·㊾·㊿·(52)란의 금액 : 213,409원 (㊸-㊹-㊺)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이 세 종	② 주민등록번호	670103-2******
③ 주 소	대전 중구 보문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⑫ 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 ⑬성 명 |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전화번호 | ⑯대리구분 [1]기장[2]조정[3]신고[4]성실확인 |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25,000,000					
소 득 공 제	⑳	2,5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22,500,000	㊶	22,500,000	㊶		
세 율	㉒	15%	㊷	1.5%	㊷		
산 출 세 액	㉓	2,295,000	㊸	229,50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160,909	㊺	16,091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2,134,091	㊻	213,409	㊹		
가 산 세	㉗		㊼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2,134,091	㊾	213,409	㊼		
기 납 부 세 액	㉚	300,000	㊿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1,834,091	(51)	213,409	㊾		
납부특례세액 차감	㉜				㊿		
납부특례세액 가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1,834,091	(52)	213,409	(5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이 세 종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전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40						
②일련번호			1						
③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보문로××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호			대전학원						
⑤사업자등록번호			305-90-*****						
⑥기장의무			2						
⑦신고유형코드			20						
⑧주업종코드			809003						
⑨총수입금액			60,000,000						
⑩필요경비			35,000,000						
⑪소득금액(⑨-⑩)			25,00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⑭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25,000,000				25,0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25,000,000				25,00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②배 우 자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명)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명)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500,000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500,000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2,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500,000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이세종	1	670103-2******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2,5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퇴직연금			(15%)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지정기부금			(30%)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000	100/110	90,909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60,909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⓯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 계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300,000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300,000	㉖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2018.3.21 개정) (앞 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2017귀속)

①주소지	대전 중구 보문로 ××		②전화번호		
③성 명	이 세 종		④생년월일 670103		
사업장	⑤ 소 재 지	중구 보문로 ××			
	⑥ 업 종	예체능계열학원			
	⑦ 주 업 종 코 드	809003			
	⑧ 사업자등록번호	305-90-*****			
	⑨ 과 세 기 간	2017. 1. 1.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2017.12.31.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㊵)	(30, 40)	(30, 40)	(30, 40)
총수입금액	⑪장부상 수입금액	60,000,000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 (⑪-⑫+⑬)	60,000,000			
필요경비	⑮장부상 필요경비 (부표 ㉝의 금액)	35,000,000			
	⑯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⑰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⑱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⑯+⑰)				
⑲차가감 소득금액(⑭-⑱)					
⑳기부금 한도초과액					
㉑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㉒ 해당 연도 소득금액 (⑲+⑳-㉑)		25,000,000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5 월 31 일

제 출 인 **이 세 종**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전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2018.3.21개정) (앞 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17귀속)

①주소지 **대전 중구 보문로 ××**				②전화번호		
③성 명 **이 세 종**				④생년월일 **670103**		
사업장		⑤ 소 재 지	**중구 보문로 ××**			
		⑥ 업 종	**예체능계열학원**			
		⑦ 주 업 종 코 드	**809003**			
		⑧ 사업자등록번호	**305-90-*******			
		⑨ 과 세 기 간	**2017. 1. 1.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2017.12.31.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㊵)	(30, 40)	(30, 40)	(30, 40)
장부상 수입금액		⑪ 매 출 액	**60,000,000**			
		⑫ 기 타				
		⑬수입금액 합계(⑪+⑫)	**60,000,000**			
필요경비	매출원가	⑭ 기초재고액				
		⑮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24>)	**2,000,000**			
		⑯기말재고액				
		⑰매출원가(⑭+⑮-⑯)	**2,000,000**			
	제조비용	재료비 ⑱기초 재고액				
		재료비 ⑲당기 매입액				
		재료비 ⑳기말 재고액				
		재료비 ㉑당기 재료비 (⑱+⑲-⑳)				
		㉒ 노 무 비				
		㉓ 경 비				
		㉔ 당기제조비용 (㉑+㉒+㉓)				
	일반관리비등	㉕ 급 료	**20,000,000**			
		㉖ 제세공과금	**3,000,000**			
		㉗ 임 차 료	**10,000,000**			
		㉘ 지 급 이 자				
		㉙ 접 대 비				
		㉚ 기 부 금				
		㉛ 감가상각비				
		㉜ 차량유지비				
		㉝ 지급수수료				
		㉞ 소 모 품 비				
		㉟ 복리후생비				
		㊱ 운 반 비				
		㊲ 광고선전비				
		㊳ 여비교통비				
		㊴ 기 타				
		㊵ 일반관리비등계 (㉕~㊴의 합계)	**33,000,000**			
	㉝필요경비 합계 (⑰+㊵)		**35,000,000**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7.2.24.>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❶ 인적사항	①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대전 예체능학원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이 세 종	④주민등록번호	670103-2******
	⑤주 소	대전 중구 보문로 ××	(전화번호 :)	
	⑥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보문로 ××	(전화번호 :)	

❷ 해당연도 기부 명세

구 분			기 부 처		⑫기부자			기부 명세				
									기부금액			
⑦유형	⑧코드	⑨기부 내용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⑬ 합계 (⑭+⑮)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⑮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⑯기타
정치자금	20	금전						1		100,000		
종교단체	41	금전	○○종교단체					1		500,000		

❸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600,000		100,000		500,000			
본 인	600,000		100,000		500,000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❹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 경비	세액(소득) 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41	2016	2,500,000	2,000,000	500,000		500,000	0	0

210㎜×297㎜(백상지 80g/㎡)

6.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간편장부대상자인 노래방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성 명 : 김 흥 덕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상 호 : 흥덕노래방, 사업장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② 신규사업자(2017.2.1개업)로 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③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924903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72. 1. 3		
배 우 자	80. 3. 5	없 음	
자 녀	08. 9. 1	〃	
자 녀	10. 1. 8	〃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 5,000,000원
매입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② 임차료 : 10,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인건비 : 12,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 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⓲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❼사업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소득공제명세서 ⇒ ⓬세액감면명세서 ⇒ ⓭ 세액공제 명세서 ⇒ ⓯가산세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31]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사업장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④ 과세기간 : 2017.2.1(개시일)부터 2017.12.31까지로 적습니다.
⑤ 상호 : 흥덕노래방
⑥ 사업자등록번호 : 301-**-*****
⑦ 업태/종목 : 서비스/노래방

⑧ 업종코드 : 서비스/ 노래방 코드인 924903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⑪·㉞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27,000,000원

* ㉒매입비용5,000,000원+㉖임차료10,000,000원+㉚인건비12,000,000원 =27,000,000

⑭ 기준경비율 : 13.8%

⑮ 금액 : 11,04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13.8% = 11,040,000원

⑯ 필요경비계 : 38,040,000원

⑰ 기준소득금액 : 41,96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필요경비계 38,040,000원

⑱ 단순경비율 : 72.4%

⑲ 금액 : 22,08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단순경비율72.4%) = 22,080,000원

⑳ 비교소득금액 : 57,408,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2,08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6배(간편장부대상자) = 57,408,000원

㉑ 소득금액 : 41,960,000원

* ⑰과 ⑳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㉒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000,000원을 ㉓란에 적은 후 합계(㉓+㉔+㉕)한 금액 5,000,000원을 ㉒란에 적습니다.

㉖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10,000,000원을 ㉗란에 적은 후 합계(㉗+㉘+㉙)한 금액 10,000,000원을 ㉖란에 적습니다.

㉚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㉛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12,000,000원을 ㉝란에 적은 후 합계(㉛+㉝)한 금액을 ㉚란에 적습니다.

㉞·㉟·㊱·㊲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흥덕노래방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301-**-*****)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 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코드 : 노래방 코드인 924903 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⑯란의 금액을 ⑨, ⑩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금액 41,960,000원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 (2명×150만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6,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7,200,000원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300,000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⓯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120,000원
* 지급금액 12,000,000원 × 1% = 120,000원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신규사업자이므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⑰ 가산세 합계 : 120,000원 (①~⑯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41,960,000원{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7,200,000원(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34,760,000원(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㉓ 산출세액 : 15%, 4,134,000원
* 과세표준34,760,000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4,134,000원
㉕ 세액공제 : 370,000원 (⓭ 세액공제 명세서의 ⑥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3,764,000원 (㉓-㉔-㉕)
㉗ 가산세 : 120,000원
㉙ 합계 : 3,884,000원 (㉖+㉗+㉘)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3,884,000원 (㉙-㉚)
㉟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3,884,000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34,76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413,400원 (㊶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원 = 413,4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㉕×10/100=37,000원)
㊻ 결정세액 : 376,400 (㊸-㊹-㊺)
㊼ 가산세 :「지방세법」 제99조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㉗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㉗×10/100=12,000원)
㊾·㊶·㊷란의 금액 : 388,400원 (㊻+㊼)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흥 덕	② 주민등록번호	720103-1******
③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관리번호 ⑱조정반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41,960,000				
소 득 공 제		⑳	7,2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34,760,000	㊶	34,760,000	㊶	
세 율		㉒	15%	㊷	1.5%	㊷	
산 출 세 액		㉓	4,134,000	㊸	413,40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370,000	㊺	37,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3,764,000	㊻	376,400	㊹	
가 산 세		㉗	120,000	㊼	12,000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3,884,000	㊾	388,400	㊼	
기 납 부 세 액		㉚		㊿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3,884,000	(51)	388,400	㊾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㉜				㊿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3,884,000	(52)	388,400	(7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김흥덕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청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40							
②일련번호			1							
③사업장	소재지		청주 흥덕구							
			죽천로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호			흥덕노래방							
⑤사업자등록번호			301-**-*****							
⑥기장의무			2							
⑦신고유형코드			31							
⑧주업종코드			924903							
⑨총수입금액			80,000,000							
⑩필요경비			38,040,000							
⑪소득금액(⑨-⑩)			41,96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2.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⑭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41,960,000				41,96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41,960,000				41,96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1,200,000
		②배우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6,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홍덕	1	720103-1******				-
3	임현희	1	800305-2******				-
4	김성실	1	080901-4******				-
4	김공정	1	100108-3******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7,2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 명)				30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퇴직연금			(15%)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지정기부금			(30%)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7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2,000,000	1/100	**120,0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 계						**120,000**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㉖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득구분코드					( )	( )	계(40)
② 일련번호							1
③ 사업장소재지							청주 흥덕구 죽천로 ××
④ 과세기간							2017. 2. 1.부터 2017.12.31.까지
⑤ 상호							흥덕노래방
⑥ 사업자등록번호							301-**-*****
⑦ 업태 / 종목					/	/	서비스/노래방
⑧ 업종코드							924903
⑨ 총수입금액							80,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㉞)				27,000,000
			⑫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⑬ 계 (⑩+⑪-⑫)				27,000,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13.8%
			⑮ 금액(⑨× ⑭)				11,040,000
		⑯ 필요경비 계 (⑬+ ⑮)					38,040,000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41,960,000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72.4%
		⑲ 금액[⑨×(1-⑱)]					22,080,000
	⑳ 비교소득금액(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57,408,000
㉑ 소득금액 (⑰ 또는 ⑳ 중 작은 금액)							41,96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5,000,000	㉓	5,000,000	㉔		㉕	
임차료	㉖	10,000,000	㉗	10,000,000	㉘		㉙	
인건비	㉚	12,000,000	㉛		㉜		㉝	12,000,000
계(㉞=⑪)	㉞	27,000,000	㉟	15,000,000	㊱		㊲	12,000,000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7. 추계-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복식부기의무자인 한식점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광주 동구 중앙로 ××,　　성 명 : 홍 길 동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상 호 : 길동식당, 사업장 : 광주 동구 중앙로 ××
② 2017. 10. 1. 폐업, 한식점업 수입금액 : 94,100,000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170,000,000원
③ 구청으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50,000,000원 지급받음
　- 이전불능자산 보상금 25,000,000원 포함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900,000원 받음
⑤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552101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 년 월 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72. 1. 3		
배　우　자	75. 3. 5	없　음	장애인
자　　녀	02. 9. 1	〃	
자　　녀	05. 1. 8	〃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 53,960,000원
　매입비용 중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수취분이 500,000원(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재화의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 1,96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② 임차료 : 16,000,000원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③ 인건비 : 23,000,000원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자료5 기타자료

① 중간예납 : 300,000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 연간 720,000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⓲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❼사업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소득공제명세서 ⇒ ⓭ 세액공제명세서⇒ ⓯가산세명세서 ⇒ ⓰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31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제25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사업장소재지 : 광주 동구 중앙로 ××
④ 과세기간 : 2017.1.1부터 폐업일까지 적습니다.
⑤ 상호 : 길동식당
⑥ 사업자등록번호 : 408-**-*****
⑦ 업태/종목 : 음식/한식점업
⑧ 업종코드 : 음식/한식점업 코드인 552101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120,000,000원
* 총수입금액 : 120,000,000 = 94,100,000 + 25,000,000 + 900,000

※ 영업손실보상금(이전불능자산 보상금은 제외) 25,000,000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9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 소득세 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
>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
>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⑪·㉞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92,960,000원

㉒ 매입비용 53,960,000원+㉖임차료 16,000,000원+㉚인건비 23,000,000원

⑭ 기준경비율 : 7.8% × 1/2

※ 2012년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⑮ 금액 : 4,68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7.8% × 1/2 = 4,680,000원

⑯ 필요경비계 : 97,640,000원

⑰ 기준소득금액 : 22,36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필요경비계 97,640,000원

⑱ 단순경비율 : 89.7%

⑲ 금액 : 12,36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단순경비율 89.7%) = 12,360,000원

⑳ 비교소득금액 : 39,552,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2,36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3.2배 = 39,552,000원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3.2배가 적용됩니다.

㉑ 소득금액 : 22,360,000원
* ⑰과 ⑳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㉒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51,500,000원을 ㉓란에 적고,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 500,000원을 ㉔란에 옮겨 적으며,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960,000원을 ㉕란에 적은 후 이 세 가지를 합계(㉓+㉔+㉕)한 금액 53,960,000원을 ㉒란에 적습니다.

㉖ 임차료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16,000,000원을 ㉗란에 적은 후 합계(㉗+㉘+㉙)한 금액 16,000,000원을 ㉖란에 적습니다.

㉚ 인건비 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3,000,000원을 ㉛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㉝란에 적은 후 합계(㉛+㉝)한 금액을 ㉚란에 적습니다.

㉞·㉟·㊱·㊲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매입비용중 ㉔ 500,000원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꼭 그 명세를 적어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를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코드 : 한식점업 코드인 552101 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⑯란의 금액을 ⑨, ⑩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란에 22,36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⑤ 장애인(추가공제) : 2,0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8,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72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8,720,000원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22,360,000원{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8,720,000원(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13,640,000원(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㉓ 산출세액 : 15%, 966,000원
* 과세표준 13,64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산출세액 966,000원
㉕ 세액공제 : 370,000원 (❸ 세액공제 명세서의 ⑥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596,000원 (㉓-㉔-㉕)

❺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⑤ 증빙불비가산세 : 10,000원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500,000원 × 2% = 10,000원
※ 직전년도(201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⑨ 무기장가산세 : 193,200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인 193,200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와 ㉯ 중 큰 금액인 84,000원
㉮ 수입금액 120,000,000원 × 0.07% = 84,000원
㉯ 무신고납부세액 296,000원 × 20% = 59,200원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 :
966,000(산출세액) - 370,000(세액공제) - 300,000(중간예납) = 296,000
(2) 무기장가산세 : 193,200원
산출세액 966,000 × 20% = 193,200
⑰ 가산세 합계 : 203,200원 (①~⑯의 합계)

❻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①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원 (①~⑩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㉖ 결정세액 : 596,000원
㉗ 가산세 : 203,200원
㉙ 합계 : 799,200원 (㉖+㉗+㉘)
㉚ 기납부세액 : 300,000원(❻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499,200원 (㉙-㉚)
㉟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499,200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13,64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96,600원 (㊶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원 = 96,6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㉕×10/100=37,000원)

㊻ 결정세액 : 59,600 (㊸-㊹-㊺)

㊼ 가산세 : 「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㉗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㉗×10/100=20,320원)

㊾·㊶·㊷란의 금액 : 79,920원 (㊻+㊼)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홍 길 동	② 주민등록번호	7 2 0 1 0 3 - 1 * * * * * *
③ 주 소	광주 동구 중앙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무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22,360,000				
소 득 공 제		⑳	8,72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13,640,000	㊶	13,640,000	㊶	
세 율		㉒	15%	㊷	1.5%	㊷	
산 출 세 액		㉓	966,000	㊸	96,60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370,000	㊺	37,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596,000	㊻	59,600	㊹	
가 산 세		㉗	203,200	㊼	20,320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799,200	㊾	79,920	㊼	
기 납 부 세 액		㉚	300,000	㊿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499,200	(51)	79,920	㊾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㉜				㊿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499,200	(52)	79,920	(5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광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40					
②일련번호			1					
③사업장	소재지		광주 동구 중앙로 ×× 1 -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상호			길동식당					
⑤사업자등록번호			408-**-*****					
⑥기장의무			1					
⑦신고유형코드			31					
⑧주업종코드			552101					
⑨총수입금액			120,000,000					
⑩필요경비			97,640,000					
⑪소득금액(⑨-⑩)			22,36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0.1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포함)	22,360,000				22,36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22,360,000				22,36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 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720,000
		②배 우 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 양 가 족(2 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 로 우 대 자(명)		특별공제	⑫보 험 료 공 제		
		⑤장 애 인(1 명)	2,000,000		⑬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⑭기 부 금(이월분)공제		
		⑦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8,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홍길동	1	720103-1******				
3	김성실	1	750305-2*****-				
4	홍공정	1	020901-3*****-				
4	홍신뢰	1	050108-4*****-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 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8,72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 명)				30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7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500,000	2/100	10,0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966,000	20/100	193,2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		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 계						203,200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300,000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300,000	㉖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40)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광주 동구 중앙로 ××
④ 과 세 기 간								2017. 1. 1.부터 2017.10. 1.까지
⑤ 상 호								길동식당
⑥ 사업자등록번호								408-**-*****
⑦ 업 태 / 종 목						/	/	음식/식당
⑧ 업 종 코 드								552101
⑨ 총 수 입 금 액								120,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㉞)					92,960,000
			⑫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⑬ 계 (⑩ + ⑪ - ⑫)					92,960,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3.9%
			⑮ 금액(⑨× ⑭)					4,680,000
		⑯ 필요경비 계 (⑬ + ⑮)						97,640,000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22,360,000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89.7%
		⑲ 금액[⑨×(1-⑱)]						12,360,000
	⑳ 비교소득금액 (⑲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39,552,000
㉑ 소득금액 (⑰ 또는 ⑳ 중 작은 금액)								22,36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53,960,000	㉓	51,500,000	㉔	500,000	㉕	1,960,000
임 차 료	㉖	16,000,000	㉗	16,000,000	㉘		㉙	
인 건 비	㉚	23,000,000	㉛	23,000,000	㉜		㉝	
계(㉞=⑪)	㉞	92,960,000	㉟	90,500,000	㊱	500,000	㊲	1,960,000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2013.06.28 개정)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자	상 호 **길동식당**	사업자등록번호 **408-**-*******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720103-1*******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일련번호	거래처(공급자)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동구상회**	**408-11-*******	**7**	**조미료외**	**5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 판매)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성 명 : 김 금 호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사업장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② 착공일 : 2017.5.1, 사업개시일 : 2017.10.1
③ 업종 :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
④ 2017년 분양수입금액 : 800,000,000원, 2016년 수입금액 : 0원
⑤ 신고유형 : 기준경비율, 업종코드 : 451105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72. 1. 3		
배 우 자	75. 3. 5	없 음	
자 녀	08. 9. 1	〃	
자 녀	10. 1. 8	〃	

자료4 주요경비 내용

① 매입비용 : 550,000,000원
외주가공비(건설비) : 세금계산서 수취 300,000,000원
토지(5년 보유) 취득원가 : 200,000,000원
자재비 : 세금계산서 수취 50,000,000원
② 인건비 : 50,000,000원
인건비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날인한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음

자료5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1,200,000원을 납부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⓲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❼사업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소득공제명세서 ⇒ ⓭ 세액공제명세서 ⇒ ⓯가산세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31]추계-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 25쪽)

※ 2012년 귀속부터는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므로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③ 사업장소재지 :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④ 과세기간 : 2017.10.1(개시일)부터 2017.12.31까지로 적습니다.

⑤ 상호 : 영광건설

⑥ 사업자등록번호 : 410-**-*****

⑦ 업태/종목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⑧ 업종코드 : 주거용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코드인 451105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800,000,000원

⑪·㉞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600,000,000원

㉒ 매입비용 550,000,000원+㉚ 인건비 50,000,000원

⑭ 기준경비율 : 12.2%

⑮ 금액 : 97,6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12.2% = 97,600,000원

⑯ 필요경비계 : 697,600,000원

⑰ 기준소득금액 : 102,4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필요경비계 697,600,000원

⑱ 단순경비율 : 91.6%

⑲ 금액 : 67,2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총수입금액 800,000,000원 × 단순경비율 91.6%) = 67,200,000원

⑳ 비교소득금액 : 174,720,000원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67,2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6배(간편장부대상자) = 102,400,000원

㉑ 소득금액 : 102,400,000원

* ⑰과 ⑳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㉒ 매입비용 계 :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매입비용 350,000,000원을 ㉓난에 적고, 토지구입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200,00,000원을 ㉕난에 적은 후 합계(㉓+㉔+㉕)한 금액 550,000,000원을 ㉒난에 적습니다.

㉚ 인건비 계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분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㉛란에 적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건비 지급내역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50,000,000원을 ㉝난에 적은 후 합계(㉛+㉝)한 금액을 ㉚난에 적습니다.

㉞=㉟·㊱·㊲ : 각각 합계를 적습니다.

○ 소득세과-254 (12.3.27)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영광건설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예 : 410-**-*****)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31을 적습니다.
⑧ 주업종코드 :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건물을 건설하여 판매) 코드인 451105을 적습니다.
⑨ 총수입금액·⑩ 필요경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⑨, ⑯란의 금액을 ⑨, ⑩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⑪ 소득금액 :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102,400,000원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 (2명×150만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6,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20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7,200,000원

⓯ 가산세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④ 보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지급금액 50,000,000원 × 1% = 500,000원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합니다.
⑰ 가산세 합계 : 500,000원 (①~⑯의 합계)

⓭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2인이므로 세액공제액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표준세액 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3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102,400,000원{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7,200,000원(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95,200,000원 (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㉓ 산출세액 : 35%, 18,420,000원
* 과세표준 95,200,000원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0,000원 =18,420,000원
㉕ 세액공제 : 370,000원 (⓭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18,050,000원

㉗ 가산세 : 500,000원
㉙ 합계 : 18,550,000원 (㉖+㉗+㉘)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18,550,000원 (㉙-㉚)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인 금액
㉞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 8,050,000원
* 가산세는 분납적용 제외합니다.
분납세액 (18,550,000 - 10,000,000 - 500,000) = 8,050,000원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0,500,000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95,20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1,842,000원 (㊶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000원 = 1,842,0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 ㉕×10/100=37,000원)
㊻ 결정세액 : 1,805,000 (㊸-㊹-㊺)
㊼ 가산세 : 「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라 ㉗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㉗×10/100=50,000원)
㊾·㊿·(51)란의 금액 : 1,855,000원 (㊻+㊼)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금 호	② 주민등록번호	720103-1******
③ 주 소	광주 북구 금호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율 32 추계–단순율 40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 50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⑫ 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 기장 2 조정 3 신고 4 성실확인 | ⑰관리번호 – | ⑱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102,400,000					
소 득 공 제	⑳	7,2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95,200,000	㊶	95,200,000	㊶		
세 율	㉒	35%	㊷	3.5%	㊷		
산 출 세 액	㉓	18,420,000	㊸	1,842,00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370,000	㊺	37,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18,050,000	㊻	1,805,000	㊻		
가 산 세	㉗	500,000	㊼	50,000	㊼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㊽		
합 계(㉖+㉗+㉘)	㉙	18,550,000	㊾	1,855,000	㊾		
기 납 부 세 액	㉚		㊿		㊿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18,550,000	(51)	1,855,000	(51)		
납부특례세액 차감	㉜				(70)		
납부특례세액 가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8,050,000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10,500,000	(52)	1,855,000	(7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김 금 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북광주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40						
②일 련 번 호			1						
③사업장	소 재 지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④상 호			영광 건설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410-**-*****						
⑥기 장 의 무			2						
⑦신 고 유 형 코 드			31						
⑧주 업 종 코 드			451105						
⑨총 수 입 금 액			800,000,000						
⑩필 요 경 비			697,600,000						
⑪소 득 금 액(⑨-⑩)			102,400,000						
⑫과 세 기 간 개 시 일			10.1						
⑬과 세 기 간 종 료 일			12.31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102,400,000				102,4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102,400,000				102,40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1,200,000
		②배우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6,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금호	1	720103-1******				
3	최**	1	750305-2******				-
4	김**	1	080901-4******				-
4	김**	1	100108-3******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7,2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 명)				30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37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50,000,000	1/100	500,0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		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계						500,000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㉖	

(33쪽 중 제25쪽)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40)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전남 영광군 물무로2길**
④ 과 세 기 간							2017.10. 1.부터 2017.12.31.까지
⑤ 상 호							영광건설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410-**-*****
⑦ 업 태 / 종 목					/	/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
⑧ 업 종 코 드							451105
⑨ 총 수 입 금 액							800,000,000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㉞)				600,000,000
			⑫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⑬ 계 (⑩ + ⑪ – ⑫)				600,000,00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12.2%
			⑮ 금액(⑨ × ⑭)				97,600,000
		⑯ 필요경비 계 (⑬ + ⑮)					697,600,000
	⑰ 기준소득금액(⑨-⑯)(0" 보다 작은 경우"0"으로 적음)						102,400,000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91.6%
		⑲ 금액[⑨×(1–⑱)]					67,200,000
	⑳ 비교소득금액 (⑲×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174,720,000
㉑ 소득금액 (⑰ 또는 ⑳ 중 작은 금액)							102,400,000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550,000,000	㉓	350,000,000	㉔		㉕	200,000,000
임 차 료	㉖		㉗		㉘		㉙	
인 건 비	㉚	50,000,000	㉛		㉜		㉝	50,000,000
계(㉞=⑪)	㉞	600,000,000	㉟	350,000,000	㊱		㊲	250,000,000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성 명 : 강 하 늘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근무처 : 성실학원

② 2017년 수입금액 : 60,000,000원
2016년 수입금액 : 20,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세 1,800,000원, 지방소득세 18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81. 1. 3		
배 우 자	80. 3. 5	소득없음	
자 녀	04. 9. 1	소득없음	

자료3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2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 신고유형 : 「32추계-단순율」 입니다.

※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 학원강사로서 2016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⑫ 소득구분 : 40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⑬ 업종코드 : 학원강사 코드는 940903 입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⑭ 단순경비율(%)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인 61.7을 일반율 난에 적습니다.

⑮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제3쪽)

㉛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17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33,960,000원
㉛총수입금액에 ⑭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0,000,000원×61.7%+20,000,000원×46.4% = 33,960,000원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㉝ 종합소득금액 : 26,040,000원

* 종합소득금액은 ㉛총수입금액에서 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㉛총수입금액60,000,000원 - ㉜필요경비33,960,000원 = 26,040,000원

㉞ 소득공제 : 5,600,000원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㉟~㊶의 인적공제, ㊷~㊺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㉟~㊲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㉟ 본인 : 1,500,000원
㊱ 배우자 : 1,500,000원
㊲ 부양가족 : 1,500,000원 (1명)
㊳~㊶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㊵ 부녀자 : 500,000원

*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500,000원 대상이 된다.

㊸ 연금 보험료 공제 : 6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㊻ 과세표준 : 20,440,000원
㊼ 세율 : 15%
㊽ 산출세액 : 1,986,000원

* 20,440,000원 × 15% - 1,080,000원

㊾ 세액공제 : 세액공제 명세서(㊿~56) 의 합계금액 220,000원을 적습니다.
51~57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51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㊹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㊾ 결정세액 : 1,766,000원 (㊽－㊾－㊽)

㊾ 총결정세액 :1,766,000원 (㊾＋㊿)

㊶ 원천징수세액 : 1,800,000원

㊷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0원 환급 (㊾-㊿-㊶)

* 원천납부한 세액(㊶)이 총결정세액(㊾)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㊸ 과세표준 : 20,440,000원 (㊻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옮겨 적습니다.)

㊺ 산출세액 : 198,600원 (㊻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1.5%-108,000)

㊻ 세액공제・감면 : 22,000원 ((㊾ + ㊽)×10%)

㊽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 180,000원 (㊶×10%)

㊾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원 환급 (㊺-㊻＋㊼-㊽)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8.3.21.>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강 하 늘**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 전화번호	⑧ 사업장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⑩ 신고유형	㉜ **추계 – 단순율**	⑪ 기장의무	**2 간편장부대상자**	⑫ 소득구분 ㉚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40)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 업종코드	**940903**	⑭ 단순경비율(%)	일반율 **61.7** / 자가율	⑮ 신고구분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⑯ 금융기관/체신관서명	****은행**	⑰ 계좌번호	**123-456789-****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㉛ 총수입금액: 매출액을 적습니다.	60,000,000
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㉛ 총수입금액 × ⑭ 단순경비율(%)	33,960,000
㉝ 종합소득금액: ㉛ – ㉜	26,040,000
㉞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㉟~㊺)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5,600,000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구 분		인원	금 액
0	**강하늘**	1	**810103-2********	기본공제	㉟ 본 인	1	1,500,000
3	**고하나**	1	**800305-1********		㊱ 배 우 자	1	1,500,000
4	**고두리**	1	**040901-4********		㊲ 부 양 가 족	1	1,500,000
				추가공제	㊳ 경 로 우 대 자		
					㊴ 장 애 인		
					㊵ 부 녀 자	1	500,000
					㊶ 한 부 모 가 족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600,000
㊹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㊺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㊻ 과세표준: ㉝ – ㉞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0,440,000
㊼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㊽ 산출세액: ㊻×㊼ –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1,986,000
㊾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㊿~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20,000

세액공제명세

㊿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150,000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금액		

(3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㊸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㊹ 표준세액공제: 7만원			70,000
	㊺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㊱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㊻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㊼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㊽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㊾ 결정세액: ㊽-㊾-㊽("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766,000
㊿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61~68)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61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62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63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64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65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66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67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68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건수				5,000원	

㊾ 총결정세액: ㊾+㊿		1,766,000
기납부세액	㊼ 중간예납세액	
	㊽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800,000
㊾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㊾-㊼-㊽		-34,000

❶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㊿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㊻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0,440,000
㊿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㊿ 산출세액: ㊿×㊿-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198,600
㊿ 세액공제·감면: (㊾+㊽) ×10%	22,000
㊿ 가산세액: (3쪽 작성방법 참고)	
㊿ 기납부한 특별징수세액: ㊽×10%	180,000
㊿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㊿-㊿+㊿-㊿	-3,40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 년 5 월 31 일

신고인 강 하 늘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10.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의류판매 및 상가임대 소득자

자료1 의류판매 사업소득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

성명 : 박성실

① 2017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 70,000,000원
1기(1.1~6.30) 3천만원, 2기(7.1~12.31) 4천만원
2016년 수입금액 : 58,000,000원
② 상호 : 성실의류(123-**-*****),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③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523231)
④ 사업장은 임차하고 종업원은 1명임
⑤ 수도권 안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충족함

자료2 상가임대 사업소득

① 2017.1.10에 과세 사업자등록 (506-90-*****)
② 2017귀속 수입금액 : 6,000,000원
③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701201)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67. 3.29		
배 우 자	68. 5. 8	없음	
자 녀	04.11.10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사업장이 2개이므로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기본사항 ⇒ ❼ 사업소득명세서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소득공제명세서 ⇒ ⓬세액감면명세서 ⇒ ⓭ 세액공제 명세서 ⇒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 ❹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32]추계-단순율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30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506-90-*****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 상가 임대 업종코드인 701201를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6,000,000원

⑩ 필요경비 : 2,490,000원

* 상가임대(701201)의 단순경비율 41.5%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6,000,000 × 단순경비율 41.5% = 2,490,000

⑪ 소득금액 : 3,51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사업소득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①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은 4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란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국내1/국외9난에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⑤사업자등록번호 : "성실의류", "123-**-*****"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②(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32를 적습니다.

*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32

⑧ 주업종 코드 : 소매 외의 코드인 523231를 적습니다.

* 남녀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 소매업 업종코드 523231

⑨ 총수입금액 : 70,000,000원

⑩ 필요경비 : 62,300,000원

* 셔츠 등 외의 소매업(523231)의 단순경비율 89.0%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70,000,000 × 단순경비율 89.0% = 62,300,000

⑪ 소득금액 : 7,700,000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1"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이므로 "12.31"을 적습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란에 3,51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에 7,700,000원을 각각 적고, 합계란에 11,21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 ①란의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1,500,000원(1명×150만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4,50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3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4,500,000원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11,210,000원 {13쪽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4,500,000원 (15쪽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6,710,000원 (종합소득금액⑲ - 소득공제⑳)

㉒ 세율·㉓ 산출세액 : 6%, 402,600원

* 과세표준 6,710,000원 × 세율6% = 402,600원

⓬ 세액감면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③ 세액감면 : 27,654원

* 산출세액(402,600원) × $\frac{\text{감면대상사업소득금액(7,700,000원)}}{\text{종합소득금액(11,210,000원)}}$ × 감면율(10%)

*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이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150,000원입니다.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22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㉔ 세액감면 : 27,654원 (⓬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㉕ 세액공제 : 220,000원 (⓭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154,946원 (㉓－㉔－㉕)

㉙ 합계 : 154,946원 (㉖+㉗+㉘)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154,946원 (㉙－㉚)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0.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6,71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40,260원 (㊶ × 세율0.6% = 40,26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2,796원 , ㉕×10/100＝22,000원)

㊻·㊾·㊶·㊷란의 금액 : 15,494원 (㊸-㊹-㊺)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박 성 실	② 주민등록번호	670329-1******
③ 주 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대상자 3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 11 자기조정 12 외부조정 14 성실신고확인 20 간편장부 31 추계-기준율 (32) 추계-단순율 40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 (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30 경정청구 40 기한후신고 50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무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 기장 2 조정 3 신고 4 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11,210,000				
소 득 공 제		⑳	4,5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6,710,000	㊶	6,710,000	㊶	
세 율		㉒	6%	㊷	0.6%	㊷	
산 출 세 액		㉓	402,600	㊸	40,260	㊸	
세 액 감 면		㉔	27,654	㊹	2,765		
세 액 공 제		㉕	220,000	㊺	22,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154,946	㊻	15,494	㊻	
가 산 세		㉗		㊼		㊼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㊽	
합 계(㉖+㉗+㉘)		㉙	154,946	㊾	15,494	㊾	
기 납 부 세 액		㉚		㊿		㊿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154,946	(51)	15,494	(69)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㉜				(70)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154,946	(52)	15,494	(7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박 성 실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남대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30		40			
②일련번호			1		1			
③사업장	소재지		대전 동구		서울시 중구			
			성동로 **		삼일대로**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	1	-		
④상호			상가임대		성실의류			
⑤사업자등록번호			506-90-*****		123-**-*****			
⑥기장의무			2		2			
⑦신고유형코드			32		32			
⑧주업종코드			701201		523231			
⑨총수입금액			6,000,000		70,000,000			
⑩필요경비			2,490,000		62,300,000			
⑪소득금액(⑨-⑩)			3,510,000		7,700,000			
⑫과세기간개시일			1.10		1.1			
⑬과세기간종료일			12.31		12.31			
⑭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특수관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㉑상호(성명)	㉒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소득세	㉔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3,510,000				3,510,000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7,700,000				7,700,000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금액)	11,210,000				11,21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②배우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1명)	1,5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4,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박성실	1	670329-1******				-
3	이공정	1	680508-2******				-
4	박평화	1	041110-3******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4,5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7,654	123-**-*****
⑤ 세액감면 합계		27,654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1 명)				15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7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소득세법」+⑤「조세특례제한법」)						22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3.21>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성실의류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
	③ 대표자 성명 박성실	④ 생년월일 670329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서울 중구 삼일대로 ***	

❷ 과세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❸ 신청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⑩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11				
⑩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74				
⑩③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4항	13E				
⑩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10%	276,540	27,654	
⑩⑤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⑩⑥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⑩⑦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의2제5항	179				
⑩⑧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⑩⑨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⑪⓪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⑪①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⑪②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⑪③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⑪④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⑪⑤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⑪⑥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⑪⑦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⑪⑧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⑪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⑫⓪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⑫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⑫②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⑫③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⑫④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6항	13I				
⑫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⑫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F				
⑫⑦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H				
⑫⑧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⑫⑨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⑬⓪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⑬①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⑬②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⑬③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⑬④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⑬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⑬⑥ 기타		164				
⑬⑦ 세액감면 합계		1A4		276,540	27,654	

❹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⑩⑦, ⑫⑧ ~ ⑬③에 대해 적용)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감면한도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⑭ ⑪ × 20%	
	⑮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⑬, ⑭)]	
	⑯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⑮)	
⑰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⑯ - ⑩)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2018 년 5 월 31 일

신청인 박성실 (서명 또는 인)

남대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자료1 기본사항

성명: 김 국 세
사업장 : 세종특별시 나성동 ××
업종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구 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이자소득
A주택·부수토지	2016.1.1.~ 2018.12.31	5억원	월3,000,000원	500,000원
B주택·부수토지	2017.7.1.~ 2018.12.31	6억원	-	1,000,000원

자료3 필요경비 내역

① 수도.광열비: 1,000,000원

② 소모품비: 500,000원

자료4 기타

① 자료2의 주택 이외에 2개의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을 초과한다.
② 김국세씨의 국민연금보험료: 800,000
③ 김국세씨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임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기본사항 ⇒ ❼ 사업소득명세서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 소득공제명세서 ⇒ ⓬ 세액감면명세서 ⇒ ⓭ 세액공제 명세서 ⇒ ❹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11]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❼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32를 적습니다.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 32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1]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등의 임대 코드인 701102를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 + Ⓑ = **39,323,671원 > 2천만원**

Ⓐ 주택임대료: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 간주임대료: (ⓐ + ⓑ) - (500,000원 + 1,000,000원) = 3,323,671원*

ⓐ (5억원 - 3억원**) × 365 × 60% × $\frac{1}{365}$ × 1.6%*** = 1,920,000원

ⓑ (6억원 - 0) × 184 × 60% × $\frac{1}{365}$ × 1.6%** = 2,903,671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5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의 ⑮금액 입니다.

** 주택A의 임대보증금적수(5억×365일=1,825억)가 주택 B의 임대보증금적수(6억×184일=1,104억)보다 크므로 주택A의 임대보증금에서 부터 3억원을 차감.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1.6%

⑩ 필요경비 : 1,500,000원

수도광열비 1,000,000원 + 소모품비 500,000원 = 1,500,000원

⑪ 소득금액 : 37,823,671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⑫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⑯~⑲의 부동산임대소득 명세는 2019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800,000원(연간 납입금액)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2,300,000원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37,823,671원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2,300,000원 (⓫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35,523,671원 (⑲종합소득금액 - ⑳소득공제)

㉒ 세율·㉓ 산출세액 : 15%, 4,248,550원

* 과세표준 35,523,671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4,248,550원

⓭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120,000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12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123-**-*****)를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2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㉕ 세액공제 : 120,000원

* ⓭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4,128,550원 (㉓-㉔-㉕)

㉙ 합계 : 4,128,550원 (㉖+㉗+㉘)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4,128,550원 (㉙-㉚)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4,128,550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35,523,671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424,855원 (㊶ × 세율1.5% - 누진공제액108,000원 = 94,20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12,0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㉕×10/100 =12,000원)

㊻·㊾란의 금액 : 412,855원 (㊸-㊹-㊺)

㊶·㊷란의 금액 : 412,855원 (㊾-㊿)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국 세	② 주민등록번호	23-1****-*
③ 주 소	세종특별시 나성동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농협 ⑫ 계좌번호 123-45-67800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37,823,671				
소 득 공 제		⑳	2,3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35,523,671	㊶	35,523,671	㊶	
세 율		㉒	15%	㊷	1.5%	㊷	
산 출 세 액		㉓	4,248,550	㊸	424,855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120,000	㊺	12,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4,128,550	㊻	412,855	㊻	
가 산 세		㉗		㊼		㊼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㊽	
합 계(㉖+㉗+㉘)		㉙	4,128,550	㊾	412,855	㊾	
기 납 부 세 액		㉚		㊿		㊿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4,128,550	(51)	412,855	(51)	
납부특례세액	차 감	㉜				(70)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4,128,550	(52)	412,855	(7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32								
② 일련번호			1								
③ 사업장	소재지		세종특별시 나성동**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1								
④ 상호			부동산 임대								
⑤ 사업자등록번호			123-**-*****								
⑥ 기장의무			1								
⑦ 신고유형코드			11								
⑧ 주업종코드			701102								
⑨ 총수입금액			39,323,671								
⑩ 필요경비			1,500,000								
⑪ 소득금액(⑨-⑩)			37,823,671								
⑫ 과세기간개시일			1.1								
⑬ 과세기간종료일			12.31								
⑭ 대표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⑯주택수(개)	⑰수입금액	⑱필요경비	⑲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㉑ 상호(성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 소득세	㉔ 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37,823,671				37,823,671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37,823,671				37,823,671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800,000
		②배우자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명)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명)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2,3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⓰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김국세	1	770223-1******				
			–				
			–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2,3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120,000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2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①과세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②주민등록 번호	770223-*******	③성명	김 국 세

1. 주택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일련 번호	⑤임대 일자	⑥ 보증금등	⑦공제액	⑧보증금 잔액 (⑥-⑦)	⑨ 일수	⑩보증금 잔액적수 (⑧×⑨)	⑪ 적용율	⑫ 이자율	⑬총수입금액 상당액 [(⑩×⑪×⑫)÷ 365, 윤년366]	⑭보증금 운용수입	⑮총수입금액 산입금액 (⑬-⑭)
1	2017. 1.1.	500,000,000	3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60%	1.6%	1,920,000	500,000	1,420,000
2	2017. 7.1.	600,000,000		600,000,000	184	110,400,000,000	60%	1.6%	2,903,671	1,000,000	1,903,671
합계									4,823,671	1,500,000	3,323,671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

⑯과목	⑰계정금액	⑱수입이자 및 할인료	⑲ 배당금	⑳계
금융수익	10,000,000	1,500,000		1,500,000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기장자만 사용합니다.
2. ⑦ 공제액란 : 2주택이상에서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3억원한도).
3. ⑪ 적용률란 : 60%를 적습니다.
4. ⑥ 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5. ⑭ 보증금 운용수입란 : 「2. 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의 ⑳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7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2. 근무지가 2이상인 근로자 신고서 작성사례
-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자료1 현 근무지 및 전근무지의 연말정산 내역

성명 : 서공정

구 분	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전근무지 연말정산 내역
근 무 처 명	(주)선경	세정(주)
근무처 사업자번호	108-81-*****	123-81-*****
총 급 여	31,000,000	8,000,000
급 여 총 액	23,000,000	6,000,000
상 여 총 액	8,000,000	2,000,000
근 로 소 득 공 제	9,900,000	4,700,000
근 로 소 득 금 액	21,100,000	3,300,000
주 택 자 금 공 제	1,400,000	- 세정(주)에서 퇴직자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세액 없음 - (주)선경에서 세정(주)의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없음
특별세액공제대상		
보험료공제대상	1,000,000	
의료비공제대상	2,230,000	
교육비공제대상	1,5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500,000	
연 금 저 축 납 입 액	4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500,000	
결정세액(소득세)	0	

* 현금영수증 사용액 : 13,700,000원(의료비지출액 포함)
* 의료비지출액 : 3,400,000원(전액 경로우대자인 모를 위하여 지출)
* 전년도 본인의 체크카드 등 사용내역 없음

자료2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51. 2. 3		
배 우 자	53. 4. 5	없 음	
모	26. 3. 6	〃	
자 녀	97. 8. 9	〃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소득공제명세서 ⇒ ⓭세액공제명세서 ⇒ ⓰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3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40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11쪽)

① 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별로 각각 51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근무지별로 1, 2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상호 : 근무처명을 각각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39,000,000원 (31,000,000원 + 8,000,000원)

⑥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1,10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고, 총수입금액(⑤)의 금액이 큰 근무지부터 차례로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 로 소 득 공 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⑦ 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각각 적습니다. 소득금액의 합계는 27,900,000원입니다.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⑫결정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선경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0원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⑯ 차감징수세액 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란에 27,9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⓫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② 배우자 : 1,5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 3,000,000원(2명×150만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직계존속 1957.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1997.1.1 이후 출생)을 공제합니다.

④ 경로우대자(1947.12.31 이전 출생자) 추가공제 : 1,000,000원

⑧ 인적공제 계(①~⑦) : 7,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500,000원

⑬ 주택자금공제 : 1,400,000원

⑮ 특별공제합계(근로소득이 있는 자 란에 기재) : 1,400,000원(⑫~⑭ 합계)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을 각각 적습니다.

⑲ 금액 : 1,185,000원을 각각 적습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13,700,000원 - 총급여액 39,000,000원 × 25%) × 30% = 1,185,000원

⑳ 사업자등록번호 : 공란으로 둡니다.

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185,000원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10,085,000원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27,900,000원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10,085,000원

* 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17,815,000원 (⑲-⑳)

㉒ 세율 : 15%

㉓ 산출세액 : 1,592,250원 (17,815,000 × 15% - 1,08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692,000원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692,000원을 적습니다.

* 산출세액 1,592,25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5,000원+(292,250×30%)=802,675원
* 공제한도 : Max(①,②) = 692,000

①74만원 - [(3,900만원-3,300만원)×8/1,000] = 692,000

②66만원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400,000원

연금계좌의 연금저축납입액 4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6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 15%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을 적고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 120,000원을 적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334,500원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 2,230,000원

* 의료비공제는 총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재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지출액 3,400,000원 - 총급여액 39,000,000원 × 3% = 2,23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대상금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334,5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225,000원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 1,500,000원
공제율 15%를 적용한 세액공제액 225,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581,5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㉕ 세액공제 : 1,581,500원
* ⓭세액공제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10,750원 (㉓-㉔-㉕)

㉙ 합계 : 10,750원 (㉖+㉗+㉘)

㉚ 기납부세액 :0원
* ⓰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10,750원 (㉙-㉚)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10,750원 (㉛-㉜+㉝-㉞)

⓰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0원을 적습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0원(①~⑩의 합계)

❶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17,815,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159,225원 (㊶ × 세율1.5% -108,000=159,225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 ㉕×10/100=158,150원)

㊻·㊾·51·52란의 금액 : 1,075원 (㊸-㊹-㊺)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서 공 정	② 주민등록번호	510203-1******
③ 주 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1]복식부기의무자 [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장부 [31]추계-기준율 [32]추계-단순율 [40]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27,900,000					
소 득 공 제	⑳	10,085,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17,815,000	㊶	17,815,000	㊶		
세 율	㉒	15%	㊷	1.5%	㊷		
산 출 세 액	㉓	1,592,250	㊸	159,225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1,581,500	㊺	158,15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10,750	㊻	1,075	㊻		
가 산 세	㉗		㊼		㊼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㊽		
합 계(㉖+㉗+㉘)	㉙	10,750	㊾	1,075	㊾		
기 납 부 세 액	㉚		㊿		㊿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10,750	(51)	1,075	(51)		
납부특례세액 차감	㉜				(70)		
납부특례세액 가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10,750	(52)	1,075	(7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서 공 정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정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③상 호(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51	1	(주) 선 경* 621-81-*****	31,000,000	11,100,000	19,900,000	0	
51	2	세 정 (주) 621-81-*****	8,000,000	0	8,000,000	0	
합계			39,000,000	11,100,000	27,900,000	0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27,900,000				27,90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금액)	27,900,000				27,900,000

❿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500,000
		②배우자	1,500,000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2명)	3,0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1명)	1,000,000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1,400,000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1,400,000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7,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⓰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서공정	1	510203-1******				
2	이신뢰	1	260306-2******				-
3	김누리	1	530405-2******				-
4	서국세	1	960809-1******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 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185,000	
㉑「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1,185,000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10,085,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692,000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1명)				15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400,000		60,000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000,000	12%	120,000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2,230,000	15% (20%)	334,500	
	교육비			1,500,000	15%	225,000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지정기부금			(30%)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581,5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⓯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		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		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		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 계						

⓱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0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0	㉖	

1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사례
- 기타소득(부동산매매해약)이 있는 근로소득자(비사업자)

자료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성 명 : 이 공 평

주 소 :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

구 분	연말정산 주요 내역		
근 무 처 명	(주) 국 세	근무처 사업자번호	607-81-*****
총 급 여	100,000,000	근 로 소 득 금 액	85,250,000
인 적 공 제 내 역		세 액 공 제 내 역	
본 인	1,500,000	보 험 료 공 제	120,000
부양가족(3명)	4,500,000	의 료 비 공 제	1,050,000
70세이상자(1명)	1,000,000	교 육 비 공 제	900,000
한 부 모 공 제	1,0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국 민 연 금 보 험 료	1,000,000
결 정 세 액	소득세 : 7,810,000 , 지방소득세 : 781,000		

* 교육비 : 6,000,000원
* 의료비 지출액 : 본인 10,000,000원
* 자녀 2명, 모친 1명
* 보장성보험료 : 1,000,000원

자료2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0,000,000원
- 지급처 : (주) 동래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기타소득자 및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⓫소득공제명세서 ⇒ ⓭세액공제명세서 ⇒ ⓰기납부세액명세서 ⇒ ❹세액의 계산 ⇒ ❷ 환급금 계좌신고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3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40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⑩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① 소득구분코드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51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 근무처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⑥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금액 14,750,000원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근 로 소 득 공 제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⑦ 소득금액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⑧ 소득세(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⑫결정세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주)국세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7,810,000원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⑯차감징수세액 을 적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과다(과소)공제하는 결과가 되며, 과다공제의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기타소득〉

① 소득구분코드 : 60을 적습니다.

② 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 지급처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⑥ 필요경비 : 0원

⑦ 소득금액 : 20,000,000원

* ⑤총수입금액 란에서 ⑥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난에 85,250,000원, 기타소득금액란에 20,000,000원을 적습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❿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③ 부양가족 : 4,500,000원 (3명×150만원)

④ 경로우대자(추가공제) : 1,000,000원

⑦ 한부모가족 : 1,000,000원

*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⑧ 인적공제 계(①~⑦) : 8,0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1,000,000원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 모친, 자녀 등 4명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 9,000,000원

⓰ 기납부세액 명세서 (신고서 제21쪽)

⑧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7,810,000원

⑩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0원

⑪ 기납부세액 합계 : 7,810,000원(①~⑩의 합계)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⑲ 종합소득금액 : 105,250,000원

*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 9,000,000원

* ⓫ 소득공제명세서의 ㉒소득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 96,250,000원 (⑲-⑳)

㉒ 세율 : 35%

㉓ 산출세액 : 18,787,500원 (96,250,000 × 35% - 14,900,000)

*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⓭ 세액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원

③ 세액공제 :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500,000원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상당액 : 15,217,428원

$$\text{산출세액}(18{,}787{,}500\text{원})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85{,}250{,}000\text{원})}{\text{종합소득금액}(105{,}250{,}000\text{원})} = 15{,}217{,}428$$

a) 공제액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b) 공제한도

총 급 여 액	공 제 한 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②) ①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8/1,000] ②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②) ①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1/2] ②50만원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인이므로 자녀세액공제 3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1,000,000원을 공제대상금액에 적고 12%의 적용률을 곱한 금액 12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1,050,000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 가운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10,000,000원 중 근로소득금액 100,000,000원의 3%인 3,000,000원을 초과하는 7,000,000원이 공제대상입니다. 15%의 적용률을 곱한 1,050,000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900,000원

교육비 지출액 6,0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란에 기재하고 15%의 적용률을 적용한 90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2,87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❹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㉕ 세액공제 : 2,870,000원

* ⓭ 세액공제명세서의 ⑥세액공제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㉖ 결정세액 : 15,917,500원 (㉓-㉔-㉕)

㉙ 합계 : 15,917,500원 (㉘+㉙+㉚)

㉚ 기납부세액 : 7,810,000원

* ⓰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㉛ 납부(환급)할 총세액 : 8,107,500원 (㉙-㉚)

㉟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8,107,500원 (㉛-㉜+㉝-㉞)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㊶란)은 과세표준(㉑란)을 옮겨 적고,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㊸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㊿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㉚란)에서 중간예납세액(⓰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㊶ 과세표준 : 96,250,000원 (㉑란의 금액)

㊸ 산출세액 : 1,878,750원 (㊶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000원 =1,878,750원)

㊹ 세액감면·㊺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㉔와 ㉕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㉔×10/100=0원 , ㉕×10/100=287,000원)

㊻·㊾ 란의 금액 : 1,591,750(㊸-㊹-㊺)

㊿ 기납부세액 : 781,000원

51·52란의 금액 : 810,750원 (㊾-㊿)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이 공 평	② 주민등록번호	750203-1******
③ 주 소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 1 복식부기의무자 / 2 간편장부대상자 / (3)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 11 자기조정 / 12 외부조정 / 14 성실신고확인 / 20 간편장부 / 31 추계-기준율 / 32 추계-단순율 / (40)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 (10) 정기신고 / 20 수정신고 / 30 경정청구 / 40 기한후신고 / 50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세무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⑯대리구분 1 기장 2 조정 3 신고 4 성실확인 ⑰관리번호 - ⑱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⑲	105,250,000				
소 득 공 제		⑳	9,000,000				
과 세 표 준(⑲-⑳)		㉑	96,250,000	㊶	96,250,000	㊶	
세 율		㉒	35%	㊷	3.5%	㊷	
산 출 세 액		㉓	18,787,500	㊸	1,878,750	㊸	
세 액 감 면		㉔		㊹			
세 액 공 제		㉕	2,870,000	㊺	287,000		
결 정 세 액(㉓-㉔-㉕)		㉖	15,917,500	㊻	1,591,750	㊹	
가 산 세		㉗		㊼		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㊽		㊻	
합 계(㉖+㉗+㉘)		㉙	15,917,500	㊾	1,591,750	㊼	
기 납 부 세 액		㉚	7,810,000	㊿	781,000	㊽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8,107,500	(51)	810,750	㊾	
납 부 특 례 세 액	차 감	㉜				㊿	
	가 산	㉝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㉞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㉟	8,107,500	(52)	810,750	(51)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신고인 이 공 평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 · 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동래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1)]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③상 호(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51	1	(주) 국 세 607-81-*****	100,000,000	14,750,000	85,250,000	7,810,000	
60	1	(주) 동 래 607-**-*****	20,000,000	0	20,000,000	0	

[별지 제40호 서식(1)] (33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85,250,000				85,25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20,000,000				20,000,000
합계(종합소득금액)	105,250,000				105,250,000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별지 제40호서식(1)] (제15쪽)

⓫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본인	1,500,000	연금보험료공제	⑨국민연금		1,000,000
		②배우자			⑩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③부양가족(3명)	4,500,000		⑪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추가공제	④경로우대자(1명)	1,000,000	특별공제	⑫보험료공제		
		⑤장애인(명)			⑬주택자금공제		
		⑥부녀자			⑭기부금(이월분)공제		
		⑦한부모가족	1,000,000		⑮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8,0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⓰ 인적공제대상자명세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관계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0	이공평	1	751205-1******				-
1	김성실	1	420306-2******				-
4	이소득	1	030217-3******				-
4	이부가	1	050809-3******				-

※ 관계코드 : 소득자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코드	⑲금액	⑳사업자등록번호
㉑「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㉑)	9,000,000	㉓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19쪽)

⑫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⑬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 항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세액공제 (㉠×㉡)	④사업자등록번호
①「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2 명)				300,000	
		(6세 이하 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1,000,000	12%	120,000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7,000,000	15% (20%)	1,050,000	
	교육비			6,000,000	15%	900,000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2,870,000	

⑭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계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21쪽)

⓯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②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④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계산서	미발급(위장가공)	공급가액		2/100	
		지연발급	공급가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급가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연전송금액		1/1,000 (5/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0.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3/100	
	소계					
⑤ 증빙불비	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허위수취		허위수취금액		2/100	
⑥ 영수증수취 명세서미제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불명		불명금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입금액		0.5/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 등	미개설·미신고		수입금액등		0.2/100	
	미사용		미사용금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미발급·불성실금액				5/100	
	미발급·불성실건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금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합 계						

⓰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①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㉑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자소득	⑤		㉒	
	배당소득	⑥		㉓	
	사업소득	⑦		㉔	
	근로소득	⑧	7,810,000	㉕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⑩			
기납부세액 합계		⑪	7,810,000	㉖	

국세청
WWW.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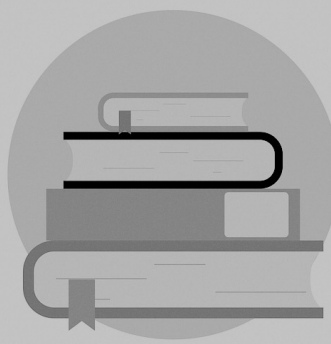

부 록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451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15종) / 452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기준 / 453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양식 / 457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 487
1.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488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510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 527
1. 현행 과세기준 / 528
2. 예상 질문 및 답변 / 529

4.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535

5. 공제 ·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54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1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15종)

안내문 유형	신고안내 대상	소득종류	기장 의무	신고안내 자료 제공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홈택스/ 서면
(A)	외부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
(B)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
(C)	복식부기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무신고 간주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
(D)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사업소득	간편장부	〃
(E)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또는 단일소득 + 타소득이 있는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
(F)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有	사업소득	간편장부	납부서 동봉
(G)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無	사업소득	간편장부	–
(H)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EITC· CTC 안내 대상자	사업소득	간편장부	일부 납부서 동봉
사전안내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사업소득	–	–
금융소득 (Z)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금융소득	비사업자	–
주택임대 (V)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복식부기 간편장부	–
복수근로 (X)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람	근로소득	비사업자	–
기타소득 (Y)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기타소득	비사업자	–
연금소득 (W)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공적연금자	연금소득	비사업자	–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기준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안내내용 조회 가능✦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는 안내문 발송을 담당

가 사업자 10개 유형

S유형(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17귀속)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20억/10억/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S)

A유형(외부조정대상자)

○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16귀속)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6억/3억/1.5억원) 이상인 사업자

○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A)

B유형(자기조정대상자)

○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16귀속)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3억/1.5억/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 외부조정대상자(A) 제외

○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B)

C유형(복식부기 - 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자)

○ 대상자 : '17귀속 복식부기의무자 중 '16귀속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한 사업자(무신고 간주자)

○ 안내내용 : 기장의무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C)

D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상습발급 거부자 포함) 및 신규사업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 안내내용 :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D)

E유형(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복수소득))

○ 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기타소득 ·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와 연말정산 사업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 연금소득(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 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 사람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50만원 초과

○ 안내내용 :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경비율,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

○ 안내문 : 개별안내문(E)

F유형(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납부서

G유형(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 다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50만원 이상

○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H유형(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신고서

○ 대상자 :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로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장려금 적용 대상자

○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를 모두 작성하여 안내(인적공제는 본인관련 공제만 적용)

○ 안내문 : 신고서식(40-4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납부서(납부할세액이 있는 자)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대상자 :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자료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자료 등 개별분석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

○ 안내내용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안내

○ 안내문 : 개별안내문(성실신고 사전안내 유형)

나 비사업자 5개 유형

Z유형(금융소득 신고안내자)

○ 대상자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안내내용 : 이자 ·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안내문 : 금융소득 신고안내문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자)

○ 대상자 :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 안내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보증금(합계 3억초과분)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 안내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

X유형(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자)

○ 대상자 : '17년도 중 근무지가 2이상이면서 주(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안내내용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도록 안내

○ 안내문 : 복수근로소득 신고안내문

Y유형(기타소득 신고안내자)

○ 대상자 : '17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안내내용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 안내문 : 기타소득 신고안내문

W유형(연금소득 신고안내자)

○ 대상자 : '17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17년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과 타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 있는 자

○ 안내내용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거나 공적연금소득과 타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 안내문 : 연금소득 신고안내문

3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양식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
-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
-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 E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 F유형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납부할 세액 有)
- G유형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납부할 세액 無)
- H유형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장려금 대상자
- S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V유형 : 주택임대소득자용 안내문
- W유형: 연금소득자용 안내문
- X유형: 복수근로소득자용 안내문
- Y유형: 기타소득자용 안내문
- Z유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용 안내문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성실신고 사전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성실신고 사전안내 사항을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도움서비스에 수록하였으니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택스에서 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확인경로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도움자료 열람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성실신고 사전안내
  - * 확인경로2 :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성실신고 사전안내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기본사항 : 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안내유형
  - ▪ 신고참고자료 :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소득 유무,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 ▪ 종합분석 : 최근 3년간 신고상황,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 ▪ 성실신고 사전안내 : 개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17년 귀속 기장의무 :**
- **2017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코 드	수 입 금 액

* 안내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_____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1])}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2]
	연금저축계좌		

1)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 · 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기본사항**(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상황,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장부기장 및 외부조정 신고안내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외부조정대상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 이 있으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적용 등
- 외부조정대상자 기준

업 종 별	2016년 수입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131의2)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복식부기의무자 (B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17년 귀속 기장의무 :**
- **2017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코 드	수 입 금 액

* 안내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_____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1])}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2]
	연금저축계좌		

1)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 · 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기본사항**(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상황,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장부기장 및 복식부기 신고안내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장부없이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각종 불이익*** 이 있으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적용 등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 종 별	2016년 수입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개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복식부기의무자, 전년 추계신고 (C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17년 귀속 기장의무 :**
- **2017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코 드	수 입 금 액

* 안내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_____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1])}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2])
	연금저축계좌		

1)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 · 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기본사항**(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상황,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장부기장 및 복식부기 신고안내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장부없이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각종 불이익*** 이 있으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적용 등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 종 별	2016년 수입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개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는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세금톡톡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은
2018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율 (D유형)

※ 기준경비율(추계) 신고 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17년 귀속 기장의무 :
- 2017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기본율)	자가율(초과율)

* 안내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_____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1])}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2]
	연금저축계좌		

1)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 · 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기본사항**(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상황,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장부기장 및 간편장부 신고안내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시행령제208조⑤)미만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개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간편장부란 납세자가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안한 장부입니다.(국세청고시 제2015-33호)
  * 간편장부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201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외)하게 됩니다.
- 재해 등의 사유로 장부가 소실되었거나 기장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 주요경비 : 재화의 매입비용, 외주가공비, 임차료, 인건비

국세상담센터 1588-0560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간편장부대상자, 단순율 (E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17년 귀속 기장의무 :**
- **2017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일반율(기본율)	자가율(초과율)

* 안내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_____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1])}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2]
	연금저축계좌		

1)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 · 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기본사항**(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상황,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장부기장 및 간편장부 신고안내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시행령제208조⑤)미만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개업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 간편장부란 납세자가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고안한 장부입니다(국세청고시 제2015-33호)
  * 간편장부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2016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외)하게 됩니다.
- 재해 등의 사유로 장부가 소실되었거나 기장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를 지급하면 일반율을, 그렇지 않으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인적용역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이 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수정사항이 있으면 4쪽을 참고하세요.

ARS개별인증번호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주의	이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소득-단순율, 세액有 (F유형)

※ 세무서 안내사항 :
신고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5월 일~ 일 기간 중 오시기 바랍니다.(주말, 공휴일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8. 3. 21.〉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관리번호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까지 기재 요망)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 전화번호	⑧ 사업장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⑩ 신고유형	㉜추계-단순율	⑪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⑫ 소득구분	㉚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㊵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 업종코드		⑭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⑮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⑳ 수정신고, ㊵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⑯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⑰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㉛ 총수입금액: 매출액을 적습니다.	
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㉛ 총수입금액 ×⑭ 단순경비율(%)	
㉝ 종합소득금액: ㉛-㉜	
㉞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㉟~㊺)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㉟ 본 인		
					㊱ 배 우 자		
					㊲ 부 양 가 족		
				추가공제	㊳ 경 로 우 대 자		
					㊴ 장 애 인		
					㊵ 부 녀 자		
					㊶ 한 부 모 가 족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㊹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㊺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㊻ 과세표준: ㉝-㉞("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㊼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㊽ 산출세액: ㊻×㊼-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㊾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㊿~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㊿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 · 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금액		

단일소득-단순율, 세액有 (F유형)

(제4쪽)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귀하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ARS **전화한통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전화 한통으로(1544-9944) 신고하세요

- **이 신고서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전화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 작성된 신고서입니다.**

1544-9944 전화 → ①번 종합소득세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주민번호 뒷자리 + # → 납부세액 확인 → 가상계좌 확인 → 신고완료

- **납부세액은 신고서 ⑫번과 ⑲번 바로 아래 금액 'ARS신고 및 전자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동봉해드린 납부서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란에 각각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안내되는 가상계좌(종합소득세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팩스로 신고하세요

- **신고서상 인적공제는 본인만 적용한 것이며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면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 **PC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내용을 수정 후 신고하거나**
  - **보내드린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여 1쪽 좌측 상단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는 경우 수정항목부터 마지막 항목 ⑲번까지 모두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 **수정된 납부세액은 동봉해드린 납부서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란에 각각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신고 · 납부 방법

- **전자신고(www.hometax.go.kr)**
  - **PC :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단일소득단순경비율) → 신고서 제출(수정가능)
  - **스마트폰 : 홈택스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단일소득단순경비율) → 신고서 제출(수정가능)
- **전자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 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수정사항이 있으면 4쪽을 참고하세요.

ARS개별인증번호

국세상담센터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주의	이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소득-단순율, 세액無 (G유형)

※ 세무서 안내사항 :
신고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5월 일~ 일 기간 중 오시기 바랍니다.(주말, 공휴일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8. 3. 21.〉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자국	거주자국코드

관리번호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요망)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 전화번호	⑧ 사업장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⑩ 신고유형	㉜추계-단순율 / ⑪ 기장의무 / ㉑간편장부대상자		⑫ 소득구분 ㉚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㊵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 업종코드	⑭ 단순경비율(%)	일반율 / 자가율	⑮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⑳ 수정신고, ㊵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⑯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⑰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㉛ 총수입금액: 매출액을 적습니다.	
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㉛ 총수입금액 ×⑭ 단순경비율(%)	
㉝ 종합소득금액: ㉛-㉜	
㉞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㉟~㊶)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㉟ 본 인		
					㊱ 배 우 자		
					㊲ 부 양 가 족		
				추가공제	㊳ 경 로 우 대 자		
					㊴ 장 애 인		
					㊵ 부 녀 자		
					㊶ 한 부 모 가 족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㊹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㊺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㊻ 과세표준: ㉝-㉞("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㊼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㊽ 산출세액: ㊻×㊼-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㊾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㊿~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㊿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 · 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금액		

단일소득-단순율, 세액無 (G유형)

(제4쪽)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귀하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ARS **전화한통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전화 한통으로(1544-9944) 신고하세요

- **이 신고서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전화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 작성된 신고서입니다.**

1544-9944 전화 ➡ ①번 종합소득세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주민번호 뒷자리 + # ➡ 세액확인 ➡ 환급계좌 입력 (환급인 경우) ➡ 신고완료

-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경우 아래 은행코드를 참고 바랍니다.**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지역농 · 축협	1	우체국	7	광주	13	신협	19
농협	2	새마을금고	8	경남	14	전북	20
KB국민	3	KEB하나	9	산림조합	15	제주	21
우리	4	대구	10	KDB산업	16	한국씨티	22
신한	5	부산	11	상호저축	17	은행코드 + #	
IBK기업	6	SC제일	12	수협	18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팩스로 신고하세요

- **신고서상 인적공제는 본인만 적용한 것이며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면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 **PC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내용을 수정 후 신고하거나**
  - **보내드린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여 1쪽 좌측 상단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는 경우 수정항목부터 마지막 항목 ⑲번까지 모두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기타의 신고 · 납부 방법

- **전자신고(www.hometax.go.kr)**
  - **PC :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단일소득단순경비율) → 신고서 제출(수정가능)
  - **스마트폰 : 홈택스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단일소득단순경비율) → 신고서 제출(수정가능)

이 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ARS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수정사항이 있으면 4쪽을 참고하세요.

ARS개별인증번호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주의	이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소득-단순율, 장려금 (H유형)

※ 세무서 안내사항 :
신고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5월 일~ 일 기간 중 오시기 바랍니다.(주말, 공휴일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8. 3. 21.〉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원자리까지 기재 요망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 전화번호		⑧ 사업장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⑩ 신고유형	㉜추계-단순율	⑪ 기장의무	㉒ 간편장부대상자	⑫ 소득구분	㉚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㊵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 업종코드		⑭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⑮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⑳ 수정신고, ㊵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⑯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⑰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㉛ 총수입금액: 매출액을 적습니다.	
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㉛ 총수입금액 × ⑭ 단순경비율(%)	
㉝ 종합소득금액: ㉛ - ㉜	
㉞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㉟ ~ ㊺)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코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㉟ 본 인		
					㊱ 배 우 자		
					㊲ 부 양 가 족		
				추가공제	㊳ 경 로 우 대 자		
					㊴ 장 애 인		
					㊵ 부 녀 자		
					㊶ 한 부 모 가 족		

㊷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㊸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㊹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㊺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㊻ 과세표준: ㉝ - ㉞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㊼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㊽ 산출세액: ㊻ × ㊼ -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㊾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㊿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㊿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 · 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금액		

단일소득-단순율, 장려금 (H유형)

(제4쪽)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귀하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전화 한통으로(1544-9944) 신고하세요

- **이 신고서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전화한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 작성된 신고서입니다.**

1544-9944 전화 ➡ ①번 종합소득세선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주민번호 뒷자리 + #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 가상계좌 확인 또는 환급계좌 입력 ➡ 신고완료

- **납부세액은 신고서 ⑫번과 ⑲번 바로 아래 금액 'ARS신고 및 전자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동봉해드린 납부서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란에 각각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안내되는 가상계좌(종합소득세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경우 아래 은행코드를 참고 바랍니다.**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지역농 · 축협	1	우체국	7	광주	13	신협	19
농협	2	새마을금고	8	경남	14	전북	20
KB국민	3	KEB하나	9	산림조합	15	제주	21
우리	4	대구	10	KDB산업	16	한국씨티	22
신한	5	부산	11	상호저축	17	은행코드 + #	
IBK기업	6	SC제일	12	수협	18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팩스로 신고하세요

- **신고서상 인적공제는 본인만 적용한 것이며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면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 **PC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내용을 수정 후 신고하거나**
  - **보내드린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여 1쪽 좌측 상단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는 경우 수정항목부터 마지막 항목 ⑲번까지 모두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 **수정된 납부세액은 동봉해드린 납부서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란에 각각 기재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신고 · 납부 방법

- **전자신고(www.hometax.go.kr)**
  - **PC :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단일소득단순경비율) → 신고서 제출(수정가능)
  - **스마트폰 : 홈택스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단일소득단순경비율) → 신고서 제출(수정가능)
- **전자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S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 **2017년 귀속 기장의무 :**
- **2017년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사업장 최대 5개 까지 표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 종 코 드	수 입 금 액

* 안내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한 자료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소득(합산대상)자료 유무 :** _____

*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공제 항목**

구 분		납입액(부담액)	공제 가능액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전액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200만원(사업소득 1억원초과), 300만원(사업소득 1억원 이하), 500만원(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중 적은금액
세액공제 항목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1])}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2]
	연금저축계좌		

1)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 **가산세 항목**

구 분	가산세 적용 사유 또는 가산세 대상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세금)계산서관련보고불성실	미(지연)제출 금액 : 원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신용카드발급거부	10만원 미만 : 건, 10만원 이상 : 원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무 · 과소신고금액 : 원
사업용계좌미신고	

※ 세무서 안내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제공정보** : **기본사항**(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안내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중간예납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 **신고상황 종합분석**(최근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상황, 주요 판관비 비율분석,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분석)
- **신고도움서비스 확인경로**
  경로1 :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경로2 :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장부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신고안내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수시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확인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의료비(15%) 및 교육비(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업 종 별	2017년 수입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원 이상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등 15개 업종)	5억원 이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국세청콜센터 상담은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에서 상담원 연결하기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주택임대소득자 (V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까지이며 2017년에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 세무서 안내사항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유 주택수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 보유자 :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및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 2주택 보유자* : 월세수입
  - 3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수입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1] = (비소형주택[2]이 3채 이상인 경우 당해 보증금합계 − 3억) × 2017년 임대일수 × 60% × 1.6% × $\frac{1}{365}$

1)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 이 3채 이상인 경우만 계산
2)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주택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산하지 않음)

-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사례**

사 례	수입금액	신고대상 여부
2주택 보유, 월세 250만원	250만원 × 12개월 = 3,000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전부 소득세 신고대상
2주택 보유, 월세 120만원	120만원×12개월 = 1,440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전부 비과세
비소형 3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25억원, 월세 없음	(25억−3억) × 365일 × 60% × 1/365 × 1.6% = 2,112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2,112만원 전부 소득세 신고대상
비소형 3주택 보유, 보증금 합계 15억원, 월세없음	(15억−3억) × 365일 × 60% × 1/365 × 1.6% = 1,152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전부 비과세
비소형 3주택 보유 중으로 1주택은 보증금 2억원 / 월세 120만원, 또 다른 1주택은 보증금만 8억원	[120만원 × 12개월] + [(10억−3억) × 365일 × 60% × 1/365 × 1.6%] = 2,112만원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 → 2,112만원 전부 소득세 신고대상
소형(전용면적 60㎡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주택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 20억원, 월세없음	−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신고대상 아님

- **'19년귀속('20년 5월 소득세 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4%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 보유 주택수별 과세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본 안내문은 세대별로 안내한 것으로 부부 2명 모두 과세기준에 해당되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외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은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주택임대등록 안내

- 주택임대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공적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감면,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포털(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 안내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의 건축 · 주택관련 소관부서 또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연금소득자 (W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까지이며 2017년에 신고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 세무서 안내사항 :

연금소득 신고안내

● **2017년중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공단 등)가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 소득)**으로 소득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사적연금 소득의 연간 총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되,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총연금액이 4,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원이 적용됨

● **2017년 연금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과세기간 '2017',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선택

※ 홈택스 조회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4월 이후 연금소득지급명세서가 수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공단 등)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은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근로소득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콜센터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복수근로소득자 (X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까지이며 2017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이용시간 06:00~24:00)

종합소득세 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근로소득자신고서) → 주민등록 번호입력 → 연말정산 불러오기 → 급여 및 공제 선택입력 또는 직접입력 → 신고서 작성완료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 세무서 안내사항 :

근로소득 신고안내

- **근로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기면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옮긴 근무지에 제출하고, 새로 옮긴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새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1일~5월31일 기간동안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 근로소득 합산으로 총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금액도 변동되므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 –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와 새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합계입니다.

- **2017년 근로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과세기간 '2017',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선택
  - ※ 홈택스 조회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4월 이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수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 단,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은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기타소득자 (Y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까지이며 2017년에 신고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 세무서 안내사항 :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 **일시적인 강연료 ·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예시》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TV해설 · 심사 수당 등
- 미술 · 음악 · 사진 등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수입은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수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등
-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및 대여료(상표권, 영업권 등)
- 지역권 또는 지상권 대여 • 주택입주지체상금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강연료, 심사수당 등)

- **2017년 기타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My NTS→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과세기간 '2017',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선택
    - ※ 홈택스 조회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4월 이후 기타소득지급명세서가 수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이외의 다른 소득(이자 · 배당 · 근로 · 사업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 단,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은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오늘 낸 세금
행복한 내일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 종합소득세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26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금융소득자 (Z유형)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까지이며 2017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용시간 06:00~24:00)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납부**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이용시간 00:30~23:30)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납부서" 검색(개정일자 2015.02.23 선택)

※ 세무서 안내사항 :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 2017년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17에 발생한 금융소득 명세를 금융회사 등에 확인해 보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께 신고기간(5.1~5.31) 동안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보기
    ※ 홈택스 조회자료는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이며 4월 이후 금융(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가 수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의 금융소득명세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비율 만큼 소득세 신고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최저한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 ·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국 세 청
National Tax Service

2.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1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12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범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추 가〉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 비과세 범위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 유권해석(20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 비과세 범위 보완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 (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 개정취지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 2016.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 2018.12.31.

3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가. 개정취지

○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 종업원 ○ 주주가 아닌 임원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 §38③) :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범위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수 산정시 소형주택 제외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과세개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 (좌 동)
○ (특례)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 2016.12.31.	○ 적용기한 : 2018.12.31.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즉시상각 의제 ○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추 가〉	□ (좌 동) ○ (좌 동) –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5억원	38%
5억원 초과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가산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 개정취지

○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주식액면가액의 2%	▢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	○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0.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세·소득세) 20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소득세법 제163조, 제81조제3항,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 10억원) 이상인 자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 발급 건당 200원(한도 : 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 : 2018.12.31.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신 설〉</td><td>▢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가산세율
<table>
<tr><th colspan="2">가산세율</th><th>’16</th><th>’17</th><th>’18</th><th>’19</th></tr>
<tr><td rowspan="2">지연전송</td><td>법인, 개인겸업자</td><td>0.1</td><td>0.5</td><td>0.5</td><td>0.5</td></tr>
<tr><td>일정규모 이상 개인</td><td>-</td><td>0.1</td><td>0.1</td><td>0.5</td></tr>
<tr><td rowspan="2">미전송</td><td>법인, 개인겸업자</td><td>0.3</td><td>1</td><td>1</td><td>1</td></tr>
<tr><td>일정규모 이상 개인</td><td>-</td><td>0.3</td><td>0.3</td><td>1</td></tr>
</table></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발급의무)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 (발급의무)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7~2018년(2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세액공제) 2015.1.1.~20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대상 업종 : 52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소매업 등	○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좌 동)
〈추 가〉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 의무 ○ 대상 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 가맹업종 추가 ○ 2개 업종 추가 –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용 계좌 제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가. 개정취지

○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실태 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 개설·사용 의무(미개설·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 사업용 계좌 보완
○ 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 (좌 동)
〈추 가〉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3. 이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① 일시납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	① 일시납 보험 – (좌 동) – (한도)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② 월 적립식 보험 –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균등 보험료 납입 – (한도) 없음	② 월 적립식 보험 (좌 동) – (한도)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③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 소멸	③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종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 과세근거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26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의 이익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 파생상품이 이자·배당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	□ 과세대상 범위 확대
○ 실질상 하나의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①+②) * 예) 외화예금 + 선도환 → 엔화스왑예금 ①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② 해당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상품 및 파생상품의 이익 지급	(좌 동)
〈추 가〉	○ 계약시점에 현금흐름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①+②) * 예) 해외 저금리채권 + 선도환
〈추 가〉	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발생* * 다만,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 거래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이행을 위해 이자·배당상품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는 포함 ②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확정적인 이익* 지급 * 예) 만기시 연 1.5% 등 고정금리 형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4.1.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 세액공제 ·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 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좌 동)
○ (나이요건)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입양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 출생·입양신고한 거주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공제대상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

17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공제율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 개정취지

○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좌 동)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좌 동)
○ (공제율) 15%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시 세액공제 적용(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좌 동)
〈추 가〉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등의 원리금 상환액 – (제외금액) 생활비 대출금,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가. 개정취지

○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중·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좌 동)
〈추 가〉	○ 체험 학습비*(한도 :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가. 개정취지

○ 국가유공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 (적용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좌 동)
○ (공제율) 40%	(좌 동)
○ (공제한도) 300만원	(좌 동)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좌 동)
〈추 가〉	– 국가보훈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2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가. 개정취지

○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 : 800만원 〈추 가〉	▢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 – 800만원 × 보유월 수 ÷ 12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액 : (1천만원 이하) 100%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추 가〉	▢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 – 1,000만원 × 보유월 수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 창업·벤처전문 PEF 도입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과 함께 추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 (대상)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출자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좌 동)
○ (의무보유기간) 3년	○ (좌 동)
○ 적용기한 : 2017.12.31.	○ (좌 동)
▢ 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 적용기한 : 2017.12.31.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공제) 201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 적격스톡옵션 :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 연간 1억원 이하	○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 간 보유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가. 개정취지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선택 허용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특례 적용 출자 대상기업 확대
○ (출자대상기업) 벤처기업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등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	○ (출자대상기업) 벤처기업 등* * 벤처기업 +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업(추가) ①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평가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 투자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2천만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 제4항, 제10항)

가. 개정취지

○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좌 동)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좌 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신 설〉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우선순위) 20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 20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가. 개정취지

○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 BBB+이하 회사채, 코넥스 상장주식 45% 이상 편입	▢ 적용기한 연장
○ (지원내용)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	○ (좌 동)
○ 적용기한 : 2016.12.31.	○ 적용기한 : 2017.12.31.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좌 동)
○ 주민등록표 등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고용 · 투자 · 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로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업종범위 확대
○ (대상 업종) 농업 · 제조업 · 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 각종 고용 · 투자 ·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범위	▢ 업종범위 확대
○ 농업 · 제조업 · 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Negative 방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고용 ·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 (1.1배) 상향 조정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지원업종 확대
○ 소득세·법인세 감면 – 지역·업종·규모별 5~30% 감면	○ (좌 동)
○ 지원업종 : 49개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 서비스업(출판·정보·연구개발·사회복지·관광산업·물류산업 등) 〈추 가〉	○ 지원업종 확대 – (좌 동) – (좌 동) – 임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td><td>▢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table>
<tr><th>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td>4천만원 ~ 1억원</td><td>3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5항)

가. 개정취지

○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 노후 · 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가. 개정취지

○ ISA 가입서류 일원화 등을 통해 가입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SA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원화 및 추가
○ 일반형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일반형 – 소득확인 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취업자·사업자의 경우 지급확인서 등 제출**
○ 서민형* – 소득확인 증명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좌 동)
○ 농·어민 – 농·어업인확인서	○ 농·어민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2.7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법 시행령 95조)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적용대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 일정수준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 (좌 동)
○ 지원내용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9% 원천징수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25% 분리과세 * 원천징수의무자(증권회사 등)에게 분리과세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 지원내용 ① 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 : 9% 원천징수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5% 세액공제로 전환
〈신 설〉	– 세액공제액 한도 · MIN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금액 × 5% / 2천만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신 설〉	–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1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 감면율 – (일반임대) 30% – (준공공임대 · 기업형임대) 75% * (준공공임대) 85㎡ 이하 주택 8년 이상 임대 * (기업형임대)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호 이상 임대 ○ 의무임대기간 – (일반임대) 4년 – (준공공임대 · 기업형임대) 8년 ○ 임대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적용기한 : 2016.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 2019.12.31.

16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 30%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 2016.12.31.</td><td>▢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table><tr><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tr><td>7천만원 이하</td><td>300만원</td></tr><tr><td>7천만원~ 1억2천만원</td><td>300만원
(2018.1.1.이후 250만원)</td></tr><tr><td>1억2천만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 각각 100만원 한도추가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 : 2018.12.31.</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7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대상 ○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에 대한 감면 등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추 가〉	○ 엔젤투자 소득공제* 감면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까지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관련 주요 문답자료

1 현행 과세기준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

○ **(월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시행령 제8조의2

-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1주택도 과세)

○ **(보증금 · 전세금)** 소득세법 제25조 제①항, 시행령 제53조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11년 귀속부터)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60㎡(' 16년 귀속까지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left[\text{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text{3억 원}\right] \times \text{적수} \times \frac{60}{100} \times \frac{1}{365^{주1}}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주2} - \text{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기장신고시 적용하고, 추계신시 적용하지 않음)}$$

주1〉 윤년의 경우 366을 적용

주2〉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규칙23 ①)

귀속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자율	3.4%	4.3%	3.7%	4.0%	3.4%	2.9%	2.5%	1.8%	1.6%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4~'18년 귀속까지 비과세하고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2 예상 질문 및 답변

[과세기준]

1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의 판정방법은?

○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부부를 합산(동거하는 직계비속 보유 주택은 포함하지 않음)하여 판정함

2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임

3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집행12-8의 2-4)

4 구분 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은?

○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소득세과-1241, 2010.12.14)

5 부부합산 국내의 2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을 보유한 부인과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세에 대하여 비과세

6	농촌에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에는 농가주택을 제외하지 않음

7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은?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8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지?

○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

9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은?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함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부부인 경우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맥락으로 주택수 판단에 있어서는 1주택으로 봄

10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하 '고가주택'이라함)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은?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됨

11	이전에 9억원 미만인 1주택의 기준시가가 2017. 5. 30.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고시된 경우 월세에 대한 과세는?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2017년 과세기간의 월세에 대하여 과세됨

12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해당여부 및 주택수 계산은?

○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함

1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방법은?

○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14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 100㎡ 주택 2채,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60㎡이하) 1채 보유시 →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비과세, 100㎡ 주택 2채, 소형주택 2채 보유시 →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비과세

15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주택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제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 면적기준은 과세기간 중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세보증금 과세시 주택수에 포함하고, 가액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16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은?

○ 1주택의 양도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양도 후에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

17 전대 또는 전전세의 주택수 및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계산방법?

○ 전대 또는 전전대시에 해당 임차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며,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의 계산은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18 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 임대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

19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

20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 적수계산 방법은?

○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

(사례) A, B, C 3주택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3억원 차감방법)

주택	보증금	임대일수	적수	간주임대료
A	1억	300일	300억	(1억−1억①)×300일×60%×정기예금이자율×1/365*
B	4억	50일	200억	(4억−2억②)×50일×60%×정기예금이자율×1/365*
C	3억	10일	30억	(3억− 0)×10일×60%×정기예금이자율×1/365*

* 윤년의 경우 366을 적용

※ 3억원을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A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는 B에서 차감

21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장신고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하는데 미수수입이자는?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했으나 수입시기 미도래분도 포함함(소득46011-10189,2001.3.7). 다만 임대보증금 운용내역이 불분명한 수입이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22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수입 계산방법은?

○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함.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선세금 ÷ 계약기간의 월수)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기간 월수

23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방법은?

○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임대인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한함)함.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24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수입금액 산입여부?

○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은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임

25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가 과세되는지?

○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

26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27	주택 취득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

28	주택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적용할 경비율은?

○ 경비율은 고가주택 임대(701101), 비 고가주택 임대(701102), 장기임대공동주택 임대(701103),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임대(701104), 전대 및 전전대 임대(701300)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비고가주택 임대(701102)의 경우 2017년 귀속의 경우 기준경비율(전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은 10.2%이고 단순경비율(전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은 42.6%임

4.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주요세법 해석사례 58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소득구분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계좌잔고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351,2016.07.19.)
공통	소득구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과-865 , 2012.11.29.)
공통	수입금액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96, 2014..06.16.)
공통	수입금액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소득-22606, 2015.05.07)
공통	수입금액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소득-22517, 2015.03.23)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수입금액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임 (서면법규과-1240, 2014.11.21)
공통	수입금액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83, 2014.06.30)
공통	수입금액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429, 2016.07.25.)
공통	수입금액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691, 2013.06.17)
공통	수입금액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세과-637, 2012.11.22)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령해석과-2737, 2017.09.28)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74, 2014.09.05.)
공통	필요경비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세과-848, 2011.12.20.)
공통	필요경비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0230 , 2015.05.12)
공통	필요경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974, 2014.09.05)
공통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서면법규과-1267, 2014.12.02)
공통	필요경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4, 2013.01.03)
공통	수입금액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596, 2014.06.16)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함. (서면법규과-1266, 2013.11.19)
공통	필요경비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1249, 2013.11.14)
공통	필요경비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공통	필요경비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세과-491, 2013.09.30)
공통	필요경비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055, 2013.09.27)
공통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 (서면법규과-1029, 2013.09.23)
공통	필요경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서면법규과-844, 2013.07.22)
공통	필요경비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필요경비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22, 2013.05.09)
공통	필요경비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82, 2013.02.18)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과-11, 2013.01.03)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03, 2012.12.11)
공통	필요경비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과-628, 2012.08.20)
공통	필요경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452, 2012.05.31)
공통	필요경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소득세과-1108, 2011.12.30)
공통	필요경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과-0001, 2012.01.03)
공통	소득금액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서면법규과-664, 2013.06.13)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필요경비	대출금 이자는 분양계약 취소 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세과-848, 2011.12.20)
공통	소득금액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59, 2014.08.29)
공통	소득금액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0558 , 2011.06.20.)
공통	성실신고확인	해외 자회사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여 판단.(소득세과-379, 2014.07.02)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182, 2012.03.06)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 2017.06.30.)
공통	성실신고확인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거주자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 (소득세과-296, 2014.05.26)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성실신고확인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불가능함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후 신고임.(징세과-1037, 2012.09.27)
공통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소득세과-463, 2012.06.04)
도소매	수입금액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은 비과세 되며,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함 (서면법규과-523, 2013.05.09)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 산입 (서면법규과-505, 2013.05.02)
부동산 임대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함.(소득세과-840, 2012.11.21)
부동산 매매업	필요경비	부동산매매업자의 강제집행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 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소득세과-721, 2012.09.27)
부동산 매매업	수입금액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5, 2014.07.22)
건설	성실신고확인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과-348, 2012.04.25)

업종	분야	해석 사례
부동산 매매업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363, 2016.03.09.)
공통	기타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거에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탕전소를 개시하게 된 경우에는 폐업신고한 구한의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사업용 계좌가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탕전소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임.(소득세과-1024, 2016.07.08.)
공통	기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2017.06.30.)
공통	세액감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세액공제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 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2017.02.28.)
공통	감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령해석과-1319, 2017.05.19.)
공통	감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법령해석과-2288, 2016.07.13.)

5. 공제·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6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 등 감면배제

【조심2016전 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소급과세는 부당

❑ 최저한세(조특법 §132)

○ 의의 : 각종 조세지원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일정액 이상의 최저한세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 :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조특법 제16조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포함)
비거주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조특법상 소득공제액 등) × 기본세율 × 35%
(단,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
・총결정세액 = 최저한세 - 기장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 + 가산세

○ 적용대상 공제·감면 등의 범위

구분	조특법 법조문	내 용
준비금 등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특례 등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6조①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세액공제 등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②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2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전자신고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석유제품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조특법 법조문	내 용
세액공제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3②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감면 등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③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1조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1조⑤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의 승계
	제32조④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시 잔존감면·이월공제액 승계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외 이전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효과 :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감면 대상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창업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

○ **대상 업종** : 제조업 등 조특법 §6 ③에 열거된 업종

○ **감면 내용**

- 소득세 · 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다음 2년은 50% 세액감면)
  -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시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

○ **감면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 조특법§7조① 1호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 **대상 업종** :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조특법 §7① 1호)

○ **감면 내용**

- 감면비율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수도권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 감면대상 : 과세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한 내국인

○ 감면 내용

–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비율 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20%(중소30%)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MAX(ⓐ, ⓑ)

* 단,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거나, 직전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는 ⓑ를 적용

ⓐ 증가분 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4년 평균 지출액] ×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 : 당기 R&D비용 × 당기분 방식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2~3%*

* 1%(기본공제율) +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한도 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13년부터)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부터 배제됨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 감면대상 : 대상업종을 영위하며 사업용자산(중고품, 금융리스 외의 리스 제외)을 취득한 내국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 감면내용

– 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일정액을 세액공제

– 대·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은 세액공제 가능

구 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외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2%	3%		–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 (고용증가비례)	4%	5%	4%	5%	3%	4%
합 계	5%	7%	7%	8%	3%	4%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하여 허용
** 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중소기업은 1.5천만원~2.5천만원)
*** 대통령령이 정한 서비스업 영위 시 공제율에 1% 가산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발행일자 | 2018년 4월 일

발행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집필·편집 | **행정사무관 김민제**
국세조사관 황진하
국세조사관 신지명
국세조사관 김요왕
세무사 김현승

인쇄 | 도서출판 태봉(☎ 02-2274-0383)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법과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